법제교류 연구 09-17-□□

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계 경 문 · 김 종 욱 · 이경희 · Nguyen Thi Thanh Xuan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Government Organization and Legal System in Vietnam

연구자 : 계 경 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Kye, Kyoung-Moon
김 종 욱 (청운대학교 교수)
Kim, Jong-Ouk
이 경 희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Lee, Kyung-Hee
Nguyen Thi Thanh Xuan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

2009. 6. 3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국 문 요 약

베트남은 도이 머이 정책을 도입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꾸준한 경제성장의 배경은 베트남 정부의 정치적·사회적 안정과 충분한 천연자원 및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한 WTO 가입 및 UN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대외무역 정상화 등의 노력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과 투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베트남과의 관계가 경제적·외교적 분야에 치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에 대한 권력구조, 정부형태 및 법체계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자 베트남의 정부조직의 권한, 임무 및 조직에 대한 정리를 하고, 베트남 법률의 체계 및 각 정부부처의 소관 법률 및 그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베트남 헌법은 국회가 최고 대표기관이며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베트남공산당이 국회를 주도하고 구성하며, 사상적 기반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의 통치기구는 베트남공산당을 중심으로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은 현재 약 170개의 법률이 공포되었고, 최근에는 투자법, 기업법, 각종 세법의 제정으로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제 정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뿐만 아닌 사회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과 같이 베트남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외국 자본의 도입과 함께 법제도 정비를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여건과 인식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나날

이 변화하는 베트남 현실에 베트남에 대한 시각은 변화해야 할 것이고, 베트남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베트남 정부조직, 베트남 법체계, 베트남 통치기구, 투자 법제도, 법률소관부처

Abstract

The introduction of ‘Doi Moi’ policy had achieved high economic growth in Vietnam. Background of steady economic growth is political · social stability and ample natural resources and human resources. Furthermore enter the WTO membership, non-permanent in UN and normalization of foreign trade.

It is true that our business and investment is growing in Vietnam with Vietnam's economic growth. However, the power structure in Vietnam, government organization and legal system research is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show that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mission and organization and legal system and jurisdiction of each government department in Vietnam for resolve the issues.

Vietnam's constitution regulate that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highest representative and the highest supreme power, but the Vietnam Communist party leads National Assembly substantially and composes, as ideological base will do.

Therefore, the Organization of the governing legislation, the judiciary, administration and can be connected by the Vietnam Communist Party of Vietnam, Vietnam currently has about 170 laws and in recent years, the enactment of various investment law, enterprise law, tax law for foreign investors. And government has a lot of interest in social welfare.

Vietnam make the introduction of foreign capital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investment environment through the legal system

maintenance. But it is not changed that our investment environment and recognition in Vietnam.

Accordingly, we should change the vision of Vietnam and active in Vietnam research.

※ Key words : Vietnam government organization, legal system, reign system, investment law, jurisdiction of law

목 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 1 장 서 론 ····· 11
1. 연구의 목적 ····· 1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3

제 2 장 베트남 개관 ····· 15
제 1 절 일반개관 ····· 16
1. 역 사 ····· 16
2. 정 치 ····· 17
3. 경 제 ····· 19
4. 사회 및 문화 ····· 22
5. 법 제 ····· 24

제 2 절 베트남의 역사 ····· 25
1. 선사시대 ~ 왕조시대 ····· 25
2. 프랑스 식민시대 ~ 베트남 독립 ····· 29
3. 베트남 전쟁 ····· 30
4. 통일 베트남 ····· 32

제 3 장 베트남 통치기구의 특징 ····· 33
제 1 절 개 관 ····· 33
제 2 절 공산당 ····· 36
1. 연 혁 ····· 36
2. 임무 및 권한 ····· 36

3. 조 직 ····· 37

제 3 절 입법부 (국회) ····· 49
1. 임무 및 권한 ····· 50
2. 조 직 ····· 52

제 4 절 사법부 ····· 60
1. 임무 및 권한 ····· 60
2. 조 직 ····· 61

제 5 절 정 부 ····· 68
1. 국가주석 ····· 69
2. 정부수상 ····· 70
3. 정부부처 ····· 71

제 4 장 베트남의 법체계와 법률 ····· 129
제 1 절 베트남의 법체계와 법원(法源) ····· 129
1. 법체계 ····· 129
2. 법원(法源) ····· 131
3. 베트남 투자・금융 관련 법률 ····· 136

제 2 절 소관부처별 법률 ····· 139
1. 국방부 ····· 139
2. 공안부 ····· 142
3. 외교부 ····· 145
4. 법무부 ····· 147
5. 계획투자부 ····· 159
6. 재무부 ····· 163
7. 산업무역부 ····· 177
8. 농업농촌개발부 ····· 180
9. 교통운송부 ····· 182

10. 건설부 ····· 184
11. 노동보훈사회부 ····· 187
12. 과학기술부 ····· 191
13. 문화스포츠관광부 ····· 194
14. 보건부 ····· 199
15. 내무부 ····· 203
16. 정보통신부 ····· 208
17. 자원환경부 ····· 211
18. 교육훈련부 ····· 213
19. 국회 및 국회상무위원회 ····· 215
20. 인민의회 및 조국전선 ····· 219

제 5 장 결 론 ····· 223

참고문헌 ····· 227

【 참고자료 】

참고자료 Ⅰ

※ 베트남 정부부처의 소관법률 정리 ····· 233

참고자료 Ⅱ

※ 베트남 법률의 소관부처 및 우리나라의 유사법률 정리 ···· 241

참고자료 Ⅲ

※ 베트남투자법 ····· 259

※ 베트남투자법 시행령 ····· 295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베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을 위한 '도이 머이(Doi Moi)[1]' 정책을 도입하여 꾸준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오던 중 아시아 경제위기시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및 수출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5% 전후로 하락하였지만, 2000년 이후 6%대 성장률에 진입한 이래 2005-2007년 GDP 성장률은 8% 이상을 달성할 정도로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2007년에는 8.5%의 성장과 GDP 총액 715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의 경제성장을 실현하였고, 2008년 GDP 성장률은 6.23%, GDP 총액 890억 달러로 세계 경기침체에 비춰볼 때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속적인 산업생산 증가로 2007년 베트남 산업분야의 생산은 17.1% 증가한 35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2005년 이후 17%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2010년 GDP 940-980억불로 2000년 2.1배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이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정치·사회적 안정 속에서 풍부한 천연자원 및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베트남에 대한

1) 도이 머이 정책은 시장경제, 즉 다양한 소유경제구조를 인정하여 개방과 경쟁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즉 베트남 지도부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세계경제의 구조적 이동, 그리고 생산 및 사회생활의 국제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베트남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다. 도이 머이 정책의 모델은 경제개혁을 우선하여 성공적인 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는 중국을 모델로 삼았고 기본 방향은 국가의 거시적 경제조정을 전제로 시장경제원리를 적극 도입하여 경제분권화를 추진하며, 국영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전제로 국영과 민간부문이 공존하는 혼합경제를 구축하고, 외자유치 및 교역기반 확대를 위해 개방정책을 촉진하여 대외지향적인 산업구조로 전환하며, 농업의 발전과 소비재 생산의 확대 및 수출증대에 적합하도록 생산과 투자구조를 재조정하는데 있다. 송정남, □□베트남의 역사□□,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0, pp.626-627 참조.

외국인의 직접 투자의 꾸준한 증가세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2006. 12. 베트남과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베트남과 미국 간의 경제관계가 완전 정상화 되었고, WTO 공식 회원국 가입(2007. 1.)과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2008-2009) 등 국제적 위상이 증대됨으로서 베트남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베트남전 참여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가 긴장상태였으나, 과거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매우 현실적인 베트남 정부는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서 1992. 12. 22. 한국-베트남 수교 이후 양국 간 2008년 교역이 98.41억 달러(수출 78.04억 달러, 수입 20.37억 달러)로 베트남은 우리의 10위 수출국이며, 2008년 6대 무역흑자국에 해당하고, 베트남에 약 1,500여개의 우리기업이 투자하는 등 165억 달러(2,058건)로 제4위의 투자국(투자건수로는 1위)으로써,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경제·통상 분야에서 비약적인 관계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영화·드라마 등이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점에서 한류 열풍 등으로 우호적이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그러나 베트남과의 관계가 경제·외교적 분야에 치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의 권력구조, 정부형태 및 법제도의 체계 등에 대한 우리나라와의 교류 및 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공산당이 최고 권력기구인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한 이해와 베트남 법률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

2) 외교통상부, □□베트남 개황□□, 2009. 5, pp.93-96 참조; 외교통상부 국가별 DB 베트남(http://countryinfo.mofat.go.kr/asia/20070822/1_1094.jsp) 참조; 주 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경제 정세(http://vnm-hanoi.mofat.go.kr/kor/as/vnm-hanoi/affair/state/index.jsp) 참조.

업들이 큰 애로를 겪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자 베트남의 통치기구 및 정부조직에 대해 조사해 보고, 베트남의 법체계에 대해 연구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기존 베트남에 대한 연구와 차별되는 것은 베트남의 정부조직의 권한, 임무 및 조직에 대한 정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것과 베트남 법률의 체계 및 각 정부부처의 소관 법률 및 그 법률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베트남의 연혁 및 특징에 대한 간략한 서술을 바탕으로 베트남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여 베트남의 통치기구, 정부조직 및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베트남의 국가기구 및 정부형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번역·분석하여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베트남 법체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 베트남법의 기본 체계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자료 수집·번역 및 분석 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베트남 각 기관의 권한과 의무, 근거 법률 및 관련 집행 법률에 대해 정리하고, 관련 집행 법률에 대한 목적, 조문 구성에 대한 서술을 내용으로 한다.

번역·정리된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앞으로의 심층적이고 균형 잡힌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베트남 개관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은 공산당이 유일정당인 사회주의 공화제 국가로서 중국・라오스・캄보디아와 인접해 있으며 면적은 331.690㎢로 한반도의 약 1.5배이다. 베트남 국민들에게는 북부의 홍(Hong)강과 남부의 메콩(Me Cong)강이 주요 생활중심지가 되고 있으며 특히 메콩 강의 길이는 4,229㎞에 달하는 인도차이나의 젖줄로서 티베트에서 발원해 중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를 거치며 베트남에 이르러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다. 홍강은 중국 운남성에서 발원하여 통킹 만으로 흐르는 전장 1,200㎞에 달하는 북부지역의 젖줄로서 베트남의 2대 곡창지대의 하나인 15㎢ 면적의 홍강델타 지역을 통과한다. 베트남 동쪽의 바다는 일반적으로 ‘South China Sea(남중국해)’로 표기 되어있지만 베트남은 ‘동해(East Sea)’라고 부르고 있다. 동해상에는 중국 등 인근국과의 영토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호앙사(Hoang Sa)군도(Paeacel 군도)와 쯔엉사(Truong Sa)군도(Spartley 군도)가 있는데, 특히 쯔엉사 군도는 원유와 구리, 망간, 주석, 알루미늄 등 많은 천원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베트남,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 여러 나라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 북부의 기후는 아열대성이고 남부는 열대성 기후이며, 평균기온은 24.1°C(북부:23.2°C, 중부:24.1°C, 남부:27.1°C), 습도는 월 평균 83%, 평균 강우량은 2,151㎜로 한국보다 2.4배가 높다. 이처럼 남과 북의 차이가 심하며 평야지대와 고원지대의 기후도 매우 다르다.

제 1 절 일반개관

1. 역 사

락롱과 어우꺼의 결합으로 100명의 아들이 탄생하였는데, 이중 훙브엉이 반랑국을 건설하였고 후에 어우락국이 성립되었다. 어우락국은 중국인들에게 패망하였는데, 한무제는 베트남 북부 지역을 중국 행정구역의 하나로 편입하여 이 지역에 부를 설치했다. 938년 응오꾸엔이 중국 남한군을 격파하고 응오왕조를 수립하여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였고, 그 후 19세기 응웬왕조가 프랑스의 피보호국이 되기까지 약 950년간 베트남은 왕조를 유지하였다. 이 기간 동안 베트남은 중국의 침략을 물리쳤다.

쟈롱황제 이후 프랑스 선교사 처형사건을 계기로 프랑스가 베트남을 무력침공 하여 제압한 뒤, 1883년 베트남은 프랑스의 피보호국으로 편입되었다. 베트남의 왕정세력, 농민, 지식인들은 반프랑스 저항운동을 펼쳐나갔고, 1930년 창당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독립동맹이 반일 항쟁을 전개하여 1945년 9월 2일 호치민이 하노이에서 베트남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1945년 일본군이 주둔 프랑스군의 무장을 해제하여 약 60년간 프랑스의 통치가 종식 되었으나 2차대전 후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복귀를 시도, 영국군의 협조 아래 군사적으로 재개입하게 되었다.

1946년 3월과 9월에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는 2번의 임시협정을 체결하여 프랑스연합 내에 인도차이나 연방국으로 인정되었으나, 실질적 독립을 추구한 베트남과 연방 내의 한 자치국으로 인정한 프랑스측이 대립, 하노이에서 무력충돌에 이어 1946년 12월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호치민 정권은 서북 산악지역으로 철수하였다. 1949년 프랑스는 베트남공화국을 수립하였으나, 베트남 인민과 군대가 프랑스군에 대한 전국적인 공세를 펼쳐 결국 1954년 5월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군에게

승리를 거둠으로써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서 출수하게 되었다.

1954년 7월 인도차이나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휴전협정을 1954년 체결,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의 인정 및 이를 기초로 북위 17도선의 잠정 군사분계선 설정, 국제 감시위원회 설치 등이 정해져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1956년에 실시키로 하였다. 그러나 1955년 수립된 베트남공화국 대통령 응오 디 지엠과 미국이 정권의 통일거부 주장으로 총선은 실시되지 않았다. 1963년 격렬한 반정부운동과 함께 지엠 정권은 군사 쿠데타로 붕괴되었고 그 후 계속된 쿠데타 및 미국의 지상군 투입으로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시작되었다.

1973년 1월 미국, 북베트남, 남베트남, 남베트남 임시 혁명정부는 파리에서 평화협정에 조인하였고, 1975년 4월 30일 남부 베트남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어 1976년 7월 2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수립되었다.

통일된 베트남은 외국원조의 단절, 낙후성, 심각한 전쟁의 후유증, 미국과 서방의 제재 및 봉쇄정책, 이웃 강대국과의 관계악화, 캄보디아 침공 등으로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베트남은 제6차 전당대회를 통해 경제구조 방식과 경제운용방식을 쇄신하고 법률체계를 확립하며 당과 국가조직을 개혁하기 위한 도이머이 정책을 천명하였고, 꾸준한 경제성장과 외교정책으로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였다.[3)]

2. 정 치

베트남은 1976년 통일 직후 남부에 대한 급속한 사회주의 도입의 실패, 캄보디아 침공(1978) 및 중・베트남 전쟁(1979)에 따른 과도한

3) 주한베트남대사관, □□베트남(베트남-한국 수교 10주년 기념)□□, 2002. pp.12-18 참조.

전비부담과 서방국가의 원조 중지 등으로 80년대 후반까지 국민경제는 악화상태였다. 1980년대 초반 신경제정책(1980-1982)을 추진을 추진하였으나 성과는 미흡하였고, 이에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Doi Moi 정책을 채택하여 대외개방을 통한 외국과의 경제협력의 확대와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였다. 1989년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의 철수를 계기로 대외관계가 호전되기 시작하였으며, 다변화, 다양화를 기조로 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및 국제협력에 동참하는 개방적, 적극적 대외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대서방 관계개선이 급진전되었으며,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실현하였다. 최근에는 법률・제도의 정비를 통한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 관리하의 다부문 시장경제체제인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 틀에서 경제자유 확대조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또한 제도 및 정부구조의 혁신과 공직자의 자질개선, 재정구조 개혁 등의 정부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정치의 안정기조 유지를 위해 다당제 등 정치적 다원화 요구에 대해서는 불허 입장을 견지하면서 체제안정을 위한 국민화합 및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소수민족 및 종교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민족조국전선의 활동 강화, 국회의 청원제도 활성화 등으로 다원화 요구를 수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혁개방 추진 과정의 소득격차 심화 현상과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각종 범죄 확산 등이 사회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부패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정부패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직을 신설하고,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농촌개발, 빈곤퇴치, 소수민족 배려정책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4)]

4) 외교통상부(2009), 앞의 책, pp.35-36 참조

3. 경 제

베트남은 2000년 이후 6%대 성장률에 진입한 이래 2002년～2004년 들어 7%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07년에는 8.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GDP는 715억 달러 규모에 달하였다. 2008년 초 경제과열에 따른 경제위기 우려로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이 있었으나, 2008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6.5%를 기록하며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2000년～2007년 산업분야 생산증가율은 3.46～4.34%로 GDP 성장에 가장 기여도가 컸으며, 서비스분야 생산 증가율은 2.23～3.5%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등 베트남 산업분야가 GDP 성장 기여도 및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2007년 베트남 산업분야의 생산은 17.1% 증가한 359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2005년 이후 17%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정부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2008년 상반기 산업분야 생산은 7% 성장을 보여주었다.

<표 1> 2008년 상반기 베트남 경제 현황

구 분	2005년 상반기	2006년 상반기	2007년 상반기	2008년 상반기
경제성장률(GDP,%)	7.63	7.4	7.91	6.5
소비자물가지수(%)	5.2	4	5.2	18.44
산업성장률(%)	15.6	16.1	16.9	16.5
수출(US$ 십억)	14.4	18.7	22.5	29.7
수입(US$ 십억)	18	20.7	27.2	44.5
무역적자	-3.6	-2	-4.7	-14.8
외국인직접투자 (US$ 십억)	2.7	2.85	4.8	30.9

(출처: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의 물가상승은 2004년 7.7%, 2005년 8.3%에 이어 2007년 12.63%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08년 상반기에는 실질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18.44%의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 긴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2008년 5월 한 달간 3.91%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은 6월에 2.14%로 상승속도가 둔화되었으며 호치민, 하노이 등 대도시의 토지 및 아파트 가격은 25% 가량 하락하며 자산시장의 거품이 해소되는 현상을 보였다.

베트남의 국제교역규모는 1995년 100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12년만에 1천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 이후 국제 교역규모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베트남 경제발전 속도와 괘를 함께 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 말 기준 수입은 전년대비 38.9% 증가한 608.3억 달러, 수출은 18.5% 증가한 483.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총 교역금액은 1,098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베트남의 GDP대비 수출비중은 1990년 30.8%에서 2000년 46.5%, 2005년 61.3%, 2007년 67%에 이르며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수치는 아시아에서 다섯번째,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높은 수출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외국인투자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2008년 상반기 중 총478건, 309.4억 달러의 투자유치를 기록함에 따라 48억 달러였던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6배 이상 확대되었다.[5)]

<표 2> 연도별 외국인의 베트남 투자 동향

(단위: 건, 백만 달러)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1~6월)
투자건수	723	798	833	1,554	478
투자금액	2,222.15	4,002.7	7,839	18,718.4	30,946

(출처: 베트남 계획투자부)

5) 박동욱・이아영, □□베트남 경제분석과 향후 전망□□, KOTRA, 2008. 9, pp.3-15 참조.

우리나라의 2008년도 대 베트남 투자누계는 165억 달러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투자건수는 2,058건으로 1위), 진출기업의 업종은 제조업 68%, 무역업 8%, 건설업 6%, 운송창고업 4%, 금융보험업 3%, 통신업 3%, 농림어업 2% 순이다. 우리나라와 베트남과의 교역은 수교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교역액은 1992년 대비 약 20배가 증가하였고, 주요수출품은 광물성 연료, 직물,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이며 주요 수입품은 수산물, 광물성 연료, 섬유제품, 농산물이다. 즉, 우리나라는 자본재 및 원부자재를 수출하고, 베트남은 농수산물 등 1차 상품과 일부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는 현지 우리기업들이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제3국에 수출하여, 베트남의 수출증대에 상당부분을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6)]

<표 3> 대 베트남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교역액 (증감률)	30.7 (13.3)	39.3 (27.9)	41.2 (5.0)	48.5 (17.6)	71.5 (47.4)	98.4 (37.6)
수출액 (증감률)	25.6 (14.3)	32.6 (27.1)	34.3 (5.4)	39.3 (14.4)	57.6 (46.7)	78.04 (35.5)
수입액 (증감률)	5.1 (8.6)	6.7 (31.8)	6.9 (3.1)	9.3 (5.0)	13.8 (49.7)	20.37 (46.4)
수지	20.5	25.8	27.4	30	43.7	57.7

(출처: 외교통상부, 베트남 개황, 2009)

6) 외교통상부(2009), 앞의 책, pp.93-95 참조.

이처럼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 확대 등 경제·통상관계의 증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사회 및 문화

베트남의 행정구역은 5개의 특별시와 58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인구는 약 8,510만 명(2008년 추정)으로 추산되며 수도인 하노이에는 약 629만 명이, 호치민에 약 634만 명, 하이퐁에 약 183만 명, 다낭에 약 85만 명이 살고 있다.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96.6으로 여초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 국민의 73%(약 6천만 명)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나, 베트남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으며 이주하려면 지역 경찰에 등록 신고를 거쳐 주민등록부를 발급받아야 하고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려면 거주 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 대도시에는 상당수의 불법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베트남의 민족은 Viet족이 전 국민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이, 므엉, 크메르 등 54개 산악소수민족, 화교(약 100만)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의 공용어는 베트남어이며, 4종의 소수민족 언어를 법률상 허용하고 있다. 베트남어는 중국어의 4성조 보다 많은 6성조로 발음의 장단, 고저에 따라 의미가 다르며, 중국문화의 영향으로 한자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약 60%).

베트남 내에서 신자가 가장 많은 종교는 불교인데 베트남 국민 중 약 1천만 명이 불교를 믿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사찰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카톨릭은 16세기경부터 포르투갈이나 프랑스 사제들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신자는 약 550만 명이고, 개신교의 신자는 약 130만 명이다. 이 밖에 까오 다이(Cao Dai, 유·불·도 혼합), 호아 하오(Hoa Hao) 등의 종교가 있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일반적으로 미신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 자이(ao dai)는 '긴 옷'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19세기부터 입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76년 사회주의 정부가 노동에 부적합하고 퇴폐적이란 이유로 착용을 금지했다가 86년 도이 머이 정책 추진 이후 완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각종 예식에서 즐겨 착용하고 여고생들의 교복이나 주요 기업체의 제복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논(non)은 13～15세기 중 쩐(Tran) 왕조 시대에 유행한 모자로 비가 올 때는 우산으로, 햇볕이 내려 쬘 때는 양산이 되며, 더울 때는 부채로도 쓰이고 있다.

베트남의 국경일은 신정(1.1), 구정(음력 12.30～1.3), 전승기념일(4.30), 노동절(5.1), 건국기념일(9.2)이고 국경일이 휴일과 겹치면 다음날을 쉰다. 음역 정월 초하루(뗏, Tet)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명절로서 설날의 첫 방문자는 그해의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어 고위 인사나 돈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도 하며, 첫 방문자는 조상신을 모신 제례상에 향불을 피우고 덕담을 하고, 어린이에게는 세배 돈을 나누어 주는 풍습이 있다. 또한 베트남인들은 숫자 9를 으뜸이자 신성한 수로 여기며, 13은 액운의 상징으로 여기고, 숫자 5는 베트남어로 위험의 뜻과 비슷하여 숫자의 합이 5가 되거나 15, 25 등 5로 끝나면 이를 기피하는 풍습이 있다.

최근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매우 활발하며, 공산당과 정부, 단체 등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현 11대 국회의원 27.1%(총 498명 중 135명)가 여성이다. 베트남 정부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여 일정 비율(종업원 100명 이하 업체의 50%, 종업원 100명 이상 업체의 30%)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베트남이 당면한 사회적 문제들은 풍기문란(매춘 등), 부정부패, 마약, 밀수, 빈부격차 등을 지적할 수 있고 베트남 사회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신의 약 40%가 낙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AIDS 환자 발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정부에서 이에 대한 계몽에 앞장서고 있다.[7]

5. 법 제

베트남은 기원전 179년부터 약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중국의 많은 영향을 받았고, 법제 또한 중국에 의해 만들어지고 적용되었다. 초기 중국 한나라가 지배할 때까지는 주로 베트남인의 저항을 진압할 목적으로 각종의 형벌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고, 그 근거는 한나라의 법률이었다. 특히 행정,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각종 규정은 베트남인을 중국의 법제에 동화시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다. 베트남 독립 왕조하의 법제는 왕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과 중앙집권 봉건체제 및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프랑스 식민지배하에서는 프랑스 식민당국이 베트남에서 정권 유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통킹(Tonkin), 안남(Annam), 코친차이나(Cochinchina) 등 세 지역으로 분할 통치를 실시하면서 유형 상 베트남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한 법과 서로 다른 세 개의 지역에서 상이하게 적용한 법으로 나뉘었다. 이후 1945년 9월 호치민을 주석으로 한 베트남민주공화국은 헌법을 제정하였고, 프랑스의 식민 지배가 끝난 후 1959년 헌법 개정과 베트남 전쟁 후 1980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을 공포하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민의 기본 권리 및 의무, 국가 기관의 조직과 활동 원칙 등을 규정하였다. 이후 1992년 헌법 개정과 2001헌 헌법 개정을 통해 지금의 법제를 구성하고 있다.[8]

---

7) 외교통상부(2009), 앞의 책, pp.77-80 참조; 주 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상세개관 (http://vnm-hanoi.mofat.go.kr/ kor/as/vnm-hanoi/affair/opening/index.jsp) 참조.

8) 계경문, “베트남의 법제의 연혁과 구조적 특징”, □□동남아 연구□□, 제19권 제1호, 동남아연구소, 2009. 5, pp.5-22 참조.

베트남은 1986년 도이 머이 이후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였으며, 1987년 12월 외국투자법의 제정은 국가가 외국 개인 및 조직이 베트남 법률에 부합하는 베트남에 대한 자본 및 기술투자를 장려하여 외국 개인 및 조직의 합법적인 자본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보장하게 되는 원천이 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WTO 가입을 위해 국내법 정비의 일환으로 민사소송법, 민법, 상법, 파산법, 지적재산법, 전자거래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법 개정을 하여왔으며, 특히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다 더 좋은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자 그 동안 여러 차례 수정하여 온 외국투자법과 1998년 제정된 국내투자장려법을 통합하여 외국투자자와 국내투자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새로운 공동투자법을 2005. 11. 29. 제11대 국회 제8차 회의에서 새로운 통일기업법과 함께 통과시켰다.[9)]

제 2 절 베트남의 역사

1. 선사시대 ~ 왕조시대

베트남의 부족국가 발생 전의 선사시대의 존재는 1965년 랑썬(Lang Son)성에서 약 50만년 전 전기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Sinanthropus와 유사한 유골화석 2구의 발견과 1965년 타잉호아(Thanh Hoa)성 도썬(Do Son)에서 약 30만년전의 슐리앙(Chellean)형 손도끼를 포함한 석기 수천 점을 발견, 이 밖에 구석기 유적과 유물이 여러 곳에서 출토됨으로서 추정할 수 있다. 1천만년에서 7천년 사이 호아빙(Hoa Binh) 문화시기에 원시적인 농경이 시작되었고 토기가 제작되었으며, 호아빙 문화를 뒤이어 박썬(Bac Son, 8천-6천년전), 다붓(Da But, 6천-5천년전), 하롱(Ha Long, 6천-5천년전), 동나이(Dong Nai, 약 4천년전) 등의

9) 전병서, □□베트남 투자・금융법제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8. 11, pp.3-4.

문화가 북부, 중부, 남부에서 연속적으로 발전하여 4천년전 부터는 청동기 시대로 진입하였다.

베트남 최초의 부족국가는 반랑(Van Lang, 文郎)인데, 반랑의 건국 신화는 중국 신화의 나오는 신농씨(神農氏)의 3대 후손인 데민(De Minh, 帝明)이 부띠엔(Vu Tien, 婺僊)과 결혼하여 아들 록뚝(Loc Tuc, 祿續)을 낳았다. 록뚝은 턴롱(Than Long, 神龍)을 아내로 맞이하여 락롱꿘(Lac Long Quan, 貉龍君)을 낳았는데, 락롱꿘은 어우꺼(Au Co, 嫗姬)와의 사이에 커다란 알을 하나 낳았고 그 알에서 100명의 아들이 태어났다. 100명의 아들 중에 락롱꿘이 50명의 아들을 데리고 바다로 가고, 어우꺼는 50명의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는데, 산에 남은 50명 중에서 가장 강한 자가 최초의 훙브엉(Hung Vuong, 雄王)으로 봉해져 왕위를 계승하였고, 나라 이름을 반랑이라 했다. 이 반랑이 베트남 최초의 국가이다.

BC257 툭판(Thuc Phan)이 반랑국을 멸망시키고 어우락(Au Lac)국을 건국하였으며 툭판은 꼬로아(Co Loa, 현재 하노이시 동아잉현)에 요새를 건설, 도읍으로 삼고 안즈엉브엉(An Duong Vuong, 安陽王)이 되었다.

BC207 중국의 진나라가 멸망한 틈을 이용하여 관리였던 찌에우다(Trieu Da, 趙陀)가 번우(현재 광동성 광조우시)를 중심으로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를 영역으로 한 남비엣(Nam Viet, 南越)국을 건국하였다.

BC111 중국 한나라에 의해 남비엣국이 멸망하고 한나라는 베트남 북부지역에 3개 군을 설치하여 식민지배 개시하였는데 이시기에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교육제도, 한자 및 서적, 행정제도, 제방축조술, 토지 개발방법 등을 도입하였고 유교, 도교, 불교 등 고등 종교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중국지배에 대해서 쭝자매(Trung Trac, Trung Nhi, 40-43), 찌에우어우(Chieu Au 또는 Ba Chieu, 248), 리비(Ly Bi 또는 Ly Nam De, 544-547), 마이툭 로안(Mai Thuc Loa, 722), 풍흥(Phung Hung) 등이 저항과 반란을 일으켰다.

베트남의 최초의 독립왕조인 응오(Ngo, 吳) 왕조(939-944)는 응오꾸엔(Ngo Quyen)이 938년 중국의 남한군을 바익당(Bach Dang)강 전투에서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하여 수도를 꼬로아(Co Loa)로 정함으로서 시작된다.

딩보링(Dinh Bo Linh)은 965년 응오꾸엔 사망 후 지방을 근거로 할거하는 토착세력간의 치열한 쟁투시기인 12사군 시대를 종식 시키고 베트남을 통일하여 딩(Dinh, 丁) 왕조(965-980)를 건설하였다.

전기 레(Le, 黎) 왕조(980-1009)는 레호안(Le Hoan)이 980년 침입한 송군을 물리치기 위한 출전에 앞서 딩또안(Dinh Toan)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전기 레(Le) 왕조를 세운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불교문화 번창, 교육의 질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리(Ly, 李) 왕조(1009-1225)는 레호안 사망후 리꽁우언(Ly Thai To, 李太祖)이 관리와 승려들의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올라 1010년 수도를 교통의 요지인 탕롱(Thang Long, 현 Hanoi)으로 옮기고 불교를 장려하고 세제 및 지방 행정제도를 개혁하는 등 왕조의 영속을 위해 노력하였다. 리왕조의 평가로는 불교보호, 지방행정제도 및 조세제도 정비 등 중앙집권화를 이룩하고, 문묘 건립(1070) 및 과거실시(1075), 국자감 설치(1076), 중국으로부터 전수 받은 관개기술을 활용한 수로건설, 광대한 농토개간 등 유교적 농경문화가 확고하게 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리왕조의 뒤를 이은 쩐왕조(Tran, 陳) 왕조 (1225-1400)는 강력한 정치제도와 군사조직에 힘입어 세 차례에 걸쳐 몽골의 침입을 물리쳤으며, 리왕조 시대 못지않게 불교가 융성하였으나 후기에는 불승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차 후퇴하고 과거제도에 의해 선발된 유교적 소양을 갖춘 문인 층에 의해 정치가 주도되었다.

쩐왕조의 인척으로 실권을 장악한 호뀌리(Ho QuyLy)는 1400년 왕위를 찬탈하고(호(胡) 왕조(1400-1407)) 세제를 개혁하고 한전법을 제정하여 왕실과 귀족의 토지소유를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고유 문자인 쯔놈

(Chu Nom)을 장려하였다. 이후 명(양락제)은 베트남을 정벌하여, 그때까지 알려졌던 이름인 '안남'을 '쟈오찌'로 바꾸고 1407년부터 1428년까지 27년간 명제국의 일부로 통치하면서 과거 베트남이 중국의 식민지였던 때와 같은 동화정책을 실시하였다.

1427년 레러이(Le Loi)가 응웬짜이(Nguyen Trai)의 도움을 받아 명의 군대를 격퇴하고 후기 레(Le, 黎) 왕조 (1428-1788)를 창건하였으며, 오랜 전란으로 피폐된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행정체제의 확립, 토지제도의 개혁, 학문과 교육의 진흥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동남아에서 가장 발달된 법전인 '여조형률(黎朝刑律)'을 편찬하였다.

후기 레(Le)왕조가 수립된지 약 100년이 흐르자 왕권이 약화되면서 권신들이 세력을 다투는 사이 1527년 막당쭝(Mac Dang Dung)이 왕위를 찬탈하여 막(Mac, 莫) 왕조(1527-1592)를 건설하였으나, 응웬(Nguyen), 찡씨(Trinh)에 의한 레(Le) 왕조의 부흥운동이 결실을 맺어 1592년에는 막씨는 까오방(Cao Bang) 지방으로 축출되었다.

막씨가 축출된 다음 일시적으로 베트남이 통일되었으나 북부에서는 찡씨가 레왕조를 받들고, 중남부에서는 응웬씨가 권력을 잡고 서로 주도권을 다투었으며(1593-1770), 재건된 레왕조의 황제는 부어(Vua)라 불리는 합법적인 지배자로 인정되었지만 실권은 쭈어(Chua)라 불리는 찡씨와 응웬씨가 장악하였다.

1771년대 중부지방(Binh Dinh)에서 응웬(Nguyen)씨 3형제(응웬 반 냑, 응웬 반 르, 응웬 반 후에)가 응웬가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떠이 썬(西山, Tay Son) 농민 반란을 일으켜 관리들의 부패와 토지수탈에 분노한 농민들 사이에 상당한 지지를 받아 찡씨와 응웬씨를 몰아내고 떠이 썬(Tay Son, 西山) 왕조(1771-1802)를 수립하였다. 떠이 썬의 막내 응웬 반 후에(Nguyen Van Hue)가 북부에서 중국 군대를 물리쳐 찡(Trinh)가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꽝쭝(Quang Trung) 황제로 즉위하여 농민들을 위한 개혁정책과 봉건영주제 폐지 등을 시도했으나 꽝쭝 황제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함으로서 떠이 썬 왕조가 붕괴되었다.

프랑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떠이 썬 반란군으로부터 생명을 보전한 응웬 푹 아잉(Nguyen Phuc Anh)이 프랑스 용병(300명)의 도움과 의병의 호응을 받아 떠이 썬 세력을 격파하고 1802년 마지막 봉건 왕조인 응웬(Nguyen, 阮) 왕조(1802-1859)를 수립하고 후에에 정도 하였다. 응웬왕조는 프랑스 식민지 체제하에서도 마지막 황제 바오다이 (Bao Dai)가 퇴위한 1945년까지 존속하였다.[10]

2. 프랑스 식민시대 ~ 베트남 독립

서방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식민지화에 베트남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프랑스는 카톨릭 선교사들의 보호와 대표부 설치를 앞세워 스페인과 연합하여 1859년 사이공, 지아딘 및 미토를 점령하였고, 1867년 남부 코친차이나 전 지역을 점령하였다. 이러한 프랑스의 식민지 행위는 계속되어 1873년 홍강을 통한 중국 내륙의 진출을 목적으로 북부 통킹에 무력으로 진출하였다.

1883년 프랑스의 위협에 따라 응웬 왕조와 프랑스 사이에 아르망조약을 체결하여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전락되었고, 또한 1893년 라오스를 인도차이나 연방에 편입시켰다. 베트남은 1915년 유럽전선에 14만명의 베트남인이 병사, 노동자로 징발되는 고초까지 겪게 되었다.

1919년 응웬 아이 꾸옥(호치민)은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 8개항의 "베트남인민의 요구"를 제출하였으며 1930년 베트남 공산당을 결성하여 대불 투쟁을 전개하였다. 응웬 아이 꾸옥은 1941년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주체로 하는 "베트남 독립동맹(베트민)"을 결성하였고, 1944년 12월 베트남 인민군의 전선인 "해방군 무장 선전대"를 조직, 1945년 3월 일본군 프랑스 식민당국을 축출하고 베트남을 직접 지배하였다.

10) 유인선, □□새로쓴 베트남의 역사□□, 도서출판 이산, 2002, pp.21-264 참조; 송정남, 앞의 책, pp.43-439 참조; ; 주 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역사(http://vnm-hanoi.mofat.go.kr/kor/as/vnm-hanoi/affair/opening/index.jsp) 참조, 주 호치민 영사관 베트남 역사(http://vnm-hochiminh.mofat.go.kr/kor/as/vnm-hochiminh/affair/opening/index.jsp) 참조.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며 항복을 하자 1945년 9월 2일 호치민은 베트남 민주 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후 1945년 9월 일본의 무장해제를 위해 북위16도선 이북에는 20만의 장개석 군이, 이남에는 영국군이 진주하여 연합군이 베트남에 진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1946년 1월 영국이 프랑스에게 전권을 이양하고 1946년 2월 프랑스와 중국 간의 협정에 의해 북위 16도선 이북의 관리권을 프랑스가 획득함으로서 프랑스가 베트남을 다시 지배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지배와 약탈이 계속되는 동안 국민들은 고통에 시달렸다. 이에 1946년 12월 베트민 군이 하노이에서 일제 봉기를 시작,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대불전쟁)이 발발하였다. 또한 인도차이나 지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이 프랑스를 적극 지원하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하게 되었다. 1950년 1월 중국과 소련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승인하자 미국과 영국은 2월에 베트남국(바오 다이 정권)을 각각 승인함으로서 사실상 2개의 국가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1954년 5월 프랑스가 주둔했던 디엔비엔푸를 보 응웬 지압(Vo Nguyen Giap)의 게릴라 군이 탈환을 하였고, 1954년 7월 제네바협정에 조인, 북위 17도선을 잠정 군사 분계선으로 하여 베트남을 남과 북으로 분할되었다.[11)]

3. 베트남 전쟁

1955년 10월 26일 남부에는 미국이 지원하는 베트남 공화국이 성립되었고 초대 대통령으로 응오 디 지엠(Ngo Dinh Diem)이 취임하였다. 북부에는 호치민 정부가 통치하게 되었다. 이후 북부 베트남 공산당

11) 유인선, 앞의 책, pp.265-388 참조; 송정남, 앞의 책, pp.441-587 참조; 주 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역사(http://vnm-hanoi.mofat.go.kr/kor/as/vnm-hanoi/affair/opening/index.jsp) 참조, 주 호치민 영사관 베트남 역사(http://vnm-hochiminh.mofat.go.kr/kor/as/vnm-hochiminh/affair/ opening/index.jsp) 참조.

은 남부 베트남에 공산주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여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NLF, 속칭 베트콩)을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은 북베트남에 대한 공작과 함께 남베트남을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

남베트남 정부와 베트콩 사이의 교전은 끊임없이 발발하였고, 당시 남베트남 지엠 정권의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비현실적인 이주 정책으로 농민들의 반발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농민들의 베트콩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1963년 11월 1일 남베트남의 쿠데타군은 지엠 정권을 붕괴시키며 즈엉 반 민(Duong Van Minh)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신정부가 출범하였으나, 신정부는 통치력이 결여 되어 있었고, 남베트남의 사회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이에 응웬 카인(Nguyen Khanh) 장군은 1964년 1월 30일 새로 쿠데타를 일으켜 신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처럼 남부 베트남은 계속된 쿠데타와 베트콩과의 교전으로 사회적 불안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었다.

그러던 중 1964년 8월 2일 통킹 만에서 순찰 중이던 미국 구축함 매독스(Maddox)호가 북베트남의 어뢰정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 사건은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지상군을 투입하는 계기가 되었고 베트남 전쟁(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시초가 되었다.

1973년 1월 미국, 북베트남, 남베트남, 남베트남 임시 혁명정부는 8년간에 걸친 전쟁을 끝마치기 위해 파리에서 평화 협정에 조인하였고, 1975년 4월 30일 남부 베트남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어 1976년 7월 2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 수립되었다.[12)]

12) 유인선, 앞의 책, pp.388-426 참조; 송정남, 앞의 책, pp.589-617 참조; 주 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역사(http://vnm-hanoi.mofat.go.kr/kor/as/vnm-hanoi/affair/opening/index.jsp) 참조, 주 호치민 영사관 베트남 역사(http://vnm-hochiminh.mofat.go.kr/kor/as/vnm-hochiminh/affair/opening/index.jsp) 참조.

4. 통일 베트남

통일된 베트남은 그 후 1978년 10월 캄보디아를 침공하였고 중국과도 1979년 2월 국경전쟁을 치루며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베트남 공산당은 제6차 전당대회를 통해 도이 머이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캄보디아에 주둔해 있던 베트남 군대를 철수 하였으며, 1991년 중국과도 국교를 정상화 하는 등 변화와 개방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 성장을 위한 시장개방과 WTO 가입과 UN 비상임이사국 진출 등의 외교정책으로 베트남은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적·경제적으로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13]

13) 송정남, 앞의 책, pp.618-644 참조; 주 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역사(http://vnm-hanoi.mofat.go.kr/kor/as/vnm-hanoi/affair/opening/index.jsp) 참조, 주 호치민 영사관 베트남 역사(http://vnm-hochiminh.mofat.go.kr/kor/as/vnm-hochiminh/affair/opening/index.jsp) 참조.

제 3 장 베트남 통치기구의 특징

제 1 절 개 관

베트남은 헌법[14]전문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으로 국가를 건설하였음을 명시하여 사회주의공화국임을 천명하였고, 헌법 제4조에서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노동자의 선봉대이고 노동자, 농민계급 및 전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신봉하는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베트남은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 하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국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6장에서 국회, 제8장에서 정부, 제10장에서 인민재판소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서 국가의 3권(입법, 사법, 행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헌법 제83조에서 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비록 국회가 국가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공산당은 상위의 국가권력기구이며, 3권이 분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규정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15] 또한 베트남에서는 국가권

14) 베트남 헌법(2001년 개정판)의 번역본은 주 베트남 대사관 정보마당 공유정보 1번문서(베트남 헌법)(http://vnm-hanoi.mofat.go.kr/kor/as/vnm-hanoi/information/ownership/index.jsp)를 참조하였다. 이하 베트남 헌법을 인용한 것은 이와 같다. 그 외 베트남 일부 법률의 번역본은 외교통상부에서 발간하는 공식 번역본을 인용하였다.

15) 사회주의 국가법이론에 따라 민주적 중앙 집중제 원칙과 계급주의・집단주의 원칙을 기본적인 통치기구 또는 국가권력기관의 조직과 운영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모든 권한을 최고주권기관인 국회에 통합시켜 입법권을 직접 행사하고, 국가주석과 정부를 비롯한 나머지 국가기관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과 정책에 따라 그 감독 하에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제한적 수임기관으로 기능하고 … 일당독재의 중심축인 공산당이 헌법상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에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력은 통일적인 것이라고 이해하며 국가권력의 분립이라는 관념을 채용하지 않고 권력분립의 관념 대신에 사무 내지 임무의 분배 내지 분업이라는 관념만이 인정되고 있다고도 한다.16)

이하에서는 베트남의 통치기구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바, 먼저 베트남 공산당의 지위와 역할을 검토하고 입법부(국회)의 권한과 구성, 사법부의 구성과 역할, 행정부의 구조와 각 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 이효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아시아법제연구□□ 제3호, 한국법제연구원, 2005. 3, p.266.

16) 김치환, “베트남의 사법제도 개관”, □□아시아법제연구□□ 제2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9, p.182.

<그림 1> 당·정부조직 및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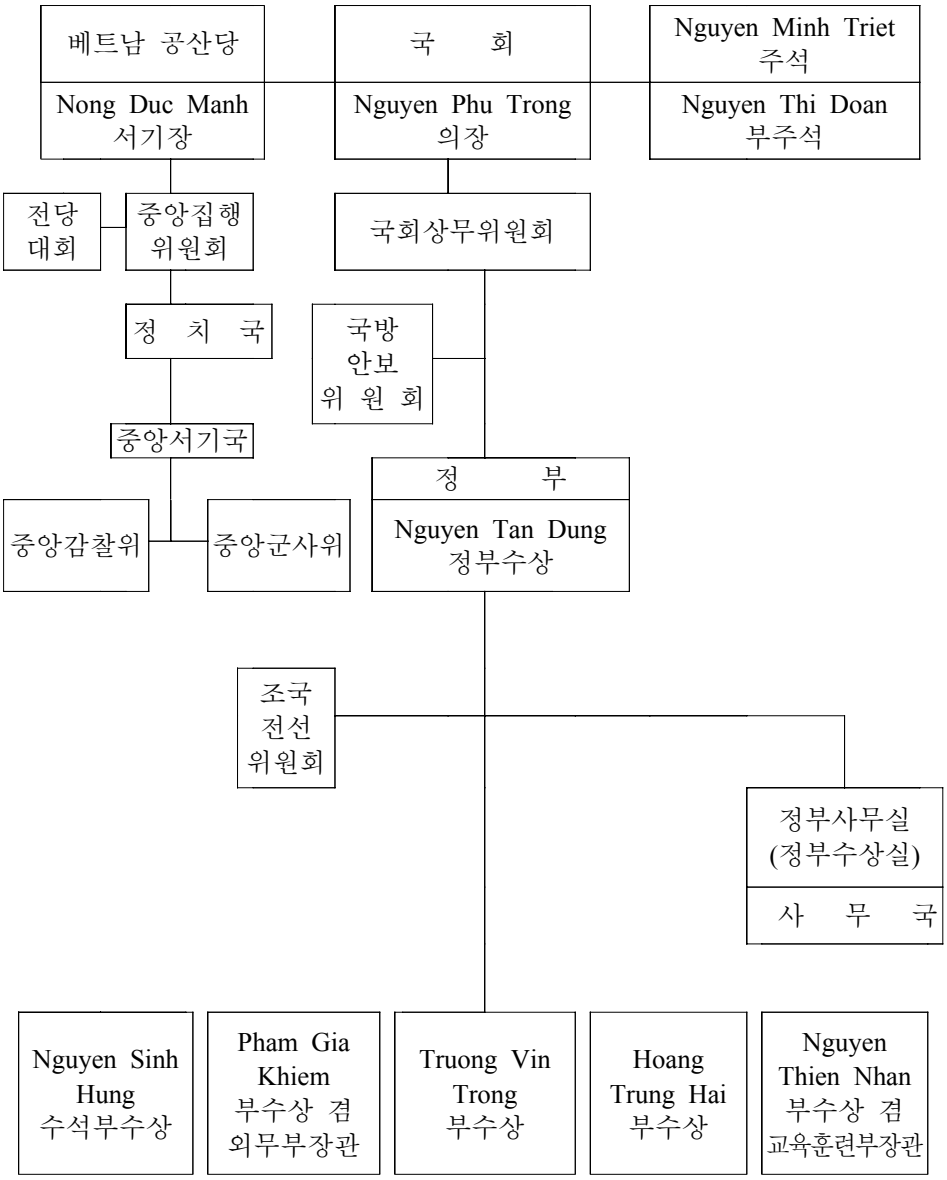

(출처: 외교통상부, 베트남 개황, 2006)

제 2 절 공산당

1. 연 혁

호치민(본명 : Nguyen Ai Quoc)은 프랑스 식민주의에 대항하고 베트남을 해방시키고자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해 연구하면서 베트남 공산당 창당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25년 중국의 광동(廣東)으로 건너가 '베트남 청년 혁명동지회'를 설립하였다. 그 당시 베트남 내에는 세 개의 공산세력(인도차이나 공산당, 안남 공산당, 인도차이나 공산주의 연맹)이 존재하였는데, 베트남의 공산주의 조직을 통합하기 위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끼고 1930년 2월 홍콩에서 회의를 갖고 베트남 공산당을 창단하였다. 이후 그 해 10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1회 당 중앙위 회의에서 코민테른 지령에 의해 당명을 베트남 공산당에서 인도차이나 공산당으로 개명되었고, 그 후 1951년 제2차 당 전당대회에서 베트남 노동당으로 당명을 변경한데 이어, 베트남 통일 후 1976년 개최된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명을 다시 베트남 공산당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17)]

2. 임무 및 권한

베트남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헌법 전문에서 '1930년부터 호치민 주석에 의해 창당되고 연마된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 하에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 고난과 희생 속에서 혁명투쟁을 진행하여 8월 혁명을 성공시켰다'고 선언하고, 제4조는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노동자의 선봉대이고 노동자, 농민계급 및 전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신봉하는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

17) 베트남 공산당사연구회(김종욱 역), □□베트남 공산당사□□, 도서출판 소나무, 1989. 참조; 외교통상부(2009), 앞의 책, p. 20 참조.

력이다'고 규정함으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며, 베트남 공산당원은 노동자, 농민, 혁명적 지식인 등으로 구성되며, 당의 기본 정책은 호치민 통치철학인 민족주의적 대중정책을 국가와 사회에 적용하고 대중의 혁명운동과 대중의 집단주권 확립을 통해서 국가번영과 국민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8]

3. 조 직

공산당의 조직은 당 내부의 견해와 행동을 통일하고 당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적 중앙집권주의(democratic centralism)를 채택하고 있으며, 당내 의사결정은 1인 집권체제를 지양하고 집단지도체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피라미드식 구조를 이루고 권력의 정점에서부터 조직 하부에 이르기까지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당서기장은 농 득 만(Nong Duc Manh)이며 1991년 정치국, 1992년과 1997년 2번의 국회의장, 2001년부터 지금까지 2번의 당서기장 직을 역임하고 있다. 서기장의 권한 및 임무는 베트남 공산당 조례 제17조 제2항과 제3항의 당 정치국과 서기국의 권한과 임무를 통해 우회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5절 국가주석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공산당의 기본조직은 '치보(chi bo)'라고 불리는 당 지부인데 이는 생산단위 크기에 따라 3명에서 30명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당 규약에 의하면 '당 지부는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기본조직이며 당 정책을 대중들 사이에서 실행하며 대중들의 여론과 요구 등을 당 지부에 반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조직은 전당대회,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중앙서기국,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감찰위원회로 구성되고, 지방조직은 각 성・시・군・구 등 지역과 직장별로 당위원회와 감찰위원회로 구성된다.

18) 이효원, 앞의 논문, pp.266-267 참조; 외교통상부, 앞의 책, pp.19-20 참조.

<그림 2> 베트남 공산당 조직 및 구조

【 2009.1 당중안집행위원회(제10기 제9차) 회의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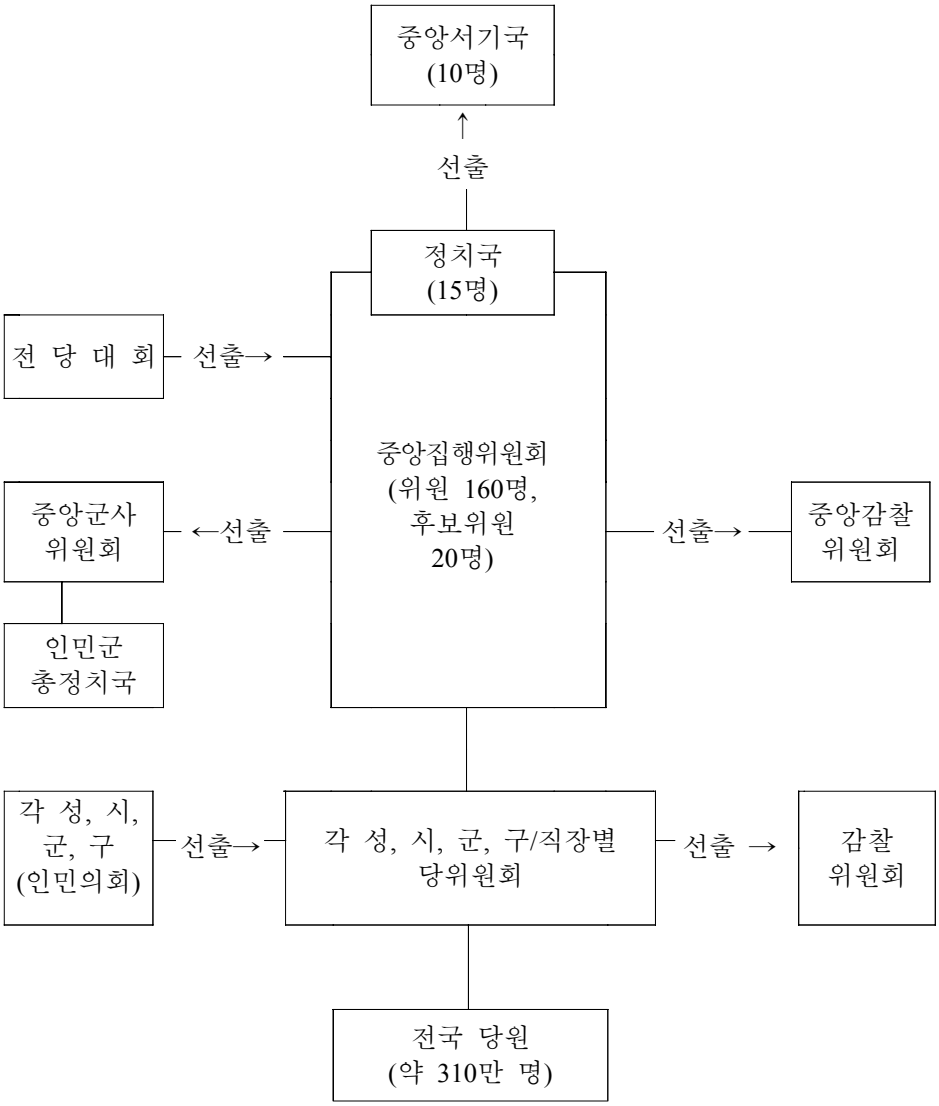

(출처: 외교통상부, 베트남 개황, 2009)

(1) 전당대회

전당대회는 명목상 베트남 공산당의 최고기관으로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며 당의 중요정책을 인준하고 새로운 당 규약을 채택한다. 그러나 전당대회의 규모가 크고(대의원 약 2,000명, 중앙위원 160명(후보위원 21명), 정치국원 14명) 매 5년 마다 열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토의나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추인하는데 그친다. 1935년 3월 제1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호치민을 당대표로 선출한 이후 현재 2006년 4월 제10차 전당대회까지 개최가 되었다.[19)]

개혁・개방체제로 불리는 도이머이 체제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6차・제7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986년 7월, 레 주언(Le Duan) 당서기장이 사망하자 후임으로 쯔엉 찐(Chuong Trinh) 국가평의회의장이 취임하였으나, 1986년 12월의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는 쯔엉 찐, 팜 반 동(Pham Van Dong), 레 득 토(Le Duc Tho) 등 3인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응우옌 반 린(Nguyen Van Linh) 서기장이 등장하였다. 그는 베트남 전쟁 중 남부 베트남에서 당 남부위원회 서기로 활동하였고, 해방 후 호 찌 민 시 당위원회 서기를 역임하기도 했다.

응우옌 반 린(Nguyen Van Linh)이 서기장에 취임한 후 전시형 외국의존경제에서 탈피, 자조자립의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베트남식 개혁개방정책인 도이 머이(Doi Moi, 刷新)정책을 채택하였다. 1987년 2월 각료평의회의 대폭교체와 동년 4월의 총선거에 의한 제8기 국회의 출범 및 이에 따른 인사개편(국가평의회 의장; 보 찌 꽁, 정부수상; 팜 흥) 등이 있었다. 1987년 최초로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했으며, 1988년

19) 외교통상부(2009), 앞의 책, pp.22-25 참조.

1월 외국인투자법과 외국환관리법을 제정, 외국기업에 대하여 99%까지 베트남합작투자를 허용하고 이윤 전액의 본국송환을 보장하는 등 투자환경을 정비하였다.

1988년 3월 팜 흥 수상이 급사하여 동년 6월 국가평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 무어이(Do Muoi)가 임시로 수상직을 수행하던 보 반 끼엣(Vo Van Kiet)과 경선한 결과 64%의 지지로 수상에 선출되었다. 그는 1988년 3월 대외경제부를 신설하는 한편 1989년 3월 금리실세화, 통화의 25% 평가절하 등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1989년 동구와 소련의 변혁에 대해 베트남 공산당은 1990년 3월의 제8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베트남 공산당의 노선 중 경제를 중심으로 한 '도이 머이'정책 강화, 당의 규율 강화와 부패 배제 등을 결의하였다. 또 공산당은 1990년 3월 중앙위원회에서 동구식의 다당제 채택을 거부, 1당 지배체제 원칙을 고수하고 부정부패 척결, 당 체질 개선, 대중과 밀착한 당 건설 등 구체적인 쇄신방안을 채택하였다. 한편 1990년 4월 2일 정부 부처 중 12개 부처를 무역, 교육, 중공업부의 3개 부처로 통폐합하여 행정쇄신을 도모하였다.

1980년 초까지 베트남은 그토록 염원하여 온 정치적 통일의 성과가 무색하게 옛 소련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경영에 기초를 둔 정치·경제체제하에서 생산의 저하, 생활필수품 보급의 어려움, 적자의 증가,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등에 의하여 베트남은 여태까지 견지하여 온 바와는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스스로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6년 제 6차 공산당 대회에서 '개혁'이라는 명칭에 맏형격인 옛 소련을 쫓아 새로운 방향으로 서두르게 되어 몇 년 동안 농업 집산화의 해체, 사기업의 장려, 공공기업의 사기업화에 주력하고 아울러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단기 경제정책을 위한 세계은행의 권고까지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련블록의 붕괴와 베트남의 재정상태 등은 여전히 새로운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 개정된 헌법보다는 좀 더 진전된 형태로 모든 개혁의 합법화를 위하여 사기업투자자와 외국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1991년 6월 국회가 열렸으나 헌법을 개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더구나 위 목적을 추구하다가는 공산당이 권력을 잃고,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서 헌법 개정에 대하여 많은 반대가 있었다. 격렬한 토론 끝에 고도의 경제성장 필요성에 대하여는 남북통일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생활이 더욱 악화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경제개발에 대하여는 대외개방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여전히 공산당 일당독재의 세력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헌법수정안이 통과되었다.[20]

1991년 6월 24일에서 27일까지 개최된 제7차 전당대회에는 약 200만 명의 당원을 대표하는 1,129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그 이전 수년간 시행해 온 도이 머이정책에 대한 정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경제, 사회전략을 설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고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한시적 시장경제도입과 사유재산권의 인정, 전방위 외교의 표방이었다. 제 7 차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은 173명, 정치국원 수는 17명이었고 1992년 9월 제9기 국회에서는 레 득 안(Le Duc Anh)을 주석에 선출하고 보 반 키에트(Vo Van Kiet) 수상 등 개혁파 각료들을 유임시킴으로써 경제개혁 가속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제개발 10개년계획(1991～2000년)을 수립, 200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을 400달러대로 배증(倍增)시키기로 하였다. 외국인투자법 제정 이후 1993년 중반까지 6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다. 이에 따라 92년 8.3%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물가도 인상폭이 한자리수(1993년)에 그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군제대병 증가로 노동인구 3500만 명 중 약 700만 명의

20) 계경문・김종욱, □□베트남의 법제에 관한 연구:외국인투자법을 중심으로□□, 아시아법제연구 3, 한국법제연구원, 2004. 9, pp.36-38.

실업자(실업률 20%)가 발생하고 호치민시 등 남부지역에의 개발이 편중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993년 약 57만 달러의 대(對)베트남 기술원조계획에 서명함으로써 15년 만에 원조를 재개하였으며, 세계은행도 1993년 말 3년간 1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1994년 1월말에는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고 678명의 대표자로 구성된 이 회의에서 베트남 공산당은 1996년 제8기 당 대회까지의 기본노선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는 시장경제화와 대외개방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개혁의 기본 노선을 확인하면서도, 개혁에 따른 부정부패의 심각성, 계층 및 도・농간의 소득격차확대, 교육 및 의료시설의 부족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점 논의되었다. 무엇보다도 정치보고에서 도 므어이 서기장은 공업화를 통한 성장의 가속화가 필요함을 거듭 확인함과 동시에 경제위기의 극복, 정치적 안정, 대외관계의 발전을 향후 주요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시장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다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전국대표자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인 1월 18일 제7기 제7차 당중앙위원회에서 응우옌 마인 껌(Nguyen Manh Cam) 외무장관을 비롯하여 4명의 정치국원이 임명됨과 동시에 중앙위원도 20명이 추가되어 중앙위원 수가 대폭 증원되었다는 점이다. 이때까지도 베트남에 있어서 주요 과제는 사회주의의 고수, 사유권을 인정하는 다부문경제의 실행, 대회개방이라는 3가지 원칙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1991년 베트남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는 없었지만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향후 베트남이 지향할 개혁노선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내외적인 적응을 시도하였다. 1991년 이후 적대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국과의 외교정상화, 캄보디아 문제의 해결,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논의 등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21]

21) 계경문・김종욱, 앞의 책, pp.38-40.

<표 4> 베트남 공산당 역대 전당대회

회	개 최 연월일	개최지	대 표 참가자수	당원수	주요결정사항
1	1935.3	마카오	15명	600명	-호치민을 당대표로 선출
2	1951.2	하두엔성	191명	미 상	-당명을 '베트남 노동당'으로 개칭 -호치민을 당대표로 선출
3	1960.9	하노이	576명	약 50만 명	-제1차 5개년계획('61-'65년) -중앙위원(정위원 74명, 후보위원 31명) 선출 -호치민을 당 대표로 재선 -레두안을 제1당서기장으로 선출
4	1976.12	하노이	1,008명	약 155만 명	-제2차 5개년계획('76-'80년) -중앙위원(정위원 101명, 후보위원 32명) 선출 -레득안 서기장으로 선출 -당명을 '베트남 공산당'으로 개칭
5	1982.3	하노이	1,033명	약 170만 명	-제3차 5개년계획('81-'85년) -중앙위원회(정위원 116명, 후보위원 36명) 선출
6	1986.12	하노이	1,129명	약 180만 명	-제4차 5개년계획('86-'90년) -Doi Moi(쇄신)정책 천명 -경제개혁 기본방침 확정 -중앙위원(정위원 124명, 후보위원 49명 : 계 173명) 선출 -웬반린을 서기장에 선출 -쯔엉 찡, 팜 반동, 레 둑토 퇴진하고 당고문에 취임

회	개 최 연월일	개최지	대 표 참가자수	당원수	주요결정사항
7	1991.6	하노이	1,176명	약 200만 명	-개혁의 가속화와 효율화 지속 추진 -정치국원 6명 교체 -우엔 반 린 서기장이 사임하고 도므어이 수상을 서기장에 선출 -보 반 끼엣 수상 임명 -사회주의노선 고수 -한시적 시장경제 도입과 사유재산권 인정 -전방위외교 표방
8	1996.6	하노이	1,200명	약 230만 명	-현대화, 산업화 방향에 따라 발전 및 경제체제 전환 -지속적인 경제관리체제 개혁 -과학기술 및 교육훈련의 발전 방향 제시 -정치국원을 17명에서 19명으로 증원 -국가지도부 3인(당서기장, 대통령, 수상)유임 -서기국 폐지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신설 -중앙위원회 인원을 161명에서 170명으로 증원
9	2001.4	하노이	1,168명	약 248만 명	-농 득 만을 당서기장으로 선출 -정치보고서, 2001-2010년간 사회·경제개발전략 등 채택 -베트남의 산업화와 공업화를 위한 장기계획과 비전 제시

회	개 최 연월일	개최지	대 표 참가자수	당원수	주요결정사항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를 향후 베트남이 지향하여야 할 체제로 최초로 공식화 -정치국 상무위원회 폐지 및 중앙서기국 설치 -정치국원을 19명에서 15명으로 축소 -중앙위원회 인원을 170명에서 150명으로 축소
10	2006.4	하노이	1,168명	약 310만 명	-Nong Duc Manh 당서기장 재선 -정치국원을 15명에서 14명으로 감원,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을 150명에서 160명으로 증원하고, 후보위원을 신설하여 21명 선출 -리더십 교체 : 14명의 정치국원 중 8명이 신임이며, 국가지도자 4명 중 Nong Duc Manh 당 서기장만 유임시키고, 국가주석, 정부수상, 국회의장 등 60대 후반을 넘긴 원로 퇴진 -정치보고서, 당 강화 보고서, 2006-2010년간 국가 경제사회 발전계획 채택, 당 강령 개정 -개혁·개방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방침 천명 -2020년까지 근대화·산업화된 국가 건설 목표천명

(출처: 외교통상부, 베트남 개황, 2006)

(2) 당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며 당 규약상 전당대회 폐회 기간동안 전당대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세부적인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당의 모든 활동을 지도한다. 그러나 중앙집행위원회가 독자적인 기구로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임의로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사실상 정치국이 결정한 정책이나 세부사항 또는 인사개편을 사후에 승인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정치국에 의해 소집되는데 보통 연 2회 개최되고 정치국원, 당서기장 등을 선출할 수도 있다. 당 중앙집행위원회의 산하기구로는 당 중앙감찰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당 중앙집행위 서기국이 있다.

(3) 당 정치국

당 정치국의 선출은 당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며, 베트남 공산당의 최고 정책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정치국의 인원은 15명이며 당서기장, 국가주석, 정부수상, 국회의장, 수석 부수상, 부수상, 부수상 겸 외교부 장관, 공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중앙감찰위 위원장, 중앙서기국 상부서기, 국회 과학기술환경위 위원장, 호치민시 당서기, 하노이시 당서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국의 권한은 경제건설과 관리, 조직생활, 안보유지, 외교활동 등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며 당 집행여부 감독 및 당의 이데올로기 통합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당 고위 임원 임명 및 국가 고위직 임명을 제청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당 중앙집행위원회 폐회기간 동안 당 중앙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당 중앙집행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4) 중앙서기국

중앙서기국은 1996년 제8차 전당대회에서 폐지하였으나, 2001년 제9차 전당대회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중앙서기국의 구성은 정치국원과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치국이 선출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의 일상 업무 처리 및 지도, 경제・사회・국방・안보・외교 사안에 대한 의결 및 지시, 정치조직간 협력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5) 당 중앙감찰위원회

중앙감찰위원회는 당무 감독 및 당원의 부패와 정치적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부정부패, 마약, 밀수 근절을 위한 사회악 철폐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중앙감찰위원회의 기능이 중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6) 당 중앙군사위원회

당의 군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군사위원회는 중앙군사위원회의 허락 없이는 군사령관이 임의로 군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군부에 통제권을 행사하며 국방정책을 입안하고 군대의 예산, 훈련, 인사이동, 정치교육 등 군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되며 국가주석이 위원장, 정부수상이 부위원장, 국회의장과 부수상 겸 외교부 장관, 공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7) 대중조직

베트남의 대중조직으로는 민족조국전선과 노동조합총연맹, 청년동맹, 여성동맹이 있는데 먼저 민족조국전선(National Fatherland Front)은 남부

의 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및 북부의 베트민(Vietminh)의 계승단체라고 할 것이다. 민족조국전선은 공산당의 전위기구로서 청년, 농민, 여성, 문화, 종교 등 모든 사회단체를 관할한다. 헌법 제9조에서 '베트남 조국전선은 정치연맹의 조직이며, 정치조직의 자원연합이며, 각 사회, 정치조직, 각 급의 대표, 사회의 각 층, 각 민족 및 해외거주 교포의 조직이다. 그 구성조직들이 인민정권의 정치기반이다. 전선은 전 인민의 전통적인 단결을 발휘하고 인민이게 정치와 정신에 관한 일체감을 증진시켜 인민정권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국가와 더불어 인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인민으로 하여금 주권을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을 엄정히 시행토록 하며 국가기관, 민선대표, 간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국가는 조국전선과 그 구성 조직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5조에서는 '베트남 조국전선 의장과 지방에 있는 인민단체의 장들은 인민의회 회기에 초대되어, 참가하며 관련 문제 토의시에는 인민위원회의에 초청된다. 인민의회, 인민위원회는 지방의 모든 정세를 조국전선과 각 단체에 통보하며 지방건설과 경제·사회발전에 관한 각 조직들의 의견, 건의를 경청하며 조국전선과 인민단체들과 연계하여 인민들이 국가와 함께 지방에서 경제·사회와 국방안전 임무를 수행하도록 인민을 동원한다'고 규정하여 조국전선의 역할과 기능을 헌법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조국전선은 국회에 대한 법안상정과 국회 및 지방의회 입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며 이는 사실상 지명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한 기능과 역할은 헌법 제10조에서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정치·사회조직으로서 국가기관, 사회조직과 함께 간부, 노동자, 공무원과 기타 노동자들의 권리를 돌보고 보호하며, 국가의 사회 관리에 참가하며, 국가기관과 경제조직의 활동을 감독하며,

간부, 노동자, 공무원 및 기타 조국건설과 방위 노동자를 교육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자계급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대중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노동도합총연맹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노무관련 내용 협의시 참석할 수 있다.

청년동맹은 호치민 공산청년단, 전위 소년단, 소년단으로 구성되며 공산당원 가입 전에 예비당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여성동맹은 모든 계층의 여성을 대표하는 대중 조직으로 조국전선의 지도를 받으며, 여성의 평등과 개발을 위한 활동과 여성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의 보호 등을 목표로 활동한다.

제 3 절 입법부 (국회)

국회는 헌법상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최고 권력기관이며 유일한 입헌, 입법기관이다. 국회는 국가의 대내외 기본정책, 경제·사회, 국방, 안전 임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공민의 사회관계와 활동에 관한 주요원칙을 결정한다(헌법 제83조).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산당이 국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국회는 공산당의 기본노선과 방침에 따라 국가활동에 대한 기본 사항만을 결정할 뿐, 국회가 독자적으로 국가정책을 입안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중앙집권제' 원칙[22]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모든 권한을 최고주권기관인 국회에 통합시켜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고 국가활동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침을 결정하나, 실질적으로는 일당독재의 중심인 공산당이 국가정책과 노선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국가주석, 정부, 인민재판소와 인민검찰청 등 모든 행정·사법기관은 공산당의 방침에 따라 국회에서 정한 법률과 정책에 따라 그 감

22) 헌법 제6조 국회, 인민의회 및 기타 국가기관은 모두 민주집중원칙에 따라서 조직되고 활동한다.

독 하에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제한적 수임기관에 불과하므로 국회에 대하여 수직적 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23] 따라서 실제로는 국회가 독자적으로 국가정책을 입안하지 못하며 기본적으로 공산당의 정치노선과 주장, 정책을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

국회는 5년 임기의 단원제로 운영되며(12대 국회에 한해 임기 4년으로 단축) 매년 2회(5월, 10월) 정기국회(약 1개월)가 개최되는데 국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주석, 정부수상 또는 국회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회기를 개최할 수 있다. 18세 이상의 베트남 국민이면 선거권이 있으며, 민족조국전선의 추천을 받은[24] 21세 이상의 자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1. 임무 및 권한

헌법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정과 헌법 개정, 법률 제정과 개정, 법, 법령 입안 결정
2. 헌법, 법과 국회의 의결 준수에 대한 최고감찰권 행사,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 정부,최고인민재판소 및 최고인민검찰청의 활동보고 심의
3.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계획 결정
4. 국가의 재정, 화폐, 금융정책 결정, 국가의 예산안과 예산 지출안 결정, 국가예산 결산비준, 각종 세법 수정 및 폐기
5. 국가의 민족정책 및 종교정책 결정
6. 국회, 국가주석,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과 지방정권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

23) 이효원, 앞의 논문, pp.256-270 참조.

24) 국회의원 입후보(ung cu)는 베트남조국전선의 추천이나 자기추천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자천후보자수는 매우 소수이다. 이한우, “베트남의 선거제도와 국회 구성의 변화”, □□동남아시아연구□□ 제16권 제1호, 동남아시아학회, 2006, p.74.

7.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국회의장, 국회부의장과 국회 상무위원회, 각 위원,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총장의 선출, 면직, 정직 ; 국방과 안보위원회 구성에 관한 국가주석의 건의 비준, 정부부수상, 장관 및 기타 정부인사 임명, 면직에 관한 정부수상의 건의 비준
8. 정부의 부 및 기관신설과 해체결정, 성(省), 중앙직속시(市)의 경계선 설정, 행정・경제특구 신설 및 해체 결정
9. 헌법, 법률과 국회의 의결에 위배되는 국가주석, 국회상무위원회,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와 최고인민검찰청의 공문 폐지
10. 특사결정
11. 군, 외교, 외국에 대한 영전 수여, 국가명예, 휘장 수여 결정
12. 전쟁 및 평화문제 결정, 긴급사태, 국가국방과 안전 보장을 위한 기타 특별한 방법 결정
13. 대외 정책 결정, 국가주석이 또는 국가주도의 건의에 따라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의 비준 또는 폐지
14. 국민투표 결정

국회선거법 및 국회의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특별한 경우 최소한 국회의원 총수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할 수 있다(제85조). 국가주석, 국회상무위원회,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 위원장,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 베트남 조국전선과 전선의 구성원인 조직들은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다(제87조). 법, 국회의 의결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국회의원의 해임, 국회임기의 연장 단축, 헌법의 개정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총수의 2/3 이상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법, 국회의 의결은 통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되어야 한다(제88조).

2. 조 직

베트남 국회는 국회상무위원회와 대외위원회, 민족회의, 법률위원회, 경제위원회, 재정 및 예산위원회, 국방 및 안보위원회, 사회문제 위원회, 사법위원회, 과학·기술 및 환경위원회, 문화·교육·청소년 및 아동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국회조직법 제22조[25]).

<그림 3> 베트남 국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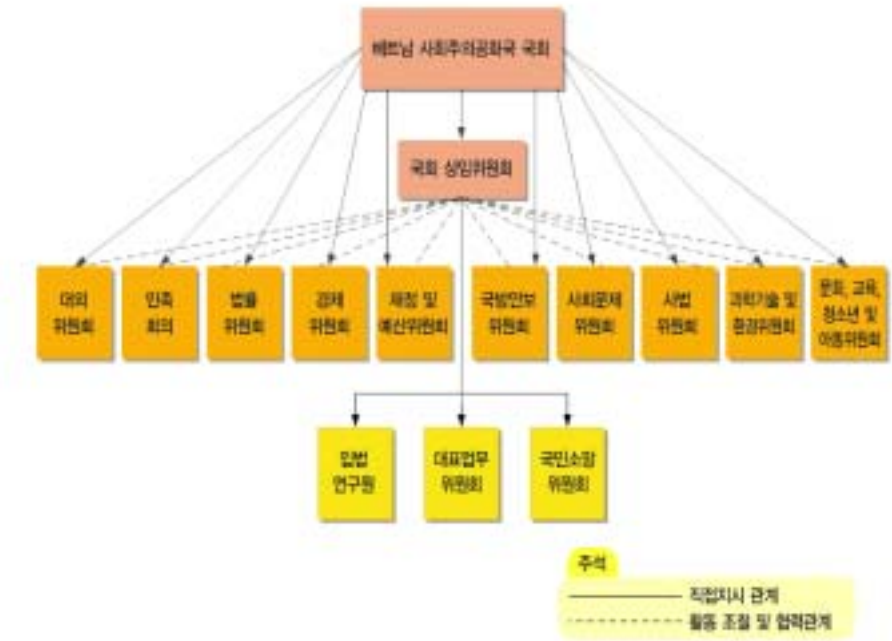

(출처: 베트남 국회 홈페이지(http://www.na.gov.vn/htx/Vietnamese) 참조)

25) 2001년 제정된 국회조직법에는 민족회의 및 7개의 위원회로 구성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07년 국회조직법 일부 개정법에 의해 민족회의와 9개의 위원회로 구성된다고 개정되었다(83/2007/QH11).

(1) 국회상무위원회

국회상무위원회는 국회의 상임기관이고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상무위원회 구성원 수는 국회가 결정하며 구성원은 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매기 국회상무위원회는 새로운 국회가 새로운 국회상무위원회를 선출할 때까지 임무와 권한을 수행한다(제90조).

헌법 제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상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원 선거 공포와 선거를 주재한다.
2. 국회 회기의 준비, 소집한다.
3. 헌법, 법, 법령을 유권해석한다.
4. 국회로부터 부여받은 문제에 관한 법령을 공포한다.
5. 헌법, 법, 국회의결, 국회 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 시행을 감독하고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활동을 감찰하고, 헌법, 법령, 국회의결에 위배된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문서 시행을 정지시키고 그 문서의 폐지를 결정한다. 국회상무위원회의 법령, 의결에 위배된 정부, 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문서를 폐지한다.
6. 인민의회활동을 감독, 지도하며, 성, 중앙직속시 인민의회의 위배의결사항을 폐지하고 성, 중앙직속시 인민의회가 인민의 이익에 대해 심각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해당 인민의회를 해산시킨다.
7.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의 활동을 지도, 조화, 배합시키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지도하고 보장하나.
8. 국회가 회기중이 아닌 때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차기국회시 국회의 비준을 받는다.

9. 총동원령 또는 국부동원령, 전국 또는 일부지방에 긴급상태 선포를 결정한다.
10. 국회의 대외관계업무를 수행한다.
11. 국회의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2) 대외위원회

대외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대외활동영역에 속한 법안, 법령안 및 국회와 국회상무위원회가 교부한 기타 계획안의 심사; 국회의 비준권에 속한 국제조약 및 국회에 보고된 대외업무에 관한 정부의 보고 심사
2. 대외영역에 속한 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 실시 감찰; 국가의 재외정책실현에 있어서 정부, 각 부, 부급 기관의 활동 및 각 분야와 지방의 활동 감찰; 해외거주 베트남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실시 감찰
3. 정부, 정부수상, 각 부 장관, 부급 기관장의 법률규범문서 및 중앙에서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 간의 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과 정치-사회조직의 중앙기관 간의 법률규범문서 감찰
4. 국회상무위원회 및 국회의장의 지도에 따라 각국 국회 및 관련조직과 대외관계실현; 국회상무위원회 및 국회의장을 도와 국회의 각종 대외활동 협력 및 조절
5. 각 유관기관의 조직, 활동과 관련된 각종 문제 및 국가의 대외정책에 관한 문제, 각국 국회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 세계의원조직관의 문제, 기타 국제조직과의 문제, 해외거주 베트남인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문제 건의

(3) 민족회의

민족회의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안, 법령안 및 민족문제와 관련된 기타 계획안의 심사
2. 법률 및 국회의결, 법령, 민족계열에 속한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안 감찰; 소수민족 거주지역 및 산악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계획 및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정부 및 각 부, 부급기관의 활동 감찰
3. 정부 및 정부수상, 장관, 부급 기관의 수장,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의 각종 법률규범문서 및 중앙에서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 간의 법률규범문서 또는 민족문제와 관련된 정치-사회조직의 중앙기관과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 간의 법률규범문서의 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그 문서들의 실시에 대한 감찰
4. 국회 및 국회상무위원회에 국가의 민족정책에 관한 문제 건의; 각종 유관기관의 조직 및 활동과 관련된 문제; 소수민족 관련문제에 대해 정부 및 정부수상, 장관, 중앙에 있는 국가의 기타 기관 및 부급 기관의 수장에게 건의

(4) 법률위원회

법률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률, 법령 수립프로그램에 관한 정부의 예견, 법률, 법령 수립에 관한 국회의원 및 국회직, 기타 기관의 제안, 법률, 법령에 관한 국회의원의 건의 심사
2. 사법기관의 조직을 제외한 국가조직에 관한 법률, 법안 및 민사, 행정에 관한 법률, 법령안 심사; 국회 및 국회상무위원회가 교부한 기타 안 심사

3. 국회 및 국회상무위원회에 보고되어 통과되기 이전의 법안, 법령안에 대한 법률시스템의 합헌성, 합법성 및 통일성 보장
4. 각 부 및 부급 기관의 설립, 해산에 관한 제안 심사 지휘; 중앙직속 성·시의 신설, 병합, 분할 조정, 경계조정; 특별행정-경제단위의 설립 및 해산; 인민의 분쟁해결에 관한 정부의 보고심사
5. 민사, 행정 및 국가조직(사법기관 제외)에 관한 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 실시에 관한 감찰; 정부 및 각 부, 부급 기관의 활동 감찰
6. 정부, 정부수상, 각 부 장관, 부급 기관의 장의 법률규범문서 및 중앙에서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 간의, 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과 정치-사회조직의 중앙기관 간의 법률규범문서 감찰
7. 국가조직 및 법률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건의

(5) 경제위원회

경제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경제, 통화, 은행, 경영활동영역에 속한 법안, 법령안 및 국회와 국회상무위원회가 교부한 기타 계획안 심사
2. 경제-사회발전에 관한 국가계획안 및 프로그램 심사지휘; 경제-사회발전계획 및 임무실시에 관한 정부의 보고 심사
3. 경제, 통화, 은행, 경영활동관리영역에 속한 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실시 감찰; 경제-사회발전 및 경제정책실시에 관한 국가계획안 및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정부, 각 부, 부급 기관의 활동 감찰
4. 정부, 정부수상, 각 부 장관, 부급 기관장의 법률규범문서 및 중앙에서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 간의, 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과 정치-사회조직의 중앙기관 간의 법률규범문서 감찰

5. 각 유관기관의 조직, 활동과 관련된 문제 및 경제, 통화, 은행, 경영활동관리에 관한 문제 건의

(6) 재정 및 예산위원회

재정 및 예산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재정, 예산영역에 속한 법안, 법령안 및 국회와 국회상무위원회가 교부한 기타 계획안 심사
2. 국가예산안 및 중앙의 예산분배방안, 국가예산총결산 심사지휘
3. 재정 및 예산영역에서의 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 실시 감찰; 국가 예산집행 및 재정, 예산정책실시에 관한 정부, 각 부, 부급 기관의 활동 감찰
4. 정부, 정부수상, 각 부 장관, 부급 기관장의 법률규범문서 및 중앙에서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 간의, 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과 정치-사회조직의 중앙기관 간의 법률규범문서 감찰
5. 각 유관기관의 조직, 활동에 관한 각종 문제 및 재정, 예산에 관한 각종 문제 건의

(7) 국방 및 안보위원회

국방 및 안보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국방 및 안보영역에 속한 법안, 법령안 및 국회와 국회상무위원회가 교부한 기타 계획안 심사
2. 국방 및 안보영역에 속한 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 실시 감찰; 국방 및 안보임무 실시에 관한 정부, 각 부, 부급 기관의 활동 감찰
3. 정부, 정부수상, 각 부 장관, 부급 기관장의 법률규범문서 및 중앙에서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 간의, 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

관과 정치-사회조직의 중앙기관 간의 법률규범문서 감찰
4. 각 유관기관의 조직, 활동과 관련된 각종 문제 및 국방, 안보영역에 속한 국회와 국회상무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과 국방, 안보정책에 관한 문제 건의

(8) 사회문제 위원회

사회문제 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노동, 의료, 사회, 종교영역에 속한 법안, 법령안 및 국회와 국회상무위원회가 교부한 기타 계획안 심사
2. 사회문제영역에 속한 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 실시 감찰; 국가의 경제-사회발전프로그램과 각종 계획 중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실현에 있어서 정부, 각 부, 부급 기관의 활동 감찰
3. 정부, 정부수상, 각 부 장관, 부급 기관장의 법률규범문서 및 중앙에서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 간의, 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과 정치-사회조직의 중앙기관 간의 법률규범문서 감찰
4. 각 유관기관의 조직, 활동과 관련된 각종 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법 건의

(9) 사법위원회

사법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형사,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사법보조, 각 사법기관의 조직구조, 법안, 법령안 및 국회와 국회상무위원회가 교부한 기타 계획안 심사
2. 위법행위 및 범죄 예방작업, 재판시행에 관한 정부의 보고 심사; 최고인민재판소장 및 최고인민검찰원장의 업무보고 심사; 부패방

지업무에 관한 정부의 보고 심사지휘
3. 형사,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사법보조, 사법기관조직에 관한 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 실시 감찰; 조사, 소추, 판결, 재판시행, 사법보조에 관한 정부 및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의 활동 감찰
4. 정부, 정부수상, 각 부 장관, 부급 기관의 장,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의 법률규범문서 및 중앙에서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 간의, 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과 정치-사회조직의 중앙기관 간의 법률규범문서 감찰
5. 부패행위 감찰
6. 각종 유관고직의 활동과 관련된 문제 및 형사,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사법보조, 사법기관의 조직과 관련된 문제 건의

(10) 과학기술 및 환경위원회

과학기술 및 환경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과학, 기술, 생태환경보호영역에 속한 법안, 법령안 및 국회와 국회상무위원회가 교부한 기타 계획안 심사
2. 과학, 기술, 생태환경보호영역에 속한 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 실시 감찰; 국가의 경제-사회발전프로그램과 각종 계획 중 과학, 기술, 생태환경보호 발전에 관한 정책실현에 있어서 정부, 각 부, 부급 기관의 활동 감찰
3. 정부, 정부수상, 각 부 장관, 부급 기관장의 법률규범문서 및 중앙에서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 간의, 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과 정치-사회조직의 중앙기관 간의 법률규범문서 감찰
4. 각 유관기관의 조직, 활동과 관련된 각종 문제 및 과학, 기술, 생태환경보호 발전투자정책에 관한 문제 건의

(11) 문화, 교육, 청소년 및 아동 위원회

문화, 교육, 청소년 및 아동 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교육, 정보, 체육, 청소년, 아동영역에 속한 법안, 법령안 및 국회와 국회상무위원회가 교부한 기타 계획안 심사
2. 문화, 교육, 정보, 체육, 청소년, 아동영역에 속한 법률, 국회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 실시 감찰; 국가의 경제-사회발전프로그램 중 문화, 교육, 정보, 체육, 청소년, 아동에 관한 정책실현에 있어서 정부, 각 부, 부급 기관의 활동 감찰; 청소년 및 아동에 대한 정책 실시 감찰
3. 정부, 정부수상, 각 부 장관, 부급 기관장의 법률규범문서 및 중앙에서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 간의, 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과 정치-사회조직의 중앙기관 간의 법률규범문서 감찰
4. 각 유관기관의 조직, 활동과 관련된 각종 문제 및 국가의 문화, 교육, 정보, 체육에 대한 문제, 청소년 및 아동에 대한 정책 건의

제 4 절 사법부[26]

1. 임무 및 권한

베트남에 있어서 사법(司法)은 입법 및 행정과 함께 3권이라고 표현되고 있으나 이들 3권은 통합된 국가권력의 측면만을 의미할 뿐이고, 권력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작용이나 임무로 이해될 수 있다. 권력분립에 기초한 '사법'에 대한 관념은 1999년 소련식 법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라지고, 단지 국가권력의 행사를 분담하는 분업적인 개념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헌법해석권이 국회 상무위원회에 있어 사

26)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의 사법제도와 법령 구성체계□□, 2005. 8 참조.

법부의 국회,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베트남 헌법상 사법제도에 관해서는 제10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임무로 제126조에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인민재판소와 인민검찰청은 자신의 직능 범위 내에서 사회주의 법제 보호, 사회주의 제도와 인민의 주권 보호, 국가와 집단의 재산보호, 공민의 생명, 재산, 자유, 명예와 인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이 정한 경우(국가기밀 또는 미풍양속 보존을 위해 비공개 심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재판을 한다(제131조).

2. 조 직

베트남 인민재판소의 종류는 최고인민재판소, 지방인민재판소, 군사재판소와 기타 법률이 정한 재판소가 있으며, 국회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다(제127조).

<그림 4> 인민재판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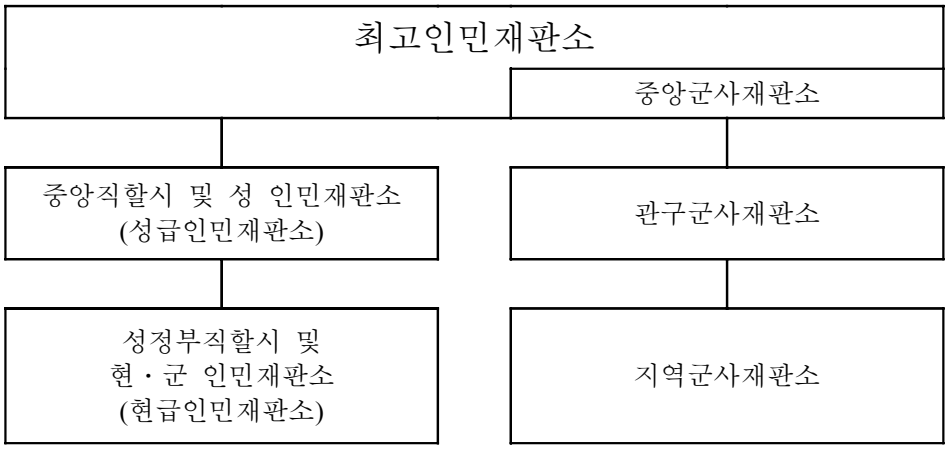

(출처: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의 사법제도와 법령 구성체계, 2005. 8)

(1)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재판소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최고사법기관이다. 지방인민재판소와 군사재판소의 재판업무를 감독하며 국회가 다른 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재판소와 다른 재판소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헌법 제134조).

최고인민재판소는 특별히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 제1심인 동시에 최종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성급인민재판소의 항소심으로서의 기능과 법령적용상의 잘못을 시정하는 감독심 및 사실오인을 시정하는 재심의 기능을 수행한다(인민재판소법 제19조). 최고인민재판소는 중앙군사재판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최고인민재판소 부소장이 중앙군사재판소장이 되며, 최고인민재판소 재판관이 중앙군사재판소 재판관을 겸임한다. 중앙군사재판소 재판관위원회는 재판소장, 부소장,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관계 규정상 위원수는 7명을 초과할 수 없다. 중앙군사재판소장은 재판소 심리활동을 최고인민재판소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림 5> 최고인민재판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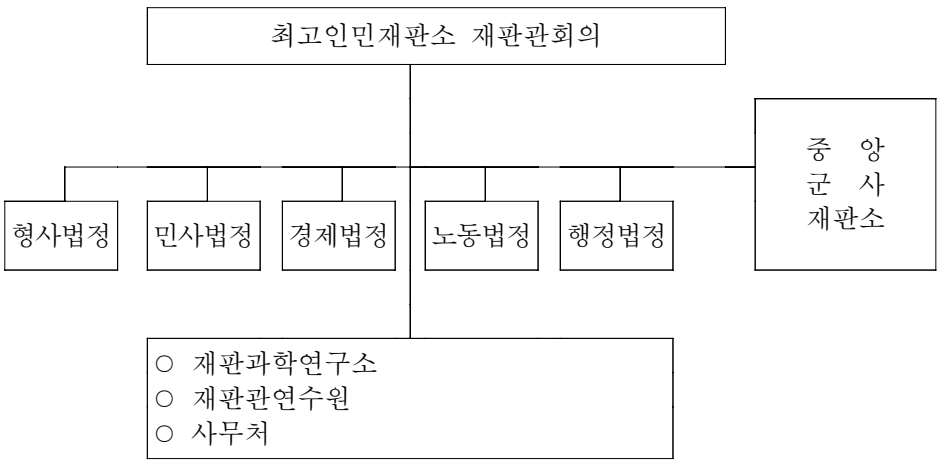

○ 인사조직국
○ 감사국
○ 예산재정국
○ 행정국
○ 인민재판소 Journal 편찬소
○ 재판뉴스 발간실

(출처: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의 사법제도와 법령구성 체계, 2005. 8)

최고인민재판소장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회기중이 아닐 때에는 국회 상무위원회와 국가 주석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제135조). 최고인민재판소장의 선임, 해임 및 파면은 국가주석의 제청에 따라 국회가 결정한다(인민재판소법 제38조). 최고재판소장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와 동일한 5년이나 본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헌법 제128조).

재판관회의는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재판소 부소장, 최고인민재판소의 각 전문법정 소장 및 부소장, 최고인민재판소장이 추천하고 국회 상무위원회가 승인한 수명의 최고인민재판소 소속 재판관으로 구성된다(인민재판소법 제20조). 재판관회의 위원수는 17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행 관계규정에 따르면 14명이다. 재판관회의는 감독심 및 재심 절차에 기초한 최고의 심리기관으로서 각급 재판소의 심리활동을 지도하며, 각급 재판소에 법률의 통일적인 적용을 지도하고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법률안 및 국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법령안의 준비를 한다. 재판관회의의 결정은 위원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재판관위원회는 재판관회의 아래에 위치하는 상임조직으로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재판소 부소장, 최고인민재판소의 각 전문법정소

장으로 구성된다(인민재판소법 제22조). 재판관위원회의 임무는 법률상 효력을 지니는 판결・결정에 대한 항소의 감독심 또는 재심을 관장하며 재판관회의의 결의 시행에 있어서 각급 재판소에 대한 지도를 하고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국가주석에게 제출하는 심리활동에 관한 최고인민재판소장의 보고를 승인한다.

최고인민재판소에는 형사법정, 민사법정, 경제법정, 노동법정, 행정법정 등 5개의 전문법정이 설치되어 있고 형사, 민사, 경제, 노동, 행정 등 전문법정이 담당하고 있는 전문분야 재판의 판결・결정이 정차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검토 및 전문분야와 관련된 법률 검토를 각각 수행한다.

(2) 지방인민재판소

1) 성급인민재판소

성급인민재판소에는 재판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급인민재판소의 판결 등에 대한 감독심과 재심, 현급인민재판소의 판결 등에 대한 공소심으로서 기능 수행, 현급인민재판소의 법률의 통일적 적용보장 및 재판의 총괄, 성급인민재판소장의 재판활동에 관한 보고 승인, 성급 인민평의회와 최고인민재판소에 보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성급인민재판소에는 5개의 전문법정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민사사건 :
(1)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인 사건
(2) 지적소유권에 관한 분쟁가운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의 조직 또는 외국인인 사건
(3) 현급인민재판소 관할 사항이라도 성급인민재판소에서 먼저 취급한 사건

경제사건 :

(1) 법인 대 법인간 또는 법인 대 영업등록한 개인 간의 경제 활동상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

(2) 회사의 설립, 운영, 해산에 관해 회사와 회사소속 사원간 분쟁 또는 그에 관한 대사원간 분쟁

(3) 주식, 사체의 매매에 관한 분쟁

(4) 기업파산사건 등 그밖에 법률이 규정하는 분쟁

노동사건 :

(1) 집단적 노동사건에 대한 제1심의 기능을 수행하며, 노동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중재전치주의를 채택

(2) 개별적 노동사건중 현급인민재판소의 판결을 거친 사건

행정사건 :

(1)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각부, 행정각부와 동격의 국가기관, 정부에 속하는 기관, 국가주석실, 국회사무처,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결정 및 이들 기관의 장이 내린 행정결정,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 사건

(2) 지방 성급 국가기관의 행정결정 및 그 국가기관에 소속된 간부, 직원의 행정결정과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 사건

(3) (1)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각부 소속 하위행정기관인 국이나 국장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

(4) 현급인민위원회 또는 인민위원장이 내린 행정결정으로서 그 대상이 다수에 이르고 복잡한 사건, 현급인민재판소의 재판관이 소송진행을 거절하거나 담당재판관이 교체되어야 할 사건

형사사건 :

(1) 현급인민재판소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

(2) 현급인민재판소 관할에 속하나 성급인민재판소가 스스로 심판하기로 한 사건

2) 현급인민재판소

현급인민재판소에는 민사사건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제1심으로서의 심판권을 행사하는데, 재판관들의 회합기구와 전문법정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현급인민재판소 제1심 심리대상은 다음과 같다.

민사사건 :

(1) 소유권, 계약, 불법행위 그밖에 공민간, 공민과 법인간 그리고 법인들간 민사법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둘러싼 분쟁
(2) 혼인·가족관계에 관한 분쟁
(3) 실종 및 사망의 확인(단, 전쟁에서 군인의 실종이나 사망확인은 제외)
(4) 호적서류가운데 기재사항 변경청구를 거절하는 호적기관에 대한 불복 신청
(5) 선거인명부에 관한 불복 신청
(6) 개인의 명예, 인품을 훼손하는 정보를 정정하지 않는 신문잡지사에 대한 불복 신청
(7) 그밖에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경제사건 : 경제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계쟁가액이 5천만동 미만인 사건

노동사건 : 노동사건중에서 개별적 노동사건만 해당하며, 집단적 노동사건은 성급인민재판소에서 제1심관할권을 행사

(1) 해고의 형태를 취하는 노동징계처분 또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정지에 관한 분쟁
(2) 사용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분쟁

(3)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쳤으나 조정이 실패로 끝난 고용, 임금, 소득, 노동조건 등에 관한 분쟁 또는 근로계약의 이행, 연수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행정사건 : 현급인민재판소가 관할하는 현급이하 국가기관의 행정결정 및 이들 국가기관 소속 간부, 직원의 행정결정과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 신청

형사사건 : 형법이 규정하는 법정형이 7년이하 징역형인 사건
(1)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특별히 위험한 범죄
(2) 위법한 출입국 및 외국에 있어서 위법한 체재

(3) 인민참심원

인민참심원은 재판관과 함께 제1심의 재판부를 구성하며, 재판관과 인민참심원은 재판에 있어서 상호 독립적인 지위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9조 및 제130조). 제1심 재판부는 인민참심원 2인과 재판관 1인으로 구성되나, 복잡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3인의 인민참심원과 2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특히 최고의 형벌로서 사형이 예정되는 사건인 경우 반드시 3인의 인민참심원과 2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그러나 공소심과 감독심, 재심의 경우에는 법률상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므로 전문직업 재판관만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이는 독일의 참심원 제도와 비교하면 정해진 임기동안 재판관과 함께 재판에 참석하는 점은 같지만, 형사재판에만 참여하는 독일과는 달리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과 행정재판, 노동사건 재판 등에도 참석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최고인민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조국전선중앙위원회가 추천하고 국회 상무위원회가 선임을 한다. 지방인민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각급 인민재판소에 대응하는 지방조국전선위원회가 추천하고 지방인민평의

회가 선임을 한다. 즉, 인민참심원은 조국전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되는데 조국전선은 공산당 및 국가와 사회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정치조직이라 할 수 있고 공산당, 다양한 대중조직을 비롯한 29개의 단체와 각계의 저명인사가 그 구성원을 이루고 있다. 또한 베트남조국전선은 베트남 공산당의 지도에 의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정치 시스템의 일부분이며, 인민정권의 정치기관이자, 의지 및 소망을 실현하는 장으로, 전민의 대단결 달성, 인민의 주권 발휘, 협상장(協商場), 성원의 행동 통일과 조화, 민족 독립, 국가주권, 완정한 영토 유지에 공헌, 문명적, 평등적 사회와 부강한 국가, 부유한 민족을 목표로 한 국가의 공업화, 현대화 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달성하는 역할을 한다(베트남조국전선법 제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민참심원은 공산당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고 할 것이다.[27] 따라서 헌법상으로는 재판관과 인민참심원은 동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는 해도, 낮은 수준의 법률전문지식을 가진 인민참심원은 실제의 재판에서 공평한 재판을 저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28]

제 5 절 정 부[29]

정부는 국회의 집행기관이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정부는 국가의 정치, 경제-사회, 국방, 안보 및 대회 임무 실현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중앙으로부터 하부조직에 이르기까지 국가 기구의 효력을 보장하며, 헌법과 법률 존중 및 집행을 보장하며, 조국 건설과 방위사업에서 인민의 주권을 발휘하며, 인민의 물질 및 정신적 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킨다(정부조직법 제1조).

---

27) 김치환, 앞의 논문, p.16 각주 39번 참조.
28) 이순태, "베트남의 사법제도와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 - 환경분쟁해결을 중심으로 -", □□아시아법제연구□□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3, p.71.
29) 베트남 정부 홈페이지 (http://www.chinhphu.vn) 참조.

1. 국가주석

국가주석은 국가원수로서 대내외적으로 베트남을 대표하며 5년 임기로써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국가주석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헌법 제103조).

1. 헌법, 법, 법률공포
2. 인민군을 통솔하고 국방, 안전회의 의장직을 맡는다.
3. 국가부주석,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청의 검찰총장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한다.
4. 국회 또는 국회상무위원회 의결에 근거하여 부수상, 장관과 정부의 기타 인사를 임명, 면직, 해임한다.
5. 국회 또는 국회상무위원회 의결에 근거하여 전쟁상태 선포결정을 공포하고 대특사결정을 공포한다.
6.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총동원령 또는 국부동원령을 내리고 전국 또는 일부지방에 긴급사태를 선포한다.
7. 규정된 문제에 관한 국회상무위원회가 통과시킨 상무위원회의 법령의결에 대해 통과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재검토를 건의할 수 있다. 만약 그 법령과 의결이 상무위원회에서 재찬성 표결되고 국가주석이 이에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주석은 차기 국회 회기에 제출한다.
8. 최고인민재판소 부소장, 재판관, 최고인민검찰청 부총장, 검찰관의 임면과 해임
9. 인민군 고급 장교 서열, 외교 대사급, 정부직위 서열을 결정하고 훈장, 휘장과 국가명예훈장 수여를 결정한다.
10. 베트남 특명전권대사의 파견, 소환, 외국 특명전권대사 접수, 외국 국가원수와 베트남사회주의 국가명의로 회담진행, 국제조약체

결, 기체결한 조약,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조약 비준 또는 조약에 참가

11. 베트남 국적 입적, 베트남 국적 정지 또는 박탈 결정

국가주석은 국회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정부의 각 회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제105조).

국가주석과 당서기장과의 관계는 베트남 공산당 조례 제4장 제41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통해 당, 국가, 정치단체 등의 간접표현으로 우회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제41조

1. 당은 국가와 정치-사회 단체를 사상사업, 조직, 간부, 감찰실행, 검사를 통하여 정치강령, 전략, 정책, 방침으로 영도한다.
2. 당은 간부업무에 관한 정치시스템 내 조직의 대표자와 조직의 책임발휘와 병행하여 간부의 업무를 영도한다.
3. 당은 국가기관과 정치-사회 단체에 입후보 또는 임명하기 위해 충분한 기준을 갖춘 간부를 소개한다.
4. 국가기관과 정치-사회 단체 내에서의 당 조직과 당원의 업무는 당의 의결, 지시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당 조직은 단체의 방침과 국가의 법률문서를 구체적으로 완성하는 업무 및 효과적인 시행을 영도한다.

2. 정부수상

정부수상은 임기 5년으로 국가주석의 추천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정부수상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정부 및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를 지도하고, 국회 및 국가주석에게 업무를 보고한다. 국회회의 소집 및 주재, 정부기구 조정, 각 부 장관의 임명 및 해임을 국회에

건의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정부수상이 관장하는 정부부처는 정부수상실, 계획투자부, 재무부, 국방부, 공안부, 내무부, 과학기술부, 교육훈련부, 문화스포츠관광부, 소수민족위원회, 호치민 정치학원, 정부종교위원회, 중앙상벌위원회, 과학기술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베트남 통신사, 베트남 라디오, 베트남 방송국 등이다.

수석 부수상은 수상 부재시 수상 역할을 담당하며 산업무역부, 중앙은행, 건설부, 정보통신부, 교통운송부, 농업농촌개발부, 자연환경부, 노동보훈사회부, 보건부, 인구가족아동위원회, 체육위원회, 통계청, 관광청의 업무를 관장한다.

수석 부수상 외의 부수상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감찰원, 중앙부정부패방지 지시반 및 외교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3. 정부부처

베트남의 정부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헌법 제112조).

1. 각부, 부와 동등한 각 기관과 정부 소속기관, 각급 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영도하고 중앙으로부터 하부기관까지 국가행정기구를 구축하고 통일체계를 견고히 하며 인민의회와 국가 상급기관 공문서 이행을 지도감사하며 인민의회가 법률에 따라 임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공무원을 양성하여 우수한 국가공무원 집단을 사용한다.
2.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군부대와 공민의 헌법, 법률 시행을 보장하며 인민에게 헌법과 법률 교육, 선전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3. 법, 법령안과 기타 안을 국회와 국회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4. 국민경제 발전을 통일 관리하며 국가재정 금융정책을 실현하며 전인민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문화, 교육, 보건, 과학과 공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제·사회 발전계획을 실현한다.
5.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공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국가와 사회의 재산, 이익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6. 전 인민의 국방, 인민의 안녕을 공고히 하고 강화시키며 국가안녕과 질서, 사회안전을 보장하며 인민군을 육성하며 국토 방위를 위해 동원령, 긴급사태 선포와 기타 모든 방법을 시행한다.
7. 국가의 통계사업, 국가감사사업을 조직하고 영도하며 국가 기구 내 관료부패를 배격하며 공민의 고소, 고발을 해결한다.
8. 정부 이름으로 국제조약 체결, 참가 비준 등 국가의 대외사업을 통일관리하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이행을 지도하며 103조 10항을 제외하고 외국에서 베트남 조직과 공민의 정당한 이익, 국가의 이익을 보호한다.
9. 사회정책, 민족정책, 종교정책을 실현한다.
10. 성, 중앙직속시 이하의 행정단위의 경계를 조정한다.
11. 인민단체들은 자신의 임무와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그들 조직의 활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국전선과 연계한다.

각 정부부처의 자세한 임무와 권한 및 조직구성은 정부조직법 제43조[30]의 위임규정에 의해 각 부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를 규정하는 정부의 시행령(ND-CP)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공안부는 법률에서 그 임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30) 정부조직법 제43조 정부가 본 법 시행세칙을 정한다.

(1) 국방부

국방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39/2005/QH11, 국방법 제44조 및 45조).

1. 국방에 관한 국가의 관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전민의 국방을 강화하는 공고한 계획 및 국가방위계획, 국방동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b) 국방에 관한 법률규범문서를 공포하고 실시한다.
   c) 국방임무 및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시행령·결정, 그리고 조국보호를 위해 필요한 각종 방법들을 실시하고 지도한다.
   d) 국방교육을 실시하고 국방에 관한 선전, 보급,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e) 국방임무실현 시의 고소·고발을 검사, 조사 및 해결한다.
   f) 국방에 관한 국제협력을 실시한다.
2. 정부는 국방에 관한 국가관리를 통일하고 헌법의 규정과 국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무 및 권한을 실현한다.
3. 전국 범위 내의 국방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정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부가 국방에 관한 법률안, 법령, 의정 및 각종 시행령을 수립하는 것을 보조한다.
4. 각 부 및 부급 기관,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국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정부에 보고하여 결정을 받는다. 국방임무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인민군대 및 자위군을 설립, 관리, 지휘한다.
5. 이 법의 규정 및 법률의 기타 규정에 따라 각 부, 부급 기관, 정부소속기관 및 각 지방에서의 국방업무실시를 안내, 조사, 검사, 총결한다.

국방부는 장관 1명, 총참모장 1명, 4명의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공안부

공안부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54/2005/QH11, 인민경찰(공안)법 제4조 및 제14조).

1. 인민공안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와 사회안전사업에 있어서 인민무장역량의 핵심역량이다. 인민공안은 인민안전역량과 인민경찰역량으로 구성된다.
2. 인민공안은 국가안전보호・질서유지・사회안전에 관해 당 및 국가에 대한 참모기능을 하며, 국가안전보호・질서유지・사회안전에 관한 관리를 통일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안전보호・질서유지・사회안전에 관한 각종 경쟁세력의 음모와 활동 및 범죄, 그리고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3. 정보수집, 분석, 평가, 상황예측, 당 및 국가가 공포할 수 있도록 제출; 국가안전보호・질서유지・사회안전에 관한 노선, 정책, 법률, 전략; 국가안전보호・질서유지・사회안전에 관한 전략의 요구사항을 국가의 대외・국방・경제-사회발전건설에 관한 전략 및 정책과 연계하여 건의한다.
4. 인민의 자유권・민주권・생명권・재산권을 보호한다. 당 및 국가의 고위지도간부와 국제귀빈을 보호한다. 국가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건・목표・중점사업 및 국가기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밀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대표기관, 베트남 내 국제조직의 대표기관 및 개인을 보호한다.
5. 범죄에 관한 정보를 접수, 처리, 고발, 기소하고 범죄조사 및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각종 사법임무를 실현한다.
6. 행정위반을 처리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행정처리방법을 적용한다.

7. 국가안전보호・질서유지・사회안전의 임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기관・조직・공민을 안내・검사・조사한다. 법률선전・보급・교육 업무를 실시하고 조국안전보호전인민운동을 조직한다.
8. 국가안전보호・질서유지・사회안전을 위해 군중・법률・외교・경제・과학-기술・업무・무장운동방법을 적용한다.
9.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주도적으로 공격하고 정당하게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방편 및 보조무기와 기구를 사용한다.
10. 긴급한 경우 국가안전・질서・사회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기관・조직・개인의 활동정지 또는 일시정지결정을 내리거나 건의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관・조직・개인의 교통・통신수단 및 기타 기술수단과 그 수단을 조정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징용한다.
11. 각 조직기관개인에 협조를 요구하고 국가안전・질서・사회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급한다.
12. 국가안전・질서・사회안전을 보호하고 조국의 영토를 독립적, 자주적, 통일적으로 완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인민군대, 자위군, 국가기관과 긴밀히 협동한다.
13. 국가안전・질서・사회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그 성취를 응용한다.
14. 정치・사상・조직・전문성에 관한 청렴하고 견고한 역량을 수립한다.
15. 국가안전・질서유지・사회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실시한다.

공안부는 장관 1명, 상임차관 1명, 차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제17조).

1. 인민공안의 조직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공안부
   b) 성(省) 및 중앙직할시 공안
   c) 현(縣), 군(郡), 시사(市社), 성(省) 소속 시(市) 공안

d) 사(社), 방(坊), 시진(市鎭) 공안

2. 사 공안은 조국안전보호전민운동에서 주요역할을 담당하는 무장역량으로 기관에서의 국가안전・질서・사회안전을 보장하며 당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와 사 인민위원회의 관리, 그리고 상급 공안의 업무지도 및 안내를 받는다. 사 공안에 대한 조직, 활동, 장비, 복장, 양성 및 제도, 정책은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3. 자체의 임무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안전・질서보장에 근거하여 공안부 장관은 초소, 공안서 및 지역 내 독립적인 단위의 설립을 결정한다.

(3) 외교부

외교부는 외교업무, 국경, 해외 베트남인 사회, 국제조약 체결 및 실시, 국제협상, 해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표기관 관리, 베트남 내 외국대표기관의 활동관리, 법률에 따른 부의 국가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공공서비스 관리를 포함한 대외업무에 관한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정부기관이다.

외교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15/2008/ND-CP 제2조).

1. 국회의 법률계획안 및 의결초안, 국회상무위원회의 법령계획안 및 의결초안, 비준을 받은 부의 매년 발전건설계획에 따른 정부의 의결초안 및 의정, 정부와 정부수상의 교부에 따른 각종 계획안을 정부에 보고
2.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전략, 계획, 기간별 발전계획, 각종 계획안, 국가중요프로그램, 각종 결정초안, 지시를 정부수상에 보고
3. 외교관계 수립・변화・정지, 각 국가 및 국제조직과의 영사업무, 해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표기관의 설립 및 활동정지에 관해 정부 및 정부수상에 보고

4. 부의 국가관리범위에 속한 결정, 지시, 통지 공포
5. 부의 관리범위 내에서 공포되었거나 비준을 받은 법률규범, 전략, 계획문서를 실시하는 조직에 대한 지도, 안내, 조사, 책임; 부의 관리범위 내에 속한 법률의 선전, 보급, 교육
6. 각 부 및 국가대외활동프로그램과 부의 총체적인 대외활동프로그램 수립과 관련된 기관과 협력; 대외활동 실시상황에 관한 정기적·비정기적 보고와 관련된 부 및 지역의 요구 및 실시 안내; 각 부 및 부급기관, 정부소속기관, 각 성시의 인민위원회가 외교에 관한 업무 및 국가의 대외활동과 관련된 법률규정, 정책, 주장을 통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안내
7. 각 부, 국가의 이익 및 주권보호와 관련된 분야와 협력하여 국제법 및 베트남법에 따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베트남인민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보호
8. 전략연구 및 예측참모 관련 업무
9. 국가대외활동에 있어서의 대표 관련 업무
10. 국가외교의례 관련 업무
11.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교 관련 업무
12. 대외선전통신 및 대외문화 관련 업무
13. 영사업무
14. 베트남인민의 해외이주활동에 대한 국가관리
15. 해외거주 베트남인에 대한 업무
16. 국경 관련 업무
17. 해외 베트남대표기관 관리
18. 해외에 있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각종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및 해외업무를 발령받은 각종 베트남단체에 대한 국가관리
19. 국제법 및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활동하는 각종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 명예영사기관 및 정부관련 각종 국제조직의 대표기관에 대한 관리통일

20. 국제조약 및 국제협상 관련 업무
21. 조직구조, 편제, 임원 관련 업무
22. 부의 국가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 관한 법률규정실시현황 조사 및 감찰; 각종 제소 및 고소 해결; 부패 및 낭비 방지, 각종 위법 처리
23. 교부받은 재정 및 재산관리, 분배받은 예산집행
24. 정부수상으로부터 비준을 받은 국가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표에 따른 부의 행정개혁계획 지도 및 실시
25. 부의 국가관리영역에 속한 공공서비스, 사업, 각종 기금 관리
26.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의 국가관리범위에 속한 국내외 비정부조직 및 각종 단체의 활동에 대한 국가관리
27. 정부 및 정부수상이 교부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임무 및 권한 실시

외교부의 구성은 부수상 겸 외교부장관 1명, 상임차관 1명, 차관 6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제3조).

1. ASEAN부[31)]
2. 동남・남아시아 및 남태평양부
3. 동북아부
4. 유럽부
5. 미대륙부
6. 서아시아 및 아프리카부
7. 대외정책부
8. 국제조직부
9. 법률 및 국제조약부

31) 여기에서의 부는 원문상 'Vụ'이며 그 뜻은 (한 부서의) 사령부를 의미한다. 행정부처를 의미하는 부(部)의 원문은 'BỘ'로써 그 의미가 다르다.

10. 다자간 경제협력부
11. 종합경제부
12. 대외문화 및 UNESCO부
13. 언론정보부
14. 임원조직부
15. 사무소
16. 감찰반
17. 중요기밀국
18. 영사국
19. 국가의례국
20. 재무관리국
21. 해외거주베트남인에 대한 국가위원회
22. 국가국경위원회
23. 호치민시 외무소
24. 외교단서비스국
25. 외교학원
26. 외국언론안내센터
27. 국가통번역센터
28. 정보센터
29. 세계와 베트남(신문)
30. 대사관들
31. 해외 및 연합국주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상임대표단들, 정부 관련 국제조직들
32. 총영사관 및 영사관들

제1항에서 제23항까지 규정한 단위들은 장관의 국가관리기능실시를 돕는 조직들이며 제24항에서 제29항까지는 부 소속 국가사업단위들이다.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의 조직들은 외교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해외 베트남대표기관들이다.

(4) 법무부

법무부는 법률수립 및 시행, 법률규범문서조사, 법률교육 및 홍보, 민사재판시행, 법무행정, 법무 및 전국범위의 법무행위보조, 부의 국가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각종 공공서비스관리에 관한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정부기관이다.

법무부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93/2008/ND-CP 제2조).

1. 정부에 대한 법률계획안 및 국회의결초안, 법령계획안,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초안 보고;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국제조약의 협상 및 체결, 가입
2. 정부수상에 대한 전략, 계획, 프로그램, 장기・5개년・매년 발전계획, 국가중요프로젝트,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 중 정부수상의 각종 지도 및 결정초안 보고
3. 부의 국가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 대한 각종 통지, 결정, 지시 공포
4. 각종 법률규범문서 및 계획안 실시에 대한 지도, 안내, 조사
5. 법률수립
6. 법률시행
7. 법률규범문서 조사
8. 법률규범문서의 시스템화 및 검토작업을 위한 안내, 조사
9. 법률교육 및 홍보
10. 민사재판 시행
11. 법무행정
12. 법무보조
13. 입양업무

14. 법리보조
15. 담보교역 등록
16. 기관에서의 중재활동에 관한 안내 및 조사
17. 부 및 부서, 지방, 국영기업의 법제업무 안내; 기업을 위한 법리보조; 법률규정에 따른 기업에 대한 법리보조 활동
18. 국제협력
19. 법리연구결과 응용 및 각종 평가, 점검규제 마련; 연구계획 수립 및 지도; 법률개혁 및 행정개혁, 사법개혁시 법리연구결과 발전 및 응용
20. 부의 관리범위 내에서의 통신기술 응용지도; 법률규범문서 및 시행안, 담보교역문서, 공증문서, 호적, 감정, 사법이력에 관한 국가자료기관 및 부의 활동에 필요한 기타 자료기관의 수립 및 발전
21. 부의 관리범위 내에서의 공공서비스
22. 법률규정에 따라 부의 활동범위 내에 속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비정부조직의 안내 및 활동여건 마련; 비정부조직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또는 관할국가기관에 처리 건의; 전국 변호사단체의 조례 비준
23. 조사 및 감사
24. 행정개혁
25. 사법분야의 업무표준 수립; 사법공무원 해임; 법률교육업무 관리; 법률교육; 전문인력 양성
26. 조직관리;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각종 정책 및 제도 실시; 임원 및 인력양성
27. 재정관리 및 예산집행
28. 정부 및 정부수상령 또는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임무 및 권한 실시

법무부는 장관 1명, 상임차관 1명, 차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제3조).

1. 법률수립에 관한 공통문제국
2. 형사-행정 법률국
3. 민사-경제 법률국
4. 국제 법률국
5. 법률보급 및 교육국
6. 사법행정국
7. 법무보조국
8. 국제협력국
9. 기획재정국
10. 임원조직국
11. 경쟁-포상국
12. 감찰반
13. 사무소
14. 민사시행안국
15. 법리보조국
16. 법률규범문서 조사국
17. 담보교역 국가등록국
18. 입양국
19. 통신기술국
20. 재(在) 호치민시 대표기관
21. 법리과학연구원
22. 사법학원
23. 민주법률지 (학술지, 잡지)
24. 베트남 법률신문

제1항에서 제20항까지 규정한 조직들은 장관의 국가관리기능실시를 돕는 조직들이며 제21항에서 제24항까지는 부 소속 사업조직들이다.

(5) 계획투자부

계획투자부는 계획 및 투자에 관한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116/2008/ND-CP 제2조).

1. 법률 및 법령계획안 정부에 보고
2. 전략 및 총체적인 계획, 전국 및 지역별・실시기간별 경제-사회 발전계획, 국민경제균형발전계획, 각종 발전프로그램 및 계획안을 정부에 보고
3. 총체적인 지역별 경제-사회발전계획, 국가예산에 속한 발전투자 지표 및 분배수준, 자본의 출처별 중요 투자계획안 및 프로그램 리스트, 기반시설건설투자 및 국가대출지원 등을 위한 중앙예산의 예비항목 등을 정부수상에 보고
4.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계획투자영역에서의 각종 결정, 지시, 통지 공포
5. 각종 결정, 지시, 통지 공포;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각종 법률문서의 실시, 지도, 안내, 조사; 공업 및 무역에 관한 법률교육 및 선전, 보급
6. 전략 및 계획 관련 업무
7. 발전투자 및 국가예산분배 관련 업무
8. 국내・외 투자 및 외국의 투자 관련 업무
9. ODA 관리 업무
10. 경매(입찰)관리 업무
11. 각종 경제구역 관리 업무
12. 기업설립 및 발전 관련 업무
13. 단체 및 협동조합의 경제관련 업무
14. 통계 관련 업무

15.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 국가자본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의 국가자본에 대한 소유대리권 실시
16.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계획투자영역에서의 과학연구계획 및 응용에 관한 실시 및 지도
17. 법률규정에 따른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계획투자영역에서의 국제협력
18. 법률규정에 따른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계획투자영역에서의 공공서비스관리; 부 소속 사업조직에 대한 관리 및 지도
19. 법률규정에 따른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계획투자영역에서의 각종 협회 및 비정부조직의 활동관리
20. 부의 관할권에 속한 계획투자영역에서의 감사, 조사, 분쟁해결, 부패방지, 위법처리
21. 정부수상으로부터 비준을 받은 국가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표에 따른 부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의 결정 및 지도
22. 조직관리;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관리; 임금 및 각종 제도 실시 지도;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양성
2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할당받은 재정, 재산관리 및 예산집행
24. 정부 및 정부수상이 교부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임무 및 권한 실시

계획투자부는 장관 1명과 차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제3조).

1. 국민경제종합부
2. 지방영토경제부
3. 재정통화부
4. 공업경제부
5. 농업경제부
6. 서비스경제부

7. 인프라・도시부
8. 경제구역관리부
9. 투자심사감찰부
10. 대외경제부
11. 노동・문화・사회부
12. 과학・교육・자원환경부
13. 계획관리부
14. 국방-안전부
15. 협동조합부
16. 법제부
17. 임원조직부
18. 경쟁포상부
19. 감찰반
20. 사무소
21. 경매관리국
22. 기업발전국
23. 외국투자국
24. 통계총국
25. 발전전략연구원
26. 중앙경제관리연구원
27. 국가경제-사회정보센터
28. 컴퓨터정보센터
29. 투자신문
30. 경제・예보지(학술지, 잡지)
31. 정책・발전학원

제1항에서 제24항까지 규정한 조직들은 장관의 국가관리기능 실시를 보조하는 행정조직들이며, 제25항에서 제31항까지 규정한 조직들은 부 직속 국가사업조직들이다.

(6) 재무부

재무부는 재정(국가예산, 세금, 각종 비용, 물가(가격), 국가재산, 국가재정기금, 재정투자, 기업재정, 협동조합 및 경제단체의 재정 포함), 세관, 회계, 독립검산, 증권, 보험, 재정서비스활동 및 기타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서비스활동에 관한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정부기관이다.

재무부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118/2008/ND-CP 제2조).

1. 법률 및 법령계획안 정부에 보고
2.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전략, 중장기 및 매년 발전계획, 결정 및 지시초안, 지도권한에 속한 기타 법률문서 정부수상에 보고
3.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각종 결정, 지시, 통지 공포
4. 비준 또는 공포된 각종 법률규범문서, 정책, 전략, 계획 및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기타 법률문서의 지도, 안내, 조사 및 실시;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 관한 법률교육, 선전, 보급
5. 국가예산관리
6. 국가예산에 대한 세금, 경비 및 기타 수입관리
7. 국가의 예산 및 비축기금, 각종 기타 재정기금관리
8. 국가의 비축자금관리
9. 국가재산관리
10. 기업재정 및 기업 내 국가자본관리
11. 정부의 국내 및 해외대출, 공적자금대출, 국제원조자금에 대한 관리

12. 회계 및 검산
13. 증권 및 증권시장에 관한 국가관리
14. 보험에 관한 국가관리
15. 각종 재정조직 및 재정서비스에 관한 재정관리
16. 세관 업무
17. 물가(가격)관련 업무
18.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각종 영역에서의 통계작업 및 통신기술응용 및 지도
19. 국제협력 업무
20. 법률규정에 따른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관리기술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응용 지도실시
21. 법률규정에 따른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각종 공공서비스활동에 관한 주장 및 구체적인 방법 결정, 활동체계지도
22. 법률규정에 따른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비정부조직 활동에 관한 국가관리
23. 감사, 조사, 분쟁해결; 과료부패방지; 법률규정에 따라 교부된 재산 및 경비사용에 대한 절약 및 낭비예방; 재정, 예산 및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기타 영역에서의 관리제도에 대한 법률위반행위의 처리 또는 처리권한을 가진 기관에 건의
24. 행정개혁 관련 업무
25. 조직관리; 임금 및 임원정책, 포상제도, 임원 및 공무원 기강에 대한 지도; 전문인력양성
26. 재정, 국가재산 및 법률에 따른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전 분야에 대한 발전계획투자의 실시 및 관리
27. 정부 및 정부수상으로부터 부여받았거나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각종 임무 및 권한 실시

재무부는 장관 1명, 차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제3조).

1. 국가예산부
2. 투자부
3. I부(당예산, 국방안전 등등)
4. 사업행정재정부
5. 세금정책부
6. 각종 은행 및 재정조직의 재정부
7. 회계검산제도부
8. 국제협력부
9. 법제부
10. 계획재무부
11. 임원조직부
12. 경쟁-포상부
13. 감찰반
14. 사무국(재(在) 호치민시 대표)
15. 공산관리국
16. 기업재정국
17. 대외재정 및 부채관리국
18. 보험감찰 및 관리국
19. 물가(가격)관리국
20. 재정통계 및 컴퓨터국
21. 세금총국
22. 세관총국
23. 국가비축총국
24. 국가금고

25. 국가증권위원회
26. 재정정책 및 전략연구원
27. 베트남 재무시보(신문)
28. 재무지(학술지, 잡지)
29. 재정임원양성학교

제1항에서 제25항까지 규정한 단위들은 장관의 국가관리기능실시를 돕는 조직들이며 제26항에서 제29항까지는 부에 속한 국가사업단위들이다.

(7) 산업무역부

산업무역부는 기계, 제철, 전기, 신재생에너지, 석유가스, 화학물질, 공업원료, 광산개발 및 가공업, 소비재공업, 식품공업 및 기타 가공업, 국내 상품유통, 수출입, 시장관리, 무역촉진, 전자무역, 무역서비스, 국제경제-무역조직가입, 경쟁관리, 독과점관리, 각종 자위(自衛)해법 적용, 가격파괴방지, 소비자권리보호, 부의 관리범위 내에의 공공서비스에 관한 국가관리영역을 포함한 공업 및 무역에 관한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정부기관이다.

산업무역부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189/2008/ND-CP 제2조).

1. 법률 및 법령계획안 정부에 보고
2. 전략 및 총체적인 발전계획, 분야별・영역별・지역별 발전계획, 각종 발전프로그램에 대한 비준 및 실시현황 정부수상에 보고
3. 정부 및 정부수상의 결정에 따른 지역 및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전략, 계획, 분야별・영역별 발전프로그램 비준
4. 각종 결정, 지시, 통지 공포;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각종 법률문서의 실시, 지도, 안내, 조사; 공업 및 무역에 관한 법률교육 및 선전, 보급

5. 부의 국가관리범위에 속한 영역 및 분야에서의 경제기술에 관한 표준, 규정, 규준 수립 및 공포; 정부 및 정부수상의 규정에 따른 공업 및 무역분야에 속한 조건을 갖춘 경영업무에 대한 관리, 안내, 조사
6.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공업 및 무역분야에서의 투자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심사 또는 비준, 조사, 감찰 지휘
7. 전기, 화학물질, 공업원료, 담배생산에 관한 허가서 및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각종 허가서, 인증서, 기타 등록서류에 대한 발급, 조정, 취소, 연기 규정
8. 휘발유, 공업원료, 목화씨 및 정부규정에 따른 기타 비축품에 관한 국가비축계획 수립시 재무부와 협력
9. 공업기술안전 관련 업무
10. 기계 및 제철 관련 업무
11. 전기,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12. 원유가스 관련 업무
13. 광산개발 및 광산제조공업 관련 업무 (건설자재 및 시멘트생산과 관련된 광산 제외)
14. 화학물질 및 공업원료 관련 업무
15. 소비재공업, 식품공업 및 기타 가공업 관련 업무
16. 지방의 공업 및 무역발전 관련 업무
17. 국내상품유통 및 수출입 관련 업무
18. 전자무역 관련 업무
19. 시장관리
20. 경쟁관리, 독과점 조사 및 소비자권리보호 관련 업무
21. 무역촉진
22. 국제 경제-무역관련 조직가입 관련 업무

23.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베트남 조직 및 개인의 해외무역활동 관리 및 해외 조직 및 개인의 베트남 내 무역활동 관리; 각종 상무기관, 무역촉진기구, 베트남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상품 소개센터의 활동 관리 및 지도
24. 경제, 공업, 무역, 시장 및 상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 종합, 분석, 처리하여 당 기관, 국가 및 각종 경제조직에 제공
25. 법률규정에 따른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공업 및 무역분야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26.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공업 및 무역분야에 있어서의 과학, 공업 발전에 관한 연구, 응용계획 조직 및 지도
27. 공공서비스
28.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공업 및 무역분야에 있어서 국가자본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의 국가자본에 관한 소유주 대리권 시행
29. 해당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협회, 비정부조직을 위한 안내 및 조건조성; 공업 및 무역분야의 관리규정을 완성하기 위해 이상의 단체들로부터 의견수렴; 각 단체들에 대한 국가규정 실시 현황조사
30. 부의 국가관리기능에 따른 조사, 감사 및 분쟁해결, 부패방지, 위반행위 처리
31. 정부수상으로부터 비준을 받은 국가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표에 따른 부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의 결정 및 지도
32.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관리
33. 조직관리; 임금 및 각종 제도 실시 지도;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양성
34. 재무부와 협력하여 부의 매년예산수립; 국가예산결산 실시 및 관리; 법률규정에 따른 국가예산, 재정, 재산에 관한 기타 임무 실시
35. 정부 및 정부수상의 결정에 따른 기타 임무 실시

산업무역부는 장관 1명, 상임차관 1명, 차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제3조).

1. 계획부
2. 재무부
3. 임원조직부
4. 법제부
5. 국제협력부
6. 감찰반
7. 사무국
8. 과학기술부
9. 중공업부
10. 에너지부
11. 경공업부
12. 수출입부
13. 국내시장부
14. 산간무역부
15. 아시아-태평양시장부
16. 유럽시장부
17. 미대륙시장부
18. 아프리카-서남아시아시장부
19. 다자간 무역정책부
20. 경쟁-포상부
21. 전력조절국
22. 경쟁관리국
23. 시장관리국
24. 무역촉진국

25. 지방공업국
26. 공업환경 및 기술안전국
27. 통신기술 및 전자무역국
28. 각 국(해외) 상무국
29. 호치민시 산업무역부 대표기관
30. 경쟁회동서기위원회
31. 공업정책 및 전략연구원
32. 무역연구원
33. 산업신문
34. 공업지(학술지, 잡지)
35. 무역지(학술지, 잡지)
36. 중앙산업임원양성학교

제1항에서 제30항까지 규정한 단위들은 장관의 국가관리기능실시를 돕는 조직들이며 제31항에서 제36항까지는 부에 속한 국가사업단위들이다.

(8) 농업농촌개발부

농업농촌개발부는 전국범위의 농업, 임업, 제염업, 수산, 수리, 농촌발전과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공공서비스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현하는 정부기관이다.

농업농촌개발부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1/2008/ND-CP 제2조).

1. 부의 국가관리영역에 관한 법률, 법령계획안 및 기타 법률규범문서, 전략, 기간별 발전계획 수립 및 정부에 보고
2. 정부수상의 관할권에 속한 전략 및 발전계획, 전 분야의 기간별 발전계획, 연구 및 발전네트워크 계획, 발전연구프로그램 및 프로그램목표 비준, 각종 국가중요계획안, 결정 및 지시초안을 정부수상에 보고

3.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지시, 결정, 통지 공포
4. 각종 결정, 지시, 통지 공포;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각종 법률문서의 실시, 지도, 안내, 조사;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법률교육 및 선전, 보급
5. 농업(재배, 사육) 관련 업무
6. 임업 관련 업무
7. 제염업 관련 업무
8. 수산 관련 업무
9. 수리 관련 업무
10. 농촌발전 관련 업무
11. 정부의 지시에 따라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국가중점 프로그램과 투자계획안 및 각종 프로그램의 실시・관리; 부의 국가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 관한 은행자료 및 기초조사 실시・관리
12. 농림수산물 및 소금의 경영, 가공, 보관, 운반 관련 업무
13.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목종, 동물종, 농약품, 수의약품 및 기타 상품에 관한 국가비축관리
14. 과학연구활동 및 권농활동 지도
15. 농림수산물과 소금에 대한 식품위생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업무
16. 농업 및 농촌환경보호;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률의 실시지도, 안내, 조사
17. 부의 국가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무역촉진실시 및 안내, 지도
18. 기계, 설비, 물자의 안전기술 및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활동에서의 노동안전에 관한 각종 요구 등록 및 검정관리
19.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의 관리영역에서의 국제협력
20. 정부수상이 비준한 국가행정개혁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표에 따라 부의 행정개혁프로그램 결정 및 실시

21. 국가자본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의 국가자본분에 대한 대리권 실시
22. 부의 국가관리영역에 속한 공공서비스실시 관련 업무
23. 부의 국가관리영역에 속한 기업, 협동조합, 개인 및 각종 경제단체에 대한 국가관리
24. 전국범위 또는 성(省) 연합범위 내에서의 비정부조직 및 각종 단체의 활동에 대한 국가관리
25. 공무원관리 관련 업무
26. 조직구조, 편제 관리; 임금제도 및 전문임원양성정책 실시, 부의 관리영역 내 임직원에 대한 포상 및 규률관련 정책 실시
27. 부의 관할권에 속한 영역에서의 감사, 조사, 분쟁해결, 부패방지, 위법처리
28. 재정 및 재산관리 관련 업무
29. 홍수 및 태풍예방에 관한 상직업무; 산림화재예방 및 진압에 관한 급박한 문제관리; 사막화방지; 야생동식물국제거래관리에 관한 상직 업무
30. 정부 및 정부수상이 교부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임무 및 권한 실시

농업농촌개발부는 장관 1명, 상임차관 1명, 차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제3조).

1. 계획부
2. 재무부
3. 과학・기술・환경부
4. 국제협력부
5. 법제부
6. 임원조직부

7. 감찰반
8. 사무소
9. 재배국
10. 식물보호국
11. 사육국
12. 수의국
13. 농림수산,제염 가공 및 거래국
14. 임업국
15. 삼림관리국
16. 수산물보호개발국
17. 수산물양식국
18. 수리국
19. 홍수태풍예방 및 제방관리국
20. 사업조직관리국
21. 농촌발전 및 경제협력국
22. 농림수산물 품질관리국
23. 정보통계센터
24. 농촌환경보호 및 국가수질관리센터
25. 국가농・어업권장센터
26. 베트남농업보 (신문)
27. 농업 및 농촌발전지 (학술지, 잡지)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규정한 단위는 장관을 도와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조직들이며 제23항에서 제27항까지 규정한 단위는 부 직속 사업조직들이다.

(9) 교통운송부

교통운송부는 전국범위의 도로, 철도, 해상, 항공교통운송 및 공공서비스에 관한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정부기관이다.

교통운송부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51/2008/ND-CP 제2조).

1. 법률 및 법령계획안 정부에 보고
2. 전략 및 발전계획, 기간별 발전계획, 각종 발전프로그램 정부수상에 보고
3. 부의 국가관리범위에 속한 결정, 지시, 통지 및 기타 문서 공포
4. 각종 결정, 지시, 통지 공포;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각종 법률문서의 실시, 지도, 안내, 조사; 부의 국가관리영역에 속한 법률교육 및 선전, 보급
5. 도로, 철도, 내륙수상, 해상 및 항공교통 인프라구조 관련 업무
6. 운송교통에 관한 교통수단, 설비, 전용시공 관련 업무 (국방, 안전을 위한 교통수단 및 어선 제외)
7. 교통수단우전자 및 전용설비운행자(국방, 안전을 위한 수단, 설비 및 어선운전자 제외)와 교통운송영역에서 특수한 임무를 맡고 있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증명서, 허가서의 발급, 취소 관련 업무
8. 도로, 철도, 내륙수상, 해상, 항공에 대한 민용운송 및 다방식운송 관련 업무
9. 교통안전 관련 업무
10. 교통운송활동에 관한 환경보호 관련 업무
11. 도로, 철도, 내륙수상, 해상, 항공교통 영역에 있어서 베트남이 체결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국제조약 및 국제협력 실시
12. 도로, 철도, 내륙수상, 해상, 항공교통 영역에 있어서 기술발전 및 이전에 관한 과학연구계획 실시 및 지도; 각종 프로그램 및 기

술응용프로젝트, 자료수집, 정보서비스, 개인 및 조직의 교통운송 활동참가 지도

13. 공공서비스
14. 국가자본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의 국가자본고유권 대리행사
15. 법률규정에 따른 부의 국가관리영역에 속한 비정부조직 및 단체의 활동관리
16. 부의 관리영역 내에서의 감사, 조사, 분쟁해결, 부패방지, 위법처리
17. 정부수상으로부터 비준을 받은 국가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표에 따른 부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의 결정 및 지도
18. 조직관리;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관리; 임금 및 각종 제도 실시 지도;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양성
19. 법률규정에 따라 분배된 국가예산, 재정, 재산관리
20. 법률 및 정부와 정부수상의 결정에 따른 기타 임무 실시

교통운송부는 장관 1명과 차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제3조).

1. 계획투자부
2. 재무부
3. 교통인프라구조부
4. 교통안전부
5. 법제부
6. 운송부
7. 과학기술부
8. 환경부
9. 국제협력부
10. 임원조직부
11. 감찰반

12. 사무국
13. 베트남도로총국
14. 베트남철도국
15. 베트남내륙수상국
16. 베트남해상국
17. 베트남항공국
18. 베트남등록검사국
19. 교통사업관리국
20. 교통운송의료국
21. 교통운송발전전략연구원
22. 교통운송관리임원학교
23. 정보기술센터
24. 교통운송보(신문)
25. 교통운송지(학술지, 잡지)

제1항에서 제20항까지 규정한 조직들은 장관의 국가관리기능실시를 돕는 조직들이며 제21항에서 제25항까지는 운송교통부 직속 사업조직들이다.

(10) 건설부

건설부는 건설, 건설계획, 도시기술 인프라, 공업구역, 경제구역, 도시발전, 주택 및 관공서, 부동산경영, 건설자재 및 법률규정에 따른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공공서비스관리에 관한 국가관리 기능을 실현하는 정부기관이다.

건설부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17/2008/ND-CP 제2조).

1. 법률 및 법령계획안 정부에 보고
2. 국가적 사업 및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중요한 프로젝트의 전략,

장기・5개년・매년 계획을 정부수상에 보고; 결정 및 지시초안과 정부수상의 지도 및 조절권 내에 속한 기타 문서 보고

3.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결정, 지시, 통지 공포
4.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비준을 받은 각종 법률규범문서 및 전략, 계획의 실시에 대한 지도, 안내, 조사 및 감사; 부의 관리영역에 관한 정보 및 법률문서의 교육, 선전, 보급
5. 건설 관련 업무
6. 건설계획 관련 업무
7. 도시기술 인프라 및 공업구역, 경제구역 관련 업무
8. 도시발전 관련 업무
9. 주택 및 관공서 관련 업무
10. 부동산경영 관련 업무
11. 건설자재 관련 업무
12. 건설기술안전 관련 업무
13. 환경보호 관련 업무
14. 법률규정에 따른 부의 관리영역에 대한 국제협력
15. 건설분야 과학기술발전전략의 계획 및 실시; 부의 관리영역에 관한 각종 과학연구 및 응용활동 지도 및 실시
16. 교육양성부 및 노동보훈사회부와 협력하여 건설분야 인력양성전략 계획 및 실시; 건설분야 임직원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실시; 도시지역 임직원에 대한 도시관리 전문지식 교육프로그램 실시
17. 정부수상의 비준을 받은 국가행정개혁프로그램의 채용 및 목표에 따른 부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의 결정 및 지도
18.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국가자본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의 국가자본에 관한 소유주 대리권 시행
19. 법률규정에 따른 부의 공공서비스 활동에 대한 지도 및 궤적인 방법과 주장 결정; 부 소속 사업단위에 대한 활동관리 및 지도

20. 법률규정에 따른 부의 국가관리범위에 속한 각종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21. 해당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협회, 비정부조직을 위한 안내 및 조건조성; 필요시 부의 관리규정을 완성하기 위해 이상의 단체들로부터 의견수렴
22. 부의 국가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감사, 조사, 분쟁해결, 부패방지, 위법처리
23. 건설전문분야 공무원관리
24. 조직관리; 임금 및 각종 제도 실시 지도;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양성
25. 재무부와 협력하여 부의 매년예산 수립; 국가예산결산 실시 및 관리; 법률규정에 따른 국가예산, 재정, 재산에 관한 기타 임무 실시
26. 정부 및 정부수상의 결정에 따른 기타 임무 실시

베트남 건설부는 장관 1명과 4명의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제3조).

1. 건축 및 건설계획부
2. 건설활동관리부
3. 건설자재부
4. 건설경제부
5. 과학기술환경부
6. 계획재정부
7. 법제부
8. 국제협력부
9. 임원조직부
10. 감찰반
11. 사무소

12. 건설작업품질에 관한 국가검정국
13. 부동산시장에 관한 국가관리국
14. 기술인프라국
15. 도시발전국
16. 재(在) 호치민시 건설부 대표기관
17. 도시 및 농촌 건축・계획연구원
18. 건설경제연구원
19. 건설과학기술연구원
20. 건설 및 도시관리임원학원
21. 정보센터
22. 건설지 (신문)
23. 건설 (학술지, 잡지)

제1항에서 제16항까지 규정한 단위들은 장관의 국가관리기능실시를 돕는 조직들이며 제17항에서 제23항까지는 부 직속 국가사업단위들이다.

(11) 노동보훈사회부

노동보훈사회부는 일자리 문제, 직업교육, 노동, 급여, 수당, 사회보험(강제적 사회보험, 자발적 사회보험, 실업보험), 노동안전, 사회공여자, 아동 보호 및 양육, 성평등, 사회재난방지 영역에서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정부기관이다.

노동보훈사회부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186/2007/ND-CP 제2조).

1. 법률 및 법령계획안 정부에 보고
2. 국가적 사업 및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중요한 프로젝트의 전략, 장기・5개년・매년 계획을 정부수상에 보고; 결정 및 지시초안과 정부수상의 지도 및 조절권 내에 속한 기타 문서 보고

3.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결정, 지시, 통지 공포; 부의 관할권 내에 속한 각종 프로젝트 및 계획안 비준; 부의 관리범위 내에 속한 법률규범문서의 책임실시 및 안내, 조사
4. 부의 관리범위 내에 속한 법률의 교육, 선전, 보급 실시 및 지도
5. 일자리문제 및 실업보험 관련 업무
6. 계약에 따른 베트남 노동자의 해외파견 관련 업무
7. 직업교육
8. 노동 및 임금 관련 업무
9. 강제적 사회보험 및 자발적 사회보험 관련 업무
10. 노동안전 관련 업무
11. 보훈(사회공여자) 관련 업무
12. 사회보조 관련 업무
13. 아동 보호 및 양육 관련 업무
14. 사회재난방지 관련 업무
15. 성평등 관련 업무
16. 산하기관 및 공공서비스 관리
17. 노동보훈사회 영역에서의 국제협력실시
18. 정부수상의 비준을 받은 국가행정개혁프로그램에 따른 부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의 결정 및 지도
19. 국가자본의 투자를 받은 부 소속 기업에 대한 국가자본소유주로서의 대리권 실시
20. 법률의 규정에 따른 노동보훈사회 영역 내에 속한 비정부조직의 활동 관리
21.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 내 각 단위의 조직기구관리
22. 노동보훈사회 영역관련 연구 및 응용
23.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사, 감사, 분쟁해결, 부패방지, 위법처리
24. 노동보훈사회 관련 지방기관에 대한 업무안내

25. 법률의 규정에 따른 재정관리 및 예산 집행
26. 정부 및 정부수상과의 협의에 따른 기타 업무 실시

노동보훈사회부는 장관 1명, 상임차관 1명, 차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제3조).

1. 노동-임금부
2. 사회보험부
3. 국제협력부
4. 성평등부
5. 계획-재무부
6. 법제부
7. 임원조직부
8. 감찰반
9. 사무국
10. 외국노동관리국
11. 노동안전국
12. 보훈국
13. 사회재난방지국
14. 일자리국
15. 사회보조국
16. 아동 보호 및 양육국
17. 직업교육총국
18. 재외 노동관리위원회
19. 노동 및 사회과학연구원
20. 정형(整形) 및 기능회복연구원
21. 통신센터
22. 노동사회지(학술지, 잡지)

23. 노동사회보(신문)
24. 임직원양성학교
25. 베트남 아동 보조기금

제1항에서 제18항까지의 단위들은 장관의 국가관리기능실시를 돕는 조직들이며 제19항에서 제25항까지는 부 직속 국가사업단위들이다.

(12)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활동 및 잠재력개발, 상품품질측량표준 개발, 에너지안전 및 개발,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공공서비스관리, 국가자본의 투자를 받은 부 소속 기업에서의 소유주대리권 실시에 관한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정부기관이다.

과학기술부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28/2008/ND-CP 제2조).

1. 부의 국가관리영역에 관한 법률, 법령계획안 및 기타 법률규범문서, 전략, 기간별 발전계획 수립 및 정부에 보고
2. 정부수상의 관할권에 속한 전략 및 발전계획, 전 분야의 기간별 발전계획, 연구 및 발전네트워크 계획, 발전연구프로그램 및 프로그램목표 비준, 각종 국가중요계획안, 결정 및 지시초안을 정부수상에 보고
3. 정부수상의 분배 및 위임에 따라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전략, 계획, 각 분야 발전프로그램 비준
4.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각종 결정, 지시, 통지 공포 및 각종 기술표준, 규정, 경제-기술수준 수립・공포
5.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비준을 받은 각종 법률문서 및 전략, 계획에 대한 실시, 지도, 안내, 조사; 부의 관리영역에 관한 법률문서의 교육 및 선전, 보급

6.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의 관리영역에 관한 국가관리범위 내에서의 각종 허가서 및 입증서류, 등록서류의 발급, 조정, 취소, 기한연장
7. 과학기술활동 관련 업무
8. 과학기술잠재력발전 관련 업무
9. 지적소유권 관련 업무
10. 표준, 측량, 품질 관련 업무
11. 원자력에너지, 복사에너지, 핵에너지 관련 업무
12. 공공서비스
13. 전문과학기술분야의 정규공무원관리
14. 국제협력 관련 업무
15. 부의 관리영역에 속한 주장, 정책, 법률규정 및 전문업무의 실시에 관한 각 부, 부급기관, 정부기관 및 지방인민위원회 안내 및 조사
16. 당해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는 협회, 단체, 비정부조직을 위한 안내 및 조건조성;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관리규정을 완성하기 위해 각 단체의 의견수렴; 각 단체에 대한 국가규정 실시현황조사
17. 투자 및 건설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부의 투자프로젝트 실시 및 관리
18. 부가 관리하는 단위에서의 과학연구계획 및 과학기술응용에 관한 조직・지도
19. 부의 관리영역 내에서의 감사, 조사, 분쟁해결, 부패방지, 위법처리
20. 법률규정에 따른 국가자본의 투자를 받은 부 소속 기업에서의 국가자본에 대한 소유주 대리권 실시
21. 정부수상으로부터 비준을 받은 국가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표에 따른 부의 행정개혁계획 지도 및 실시
22. 조직관리;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관리; 임금 및 각종 제도 실시 지도;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양성

23. 재정부와 협력하여 부의 매년 예산계획수립, 국가예산관리 및 결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예산 및 재정·재산에 관한 기타 임무 실시
24. 정부 및 정부수상이 교부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임무 및 권한 실시

과학기술부는 장관 1명, 차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제3조).

1. 자연 및 사회과학부
2. 경제-기술분야 과학기술부
3. 기술평가, 심사, 감정부
4. 첨단기술부
5. 계획재정부
6. 국제협력부
7. 법제부
8. 임원조직부
9. 감찰반
10. 사무소
11. 재(在) 호치민시 대표기관
12. 기술응용발전국
13. 지적소유국
14. 원자력에너지국
15. 국가기술과학총국
16. 핵에너지 및 복사에너지 안전국
17. 품질측량표준총국
18. 화 락 첨단기술구역관리위원회
19. 과학기술정책 및 전략연구원

20. 국가중점프로그램사무소
21. 컴퓨터(정보)센터
22. 과학발전신문
23. 과학활동지(학술지, 잡지)
24. 과학기술관리학교

제1항에서 제18항까지 규정한 단위들은 장관의 국가관리기능실시를 돕는 조직들이며 제19항에서 제24항까지는 부 소속 국가사업단위들이다.

(13) 문화스포츠관광부

문화스포츠관광부는 전국범위의 문화, 가정, 체육, 관광에 관한 국가관리기능 및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문화, 가정, 체육, 관광영역에 속한 공공서비스의 국가관리을 실현하는 정부기관이다.

문화스포츠관광부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185/2007/ND-CP 제2조).

1. 법률 및 법령계획안 정부에 보고
2. 국가적 사업 및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중요한 프로젝트의 전략, 장기・5개년・매년 계획을 정부수상에 보고
3.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각종 훈장 및 포상을 정부수상에 보고;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국가회동 설립 결정
4.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지시, 결정, 통지 공포
5. 각종 결정, 지시, 통지 공포;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각종 법률문서의 실시, 지도, 안내, 조사;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법률교육 및 선전, 보급
6. 문화유산 관련 업무
7. 공연예술 관련 업무

8. 영화 관련 업무
9. 미술, 사진, 전람 관련 업무
10. 문학 및 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관련권한 관련 업무
11. 도서관 관련 업무
12. 광고 관련 업무
13. 대중문화, 민족문화, 홍보선전 관련 업무
14. 가정 관련 업무
15. 전 인민대상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업무
16. 주력스포츠 및 전문스포츠 관련 업무
17. 관광자원 및 관광계획 관련 업무
18. 관광구역, 관광지점, 관광노선, 관광도시 관련 업무
19. 관광안내 관련 업무
20. 관광경영 관련 업무
21. 관광촉진 및 문화교류 관련 업무
22. 문화, 가정, 체육, 관광영역에 속한 투자계획안의 비준결정 및 실시
23. 베트남에서 문화, 체육, 관광활동을 실시하는 외국인 및 외국단체에 대한 허가발급;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문화상품 수출입 허가발급
24. 문화, 체육, 관광영역에서 법률위반행위 및 미신, 유해풍속, 퇴폐 문화상품에 대한 방지, 제재, 처리
25.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국제조약체결, 가입, 비준 및 협상을 정부와 정부수상에 보고; 정부 및 정부수상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국제조직 참가 및 국제조약 체결; 국제협력; 부의 관리영역에서 국제재정지원계획안과 프로그램 실시 및 조사; 부의 관리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가진 국제회의 실시허가
26.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환경보호와 과학기술 연구 및 응용

27. 내무부의 심사를 받은 후 부의 관리영역에서의 공무원의 업무표준 및 전문성규준 공포; 내무부가 공포할 수 있도록 부의 관리범위 내 공직업무 및 전문성표준 수립; 성(省) 인민위원회 및 중앙직할시 전문기관수장의 업무 및 전문성표준 공포
28. 문화, 가정, 체육, 관광영역에 속한 공공서비스 실시에 관한 국가관리 관련 업무
29. 국가자본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의 국가자본분에 대한 대리권 실시
30. 문화, 가정, 체육, 관광영역에 속한 비정부조직 및 단체의 활동에 관한 국가관리 관련 업무
31. 부의 관할권에 속한 영역에서의 감사, 조사, 분쟁해결, 부패방지, 위법처리
32. 정부수상으로부터 비준을 받은 국가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표에 따른 부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의 결정 및 지도; 부의 관리영역 내 국가사업단위에 대한 자주 및 책임감에 관한 규정 실시 ; 행정절차개혁 ; TCVN(베트남표준) ISO 9001:2000 표준에 따른 품질관리시스템 적용, 부의 활동에 기여하는 정보기술 적용
33. 문화, 가정, 체육, 관광활동에 있어서 경쟁포상업무 실시안내 및 지도
34. 조직구조, 편제 관리; 임금제도 및 전문임원양성정책 실시, 부의 관리영역 내 임직원에 대한 포상 및 규률관련 정책 실시
35.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배된 국가예산 집행 및 재산・재정관리
36. 정부 및 정부수상이 교부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임무 및 권한 실시

문화스포츠관광부는 장관 1명, 상임차관 1명, 차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제3조).

1. 도서관부
2. 민족문화부
3. 가정부
4. 과학・기술・환경부
5. 계획재정부
6. 임원조직부
7. 경쟁포상부
8. 양성(훈련)부
9. 법제부
10. 감찰반
11. 사무소
12. 재(在) 호치민시 대표기관
13. 문화유산국
14. 공연예술국
15. 영화국
16. 작가판권국
17. 기초문화국
18. 국제협력국
19. 미술, 사진, 전람국
20. 체육스포츠총국
21. 관광총국
22. 베트남민족 문화-관광마을 관리위원회
23. 베트남예술문화연구원
24. 정보기술센터
25. 문화예술지 (학술지, 잡지)
26. 문화, 체육, 관광 관리임원양성학교
27. 문화보 (신문)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규정한 단위는 장관을 도와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조직들이며 제23항에서 제27항까지 규정한 단위는 부 소속 사업조직들이다.

(14) 보건부

보건부는 인민의 건강관리 및 예방의료, 검진, 치료, 의학감정, 법의학, 전통의학, 약품, 화장품, 식품안전, 의료장비, 의료보험, 가족계획, 출산건강 및 관련 공공서비스에 관한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정부기관으로써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188/2007/ND-CP 제2조).

1. 법률 및 법령계획안 정부에 보고
2. 전략 및 발전계획, 기간별 발전계획, 각종 발전프로그램 정부수상에 보고
3. 재정부와 협력하여 약품, 화학물질, 의료장비 및 전염병예방, 천재지변에 대비한 국가비축리스트 작성 후 정부수상에 보고; 위의 사항에 대한 국가비축실시
4. 부의 국가관리범위에 속한 결정, 지시, 통지 및 기타 문서 공포
5.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비준을 받은 각종 법률문서 및 전략, 계획에 대한 실시, 지도, 안내, 조사; 부의 관리영역에 관한 법률문서의 교육 및 선전, 보급
6. 예방의료 관련 업무
7. 검진, 치료, 회복 관련 업무
8. 전통의학 관련 업무
9. 약품 및 화장품 관련 업무
10. 식품안전위생 관련 업무
11. 의료프로그램 및 설비 관련 업무
12. 인구 및 가족계획, 출산건강 관련 업무

13. 의료보험 관련 업무
14. 의료인력양성 관련 업무
15. 과학 및 기술 관련 업무
16. 법률규정에 따른 의료전문인력 관리
17. 국가자본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의 국가자본에 대한 소유주 대리권 실시
18. 각 부 및 관련분야와 협력하여 의료사업단위 분류표준규정; 보건부 직속 사업단위에 대한 활동지도 및 관리
19. 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폐기물 관리, 처리 및 환경보호에 관한 지도, 안내, 조사
20.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자 발생방지 및 긴급구조를 위해 관련 분야 및 각 부와 협력
21. 법률규정에 따른 공공서비스에 대한 활동 및 각종 주장, 구체적인 방법 지도
22.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협회, 비정부조직을 위한 안내 및 조건조성; 위와 같은 단체들에 대한 활동조사 및 위법행위 처리 또는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처리건의
23. 정부수상으로부터 비준을 받은 국가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표에 따른 부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의 결정 및 지도
24. 조직관리;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관리; 임금 및 각종 제도 실시 지도
25. 법률규정에 따른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국제협력실시
26. 의료제정에 고나한 체제, 정책, 해법 수립 및 제출; 부의 매년 예산계획 수립; 재정부와 협력하여 예산수입지출계획 수립 및 보고; 국가예산 관리, 실시, 결산
27. 전국의 각 조직 및 개인에 대한 부의 국가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법률규정실시 조사; 부의 직접관리권에 속한 조직 및 개인

의 정책, 법률집행현황 및 임무실시 감사;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분쟁해결

28. 정부 및 정부수상의 결정에 따른 기타 임무 실시

보건부의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제3조).

1. 의료보험부
2. 과학양성부
3. 부모자녀건강부
4. 전통의학부
5. 의료프로그램 및 설비부
6. 기획재정부
7. 임원조직부
8. 법제부
9. 국제협력부
10. 사무국
11. 감찰반
12. 환경 및 예방의학국
13. HIV/AIDS 예방국
14. 검진 및 치료관리국
15. 약품관리국
16. 식품위생안전국
17. 호치민시 보건부대표기관
18. 인구 및 가족계획총국
19. 의료정책 및 전략연구원
20. 건강과 삶(신문)
21. 실행의학(학술지, 잡지)
22. 약학(학술지, 잡지)

제1항에서 제18항까지 규정한 조직들은 장관의 국가관리기능실시를 돕는 행정단위들이며 제19항에서 제22항까지는 보건부 직속 사업단위들이다.

(15) 내무부

내무부는 행정조직, 국가사업, 지방정권, 행정경계, 국가공무원, 비정부조직, 경쟁포상, 종교, 기밀, 문서관리,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정부기관이다.

내무부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48/2008/ND-CP 제2조).

1. 국회의 법률계획안 및 의결초안, 국회상무위원회의 법령계획안 및 의결초안, 비준을 받은 부의 매년 발전건설계획에 따른 정부의 의결초안 및 의정, 정부와 정부수상의 교부에 따른 각종 계획안을 정부에 보고
2.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전략, 계획, 기간별 발전계획, 각종 계획안, 국가중요프로그램, 각종 결정초안, 지시를 정부수상에 보고
3.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각종 결정, 지시, 통지 공포
4. 부의 관리범위 내에서 공포되었거나 비준을 받은 법률규범, 전략, 계획문서를 실시하는 조직에 대한 지도, 안내, 조사, 책임; 부의 관리범위 내에 속한 법률의 선전, 보급, 교육
5. 행정조직 및 국가사업 관련 업무
6. 지방정권 관련 업무
7. 행정경계 및 행정분류 관련 업무
8. 편제관리 관련 업무
9. 국가공무원 관련 업무
10. 국가공무원양성 관련 업무
11. 임금정책 관련 업무

12. 협회조직 및 비정부조직 관련 업무
13. 경쟁 및 포상 관련 업무
14. 종교 관련 업무
15. 기밀 관련 업무
16. 국가문서관리 관련 업무
17. 국가행정개혁 관련 업무
18. 기관에서의 민주적인 규제실시 관련 업무
19. 국제협력 관련 업무
20. 청년업무에 관한 국가관리
21. 법률규정에 따라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공공서비스 실시
22.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감사, 각종 제소 및 분쟁해결 방법 모색, 부패방지, 법률위반행위 처리
23. 정부 및 정부수상의 교부에 따라 각 부 및 분야와 협력하여 국가기관과 정치-사회조직의 건의해결
24. 각종 조직과 기관에 대한 직인 사용허가 및 직인 사용관리에 대한 안내 및 조사
25.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과학연구계획 및 응용에 관한 실시 및 지도
26. 부의 각종 관리영역별 정보통계자료 및 기술응용 실시 및 지도
27. 조직관리;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관리; 임금 및 각종 제도 실시 지도;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양성
28.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배된 예산집행 및 교부받은 재정・재산관리
29. 정부 및 정부수상이 교부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임무 및 권한 실시

내무부는 장관 1명, 차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제3조).

1. 조직편제부
2. 지방정권부
3. 공직공무원부
4. 공무원양성부
5. 임금부
6. 비정부조직부
7. 행정개혁부
8. 국제협력부
9. 법제부
10. 계획재정부
11. 종합부
12. 임원조직부
13. 감찰반
14. 사무소
15. 중앙경쟁포상위원회
16. 정부종교위원회
17. 정부기밀위원회
18. 국가문서국
19. 재(在) 호치민시 대표기관
20. 재(在) 다낭시 대표기관
21. 국가조직과학연구원
22. 국가조직지(학술지, 잡지)
23. 정보센터
24. 공무원양성센터

제1항에서 제20항까지 규정한 단위들은 장관의 국가관리기능실시를 돕는 행정단위들이며 제21항에서 제24항까지는 부의 국가관리기능에 기여하는 사업단위들이다.

(16)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언론, 출판, 우편, 전신, 인터넷, 전파, 무선주파수, 통신기술, 전자기술, 방송국, 국가전통정보시스템,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공공서비스에 관한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정부기관이다.

정보통신부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187/2007/ND-CP 제2조).

1. 법률 및 법령계획안 정부에 보고
2. 국가적 사업 및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중요한 프로젝트의 전략, 장기・5개년・매년 계획을 정부수상에 보고
3.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지시, 결정, 통지 공포
4. 부의 관리범위 내에서 비준받은 법률규범문서, 전략문서, 계획문서에 대한 책임실시 및 지도, 안내, 조사; 부의 관리범위 내 영역에 대한 법률 교육, 선전, 보급
5. 언론 관련 업무
6. 출판(출판, 인쇄, 출판물발행 포함) 관련 업무
7. 언론매체, 인터넷, 출판물 상의 광고 관련 업무
8. 우편 및 전파 관련 업무
9. 원거리(무선)통신 및 인터넷 관련 업무
10. 주파수 관련 업무
11. 통신 및 전자기술 관련 업무
12. 방송(TV, 라디오) 관련 업무
13. 국가통신인프라 관련 업무
14. 정부수상의 결정 후 관할권에 따라 정보통신 영역에 속한 훈장 및 포상 실시
15. 법률의 결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통신활동을 하는 외국인 및 외국사무소에 허가발급

16. 외교부 및 대외정보에 관한 국가관리와 관련된 각 분야와 협력
17. 위법행위 방지 및 제재
18. 법률규범문서 공포, 각종 표준 및 표준적용규정 수립·적용,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국가기술표준 공포
19. 저작권, 판권, 지적소유권 관련업무
20.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상품수출입 허가발급, 네트워크·작업·상품·서비스품질에 관한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연장·일시정지·정지·취소
21. 정부 및 정부수상의 위임에 따라 국가안전 및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각종 네트워크 및 서비스, 수단, 통신설비 동원방법 결정
22. 당 및 국가기관의 지도를 보조하기 위한 전용통신 및 개별통신 네트워크 운영
23.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투자계획안 및 프로그램 관리;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경제-기술수준 공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문통계 실시
24. 재무부와 협력하여 매년 부의 예산수립, 재산관리,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예산, 각종 자본, 기금 집행 및 결산
25.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대외 및 국제협력 실시
26.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환경보호와 과학기술 연구 및 응용
27.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의 관리범위에서의 공공서비스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주장 결정; 부 소속 사업조직에 대한 활동관리 및 지도
28. 국가자본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의 국가자본분에 대한 대리권 실시

29. 법률규정에 따른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각종 협회 및 비정부조직의 활동관리
30. 부의 관할권에 속한 영역에서의 감사, 조사, 분쟁해결, 부패방지, 위법처리
31. 정부수상으로부터 비준을 받은 국가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표에 따른 부의 행정개혁프로그램의 결정 및 지도
32. 정보통신분야 공무원능력향상시험 실시; 내무부의 심사를 받은 후 부의 관리영역에서의 공무원의 업무표준 및 전문성규준 공포; 내무부가 공포할 수 있도록 부의 관리범위 내 공직업무 및 전문성 표준 수립; 성(省) 인민위원회 및 중앙직할시 전문기관수장의 업무 및 전문성표준 공포
33. 조직관리;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관리; 임금 및 각종 제도 실시 지도;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양성
34. 정부 및 정부수상이 교부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임무 및 권한 실시

정보통신부는 장관 1명, 상임차관 1명, 차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속단위는 다음과 같다(제3조).

1. 우편부
2. 원거리통신부
3. 정보기술부
4. 과학기술부
5. 계획재정부
6. 국제협력부
7. 법제부
8. 임원조직부
9. 감찰반

10. 사무소
11. 무선주파수국
12. 정보통신기술 품질관리국
13. 통신기술응용국
14. 언론매체국
15. 출판국
16. 전자통신 및 방송관리국
17. 대외통신국
18. 재(在) 호치민시 대표기관
19. 재(在) 다낭시 대표기관
20. 정보통신전략연구원
21. 베트남 인터넷센터
22. 통신센터
23. 정보통신기술지(학술지, 잡지)
24. 베트남 우편보(신문)
25. 국제 통신협력 및 언론센터
26. 정보통신관리임원양성학교

제1항부터 19항까지 규정한 단위는 장관을 도와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조직들이며 20항에서 26항까지 규정한 단위는 부 소속 사업조직들이다.

(17) 자원환경부

자원환경부는 토지, 수자원, 광산자원, 지질, 환경, 기상, 수리, 측량, 지도,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해양 및 도서지역 관리,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공공서비스관리에 관한 영역에서 국가관리를 실현하는 정부기관이다.

자원환경부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5/2008/ND-CP 제2조).

1. 국회의 법률계획안 및 의결초안, 국회상무위원회의 법령계획안 및 의결초안, 비준을 받은 부의 매년 발전건설계획에 따른 정부의 의결초안 및 의정, 정부와 정부수상의 교부에 따른 각종 계획안을 정부에 보고
2.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전략, 계획, 기간별 발전계획, 각종 계획안, 국가중요프로그램, 각종 결정초안, 지시를 정부수상에 보고
3.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각종 결정, 지시, 통지 공포
4. 부의 관리범위 내에서 공포되었거나 비준을 받은 법률규범, 전략, 계획문서를 실시하는 조직에 대한 지도, 안내, 조사, 책임; 부의 관리범위 내에 속한 법률의 선전, 보급, 교육
5. 토지 관련 업무
6. 수자원 관련 업무
7. 광산자원 및 지질 관련 업무
8. 환경 관련 업무
9. 기상, 수리, 기후변화 관련 업무
10. 측량 및 지도 관련 업무
11.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해양 및 도서지역 관리에 관한 업무
12. 통계・점검업무 실시, 법률에 따른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자료 및 데이터 관리
13.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영역에서의 과학연구계획 및 응용에 관한 실시 및 지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원환경에 관한 인쇄물 편집 및 출판
14. 관련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위임에 따라 국제협상 및 국제조약체결; 부의 이름으로 국제협상체결;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국제조직에 참가

15. 정부의 국가행정개혁프로그램 및 정부수상의 지도에 따른 부의 행정개혁계획 지도 및 실시
16. 사업조직네트워크발전계획과 공공서비스에 관한 안내 및 수립지도, 공공서비스의 사회화와 공공서비스 공급에 관한 체제 및 정책 안내
17. 당해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는 각종 협회 및 비정부조직을 위한 안내, 조건조성; 법률규정에 따라 각종 협회 및 비정부조직에 대한 법률규정실시 조사
18.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자본의 투자를 받은 부 소속 기업에서의 국가자본소유권 대리행사
19. 조직관리;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관리; 임금 및 각종 제도 실시 지도;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양성
20. 부의 관리영역 내에서의 감사, 조사, 분쟁해결, 부패방지, 위법처리
21. 법률규정에 따라 분배된 국가예산, 재정, 재산관리
22. 법률 및 정부와 정부수상의 결정에 따른 기타 임무 실시

자원환경부는 장관 1명, 차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제3조).

1. 국제협력부
2. 계획부
3. 과학기술부
4. 법제부
5. 재정부
6. 경쟁포상부
7. 임원조직부
8. 감찰반
9. 사무소

10. 베트남 해양 및 도서총국
11. 환경총국
12. 토지관리총국
13. 베트남 지질광산국
14. 베트남지도측량국
15. 국가자원관리국
16. 기술정보국
17. 기상・수리・기후변화국
18. 재(在) 호치민시 대표기관
19. 국가기상수리센터
20. 국가자원조사계획센터
21. 국가정찰센터
22. 자원환경 전략정책연구원
23. 자원환경지 (신문)
24. 자원환경 (잡지, 학술지)

제1항에서 제18항까지 규정한 단위들은 장관의 국가관리기능실시를 돕는 단위들이며 제19항에서 제24항까지는 자원환경부의 국가관리기능에 기여하는 사업단위들이다.

(18) 교육훈련부

교육훈련부는 국민교육시스템 및 기타 교육기관에 속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현하는 정부기관으로써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32/2008/ND-CP 제2조).

1. 국회의 법률계획안 및 의결초안, 국회상무위원회의 법령계획안 및 의결초안, 비준을 받은 부의 매년 발전건설계획에 따른 정부의

의결초안 및 의정, 정부와 정부수상의 교부에 따른 각종 계획안을 정부에 보고

2.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전략, 계획, 기간별 발전계획, 각종 계획안, 국가중요프로그램, 각종 결정초안, 지시를 정부수상에 보고
3.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각종 결정, 지시, 통지 공포
4. 교육양성에 관해 공포된 법률규범, 전략, 계획문서에 대한 실시, 안내, 조사
5. 교육훈련프로그램 공포
6. 각급 학교에 대한 훈련분야리스트 공포; 신설 프로그램 및 석·박사과정 개설에 관한 규정
7.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민족학교 및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각종 교육기관에 대한 조례 및 규칙 공포; 국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관한 표준규정 공포
8. 교육발전지표 및 기본 초·중등교육 보급표준, 교육보급인증에 관한 규정 공포;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급에 대한 지도, 안내, 감사, 조사
9. 교과서의 편집, 검정, 출판, 인쇄, 발행에 관해 규정; 전자교과 및 전자도서관, 국가자료기관 설립지도; 각 분야별 전문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한 검정실시
10. 각종 시험 및 학생선발에 관한 규칙 공포;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표준,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규정, 교육의 질을 검정하는 기관의 설립·기능·임무·권한에 관한 규정,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훈련과정 및 각급 학교에서의 교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인 검정 규정 공포; 교육의 질 검정 지도
11. 초등교육프로그램 이수확인조건 규정; 국민교육시스템에서의 학위 및 인증서 발급 조건 및 수속 규정; 학위 및 인증서 형식에 관한 규정; 해외교육기관에서 베트남인에게 발급한 학위 인증에 관한 규정

12. 국제협력 관련 업무
13. 해외훈련관리 관련 업무
14. 등록금, 장학금 및 학생정책 관련 업무
15. 학교의 설비, 물질기반 및 아동 놀이시설 관련 업무
16. 교육훈련분야 및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과학연구계획 및 응용에 관한 실시 및 지도
17. 사회적 수요에 따른 훈련에 관한 정책 및 체제 실시, 지도
18.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영역에 속한 공공서비스활동 실시에 관한 각종 주장 및 구체적인 방법 결정, 지도; 부 소속 사업단위에 대한 활동관리 및 지도
19. 부의 관리범위에 속한 교육훈련분야에서 국가자본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국가자본소유권 대리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임무 및 권한 실현
20. 전국 범위의 교육훈련영역에 속한 각종 비정부조직의 활동에 대한 국가관리
21. 교육훈련에 관한 법률의 선전, 보급, 교육
22. 조사 및 감찰 관련 업무
23. 정부의 국가행정개혁프로그램 및 정부수상의 지도에 따른 부의 행정개혁계획 지도 및 실시
24. 교육훈련에 관한 통계 및 정보업무 실시, 자료구축, 정보기술응용
25. 교육훈련공무원 관리
26. 조직관리;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관리; 임금 및 각종 제도 실시 지도; 임원 및 공무원(임직원) 양성
27. 재정 및 재산 관리
28. 정부 및 정부수상이 교부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임무 및 권한 실시

교육훈련부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제3조).

1. 사무소
2. 임원조직부
3. 계획재정부
4. 유치원교육부
5. 초등교육부
6. 중등교육부
7. 전문교육부
8. 대학교육부
9. 민족교육부
10. 통상(通常)교육부
11. 국방교육부
12. 학생업무부
13. 과학, 기술 및 환경부
14. 국제협력부
15. 법제부
16. 감찰반
17. 교육의 질 심사검정국
18. 교사 및 교육관리임원국
19. 정보기술국
20. 학교설비, 불질기반 및 아동 놀이시설국
21. 해외훈련국
22. 재(在) 호치민시 대표기관
23. 베트남교육과학연구원
24. 교육관리학원
25. 호치민시 교육관리임원학교

26. ‘교육과 시대’ 신문
27. ‘교육’ 잡지, 학술지

제1항에서 제22항까지 규정한 단위들은 장관의 국가관리기능실시를 돕는 단위들이며 제23항에서 제27항까지는 부의 국가관리기능에 기여하는 직속사업단위들이다.

제 4 장 베트남의 법체계와 법률

제 1 절 베트남의 법체계와 법원(法源)

1. 법체계

베트남법은 도이 머이 이전을 살펴보면 세 가지 법전통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유교적인 중국전통법의 영향이고, 둘째는 프랑스법의 영향으로 프랑스 민법과 유사한 내용의 민법이 시행된 바 있으며, 셋째 소비에트법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스타일의 중앙통제형 법률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도이 머이 이후에는 주로 경제개발을 위한 법률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을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정당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 민간단체 등이 베트남에 대한 법률원조를 받음으로써 베트남은 사회 내 제관계를 조정하고 혁명의 발전요구에 부응하며 민족역사의 각 단계에 부합하는 각 영역별 법률을 포괄하는 하나의 법률체계를 마련했다.[32]

<그림 6> 법규규범문서의 효력관계

1 헌법
□□
□□
2 법률 및 국회 의결
□□
□□
3 법령 및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
□□

32) 김대인,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과 과제", □□아시아법제 연구□□, 제8호, 2007, pp.153-160 참조.

□□
4 국가주석의 명령 및 의결
□□
□□
5 정부의 의결 및 의정□□□□□□□□□□□□□□□□ 5 최고인민재판소재판관회의 의결 및
□□ 최고인민검찰원장의 결정, 지시 및 통자
□□
6 정부 수상의 결정 및 지시
□□
□□
7 합동문서□□□□□□□□□□□□□□□□□□□□□□□□□□□□□□□□ 7 각부,부에 상당하는 기관 또는 정부에
□□ 속하는 기관의 결정, 지시 및 통자
□□
8 인민의회의 의결
□□
□□
9 인민위원회의 의결 및 지시

(출처: 계경문・김종욱, 베트남의 법제에 관한 연구:외국인투자법을 중심으로, 2004. 9)

베트남의 하위법규는 상위법규에 저촉하지 않는 내용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하위법규는 상위법규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헌법과 다른 법규범의 관계가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의 순서(헌법 제40조, 제75조, 제90조, 제117조 등)인 우리나라와 형식상 동일할 것으로 본다.[33] 베트남 법의 경우, 국회에서 채택된 '법률'이 '정부의 議定'에 대해 해당법률의 시행세칙의 제정을 위임하고 '정부의 議定'이 '部의 통지'에 대해 해당시행세칙의 '시행지도규칙'을 위임하는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部의 통지'에는 '위반의 처리' 조항을 갖는 것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공보(公報)(Cong bao: 우리나라의 공보에 상당한다)에 모든 것이 게재되지 않으며 또

33) 이는 자료상의 표현일 뿐 베트남은 분명 "공산당 우위"의 국가체제이기 때문에 실제 효력에 있어서는 지방 인민위원회의 지시 또는 의결이 상위 법령에 사실상 우선하는 경우가 많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면이 우리의 사회주의 국가의 법체계 연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시행개시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이 많다. 참고로 96년 1년 동안 규정된 법, 법령, 議定 및 정부 수상이 결정한 수는 각각 5, 8, 88 및 988이다. 단, 議定 및 정부 수상이 결정한 제정 수는 베트남 공보에 게재된 최종법규 번호에 기초하고 있다. 각 부 등의 통지 종류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했듯이 공보에 공표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정확한 제정 수를 파악할 수 없지만 상당수가 제정되어 있다.

베트남의 국회는 2001년 헌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유일한 헌법 및 법률의 규정기관'이다. 이 요지는 앞에서 언급한 '법규규범문서 제정법'에도 확정되어 있다. 베트남의 인민이나 기업,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에게 베트남의 입법기관은 국회만이 아닌 정부, 그리고 각 부로 비쳐질 것이다. 제정된 법규의 수나 제정된 법규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베트남 정부나 각 부는 국회를 능가하는 입법기관이 아닌가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베트남의 외국투자기업이 불만으로 많이 토로하는 '규칙의 빈번한 변경'은 정부나 각 부가 제정한 법규문서이다. 앞으로 베트남은 법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미정비 분야의 법을 제정해 나가야 한다.

2. 법원(法源)

(1) 헌 법

1945년 9월 2일 호치민을 주석으로 하여 수립된 베트남민주공화국은 1946년 11월 9일 국회 의결을 통해 '베트남민주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전문, 제7장 70개 조항으로 제1장(정치제도), 제2장(공민의 의무와 권리), 제3장(국회), 제4장(정부), 제5장(인민의회와 행정위원회), 제6장(사법부), 제7장(헌법개정)으로 구성되었다.

1959년 12월 3일 국회는 사회주의혁명의 새로운 전기를 맞아 그 동안의 혁명적 과업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혁명 상황에서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1980년 12월 18일 통일베트남에 적용하는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였다. 1992년 4월 15일 국회는 러시아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을 의결하였는데, 국회와 정부를 국가조직의 중심축으로 구성하여 이전까지 공산당에 집중되어 있던 국가권력을 국회와 정부에 배분하였으며, 특히 경제개혁의 강화를 반영하여 중앙행정기구인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34]

2001년 개정된 베트남 헌법은 전문, 제12장, 제147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이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안전을 제도화하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을 규정하고 당, 인민의 주인의식, 국가관리 간의 관계를 체제화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헌법의 기본구조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분류된다. ① 정치 등 분야별 제도보장으로서 국가의 정치권력, 경제・문화・사회제도 등에 대하여는 제1장(정치제도), 제2장(경제제도), 제3장(문화, 교육, 과학, 기술), 제4장(조국방위)에서, ② 공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대하여는 제5장(공민의 기본권과 의무)에서, ③ 통치구조에 대하여는 제6장(국회), 제7장(국가주석), 제8장(정부), 제9장(인민의회와 인민위원회), 제10장(인민재판소와 인민검찰청)에서, ④ 국가의 기본요소와 헌법개정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11장(국기, 국장, 수도, 국경일), 제12장(헌법의 효력과 헌법개정절차)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전국 범위의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규정으로써 국회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되는 최고의 법적 효력을 보유한 최상위의 법이다.

34) 이효원, 앞의 논문, pp. 247-248.

자세한 내용으로, 제9조에서는 베트남조국전선의 의미를 강조하여 모든 정치세력과 사회계급, 국적, 종교를 총괄하는 전인민의 대표기관임을 규정하였다. 제15조에서 자주독립적인 경제건설과 국내산업화와 현대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견지하면서 모든 기업과 개인들의 합법적인 무역활동과 법에 의한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규정하였다. 제21조와 제25조를 개정하여 개인과 사적 자본주의 경제단위의 생산과 기업형태의 선택, 기업설립의 자유를 인정하고 외국자본의 투자에 대한 법률적 보장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제91조와 제114조에서는 국회상무위원회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총리의 부총리・장관 등의 임명과 해임건의를 승인하고 차기 국회에 보고할 권리를 삭제하고, 외국의 침략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차기 국회에 보고함에 있어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 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회 회기여부와 무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1조에서 국가총동원과 긴급사태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국가기관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였다.[35)]

(2) 법률 및 국회의결

법률은 헌법에 다음가는 지위를 가지며 국회가 제정하는 것이다. 국회는 법률 외에 각종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규범적 성격을 가진 결의는, 법률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법률 및 결의에 상당하는 베트남어에서 한자를 고치면, □□律□□ 및 □□議決□□이 된다.

(3) 법령 및 국회 상무위원회 의결

법령은 국회로부터 부여받은 문제에 관해 국회상무위원회가 공포한다(헌법 제91조 제4항). 결의는 국회의 결의와 같이 규범적 성격이며,

35) 이효원, 앞의 논문, pp. 248-250 참조.

법령에 상당하는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4) 국가주석 명령 및 의결

국가주석이 공포하는 것이며, 국가주석의 임무의 달성 및 권한의 수행을 위해서 공포된다(헌법 제106조). 법령에 상당하는 베트남어를 한자로 고치면 □□令□□이 된다.

(5) 정부 의결 및 의정

헌법, 국회의결, 국회상무위원회의 법령과의 의결, 국가주석의 영과 결정에 근거하여 정부의 의결, 의정을 발한다(헌법 제115조 전단).

(6) 수상 결정 및 지시

정부수상이 제115조 전단의 문서의 시행을 결정, 지시하고 감사를 한다(헌법 제115조 후단).

(7) 정부부처 결정, 지시 및 통자

헌법, 법률, 국회, 국회상무위원회의 법령, 의결, 국가주성의 영, 결정, 정부와 수상의 공문 등에 근거하여 장관과 기타 정부 구성원, 정부소속기관장은 결정, 지시, 통자를 발하고 각 분야, 단위에서 그 공문의 시행을 감사한다(헌법 제116조 2문).

(8) 지방 인민의회 의결

각 지방 인민의회가 제정하는 지방성(地方性)의 법규이다(헌법 제120조).

(9) 지방 인민위원회 의결 및 지시

각 지방 인민위원회가 제정하는 것이다(헌법 제123조 및 제124조).

<표 5> 기관별 법률문건 공포권

기 관 명	공포 가능한 법률 문건	비 고
국 회	○ 헌법(Hien Phap : 憲法) ○ 법률(Luat : 律, Bo Luat : 律) ○ 법령(Phap Lenh : 法令) ○ 의결(Nghi Quyet : 議決)	국회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 영(Lenh : 令) ○ 의결(Nghi Quyet : 議決)	
정 부	○ 의정(Nghi Dinh : 議定) ○ 의결(Nghi Quyet : 議決)	시행령
수상	○ 결정(Quyet Dinh : 決定) ○ 지시(Chi Thi : 指示)	
각부장관, 부급기관장, 정부직속기관장	○ 통자(Thong Tu : 通諮) ○ 결정(Quyet Dinh : 決定) ○ 지시(Chi Thi : 指示)	시행세칙
중앙직할시 및 성 등 지방 인민평의회 (지방자치의회)	○ 의결(Nghi Quyet : 議決)	
중앙직할시 및 성 등 지방 인민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의결(Nghi Quyet : 議決) ○ 지시(Chi Thi : 指示)	
최고인민재판소 재판관 회의	○ 의결(Nghi Quyet : 議決)	
최고인민검찰총장	○ 결정(Quyet Dinh : 決定) ○ 지시(Chi Thi : 指示) ○ 통자(Thong Tu : 通諮)	시행세칙

(출처: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의 사법제도와 법령구성 체계, 2005. 8)

3. 베트남 투자・금융 관련 법률

(1) 투자법제

종전 외국투자법에는 투자형태에 대하여 단독투자, 합작투자, BCC (사업협력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OT(건설-운영-양도: Build-Operation-Transfer), BT(건설-양도: Build-Transfer) 정도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종전 외국투자법보다 다양한 투자형태가 규정되었다.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직접투자형태로 그 밖에도 경영개발투자, 투자활동관리에 참여하기 위한 지분(shares)의 매입 또는 자본의 출자, 기업의 합병・매수(M&A)를 위한 투자 및 그 밖의 형태의 직접투자 등 다양하게 명시하였다. 또한 기존 외국투자법에는 간접투자 개념이 없었으나,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지분, 주식, 채권 및 그 밖의 각종 유가증권의 매입, 증권투자 기금을 통한 투자,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투자 등 간접투자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투자우대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를 행하는 투자자는 상황에 따라 투자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투자법에서 세금, 회계, 토지사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투자증명서에 투자우대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자본충자, 주식취득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세금우대 규정, 설비, 자재, 차량 및 그 밖의 제품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 규정, 위 투자우대분야에 대한 투자시 기술이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우대분야 및 투자우대지역에 투자한 경우에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고, 베트남 정부가 중요한 투자 사업에 대하여 자본차입, 원자재의 공급, 제품의 판매, 지급보증 및 그 밖의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국투자 프로젝트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외국투자 프로젝트는 최대 50년 또는 베트남 정부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연장하여 70년으로 활동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의 종료사유와 관련하여 법률위반을 이유로 투자관리 기관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기관의 결정에 따라 종료되도록 하고 있다.

종전 외국투자법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자본 기업은 유한회사의 형태의 회사설립밖에 인정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업법은 개인기업,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4종류의 형태에 따른 회사설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1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유한회사의 설립도 가능하다. 개인기업은 개인 1인이 기업주이며 동시에 기업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증권을 발행하지 않는다.[36]

(2) 금융법제

베트남의 금융업계는 중앙은행, 증권감독위원회, 재무부 3개의 감독당국으로 나뉘어져 있다. 중앙은행인 베트남국영은행(State Bank of Vietnam, SBV)이 금융기관법에 의한 은행을 감독하고, 증권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재무부 소속의 국가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ssion, SSC)가 감독하고 있으며, 비공모로 발행된 기업채(企業債)에 대하여는 재무부 금융기관국이 관할하고 있다. 보험사업법에 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재무부 보험국이 감독하고 있다.

베트남의 은행 및 그 밖의 금융기관의 규제에 관한 법으로, 1997년에 제정된 베트남국영은행법과 금융기관법을 들 수 있는데, 국영은행법은 베트남국영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국영은행은 1988년 중앙은행 기능과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하여 국영은행으로부터 분리된 대외무역은행(Bank of Foreign Trade of Vietnam,

36) 전병서, 앞의 책, 요약문 pp.3-6 참조.

Vietcombank), 투자개발은행(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 BIDV), 농업지방개발은행(Vietnam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VBARD) 및 상공은행(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Vietnam, Incombank)의 4개의 국영상업은행(State Owned Commercial Bank, SOCB)이 설립되었다. 현재는 사회정책은행(Vietnam Bank for Social Policies)과 메콩델타지역 주택개발은행(Mekong Delta Housing Development Bank)이 추가 설립되어 5개의 상업은행과 1개의 정책은행이 설립되어 있다. 2007년에 들어 국영상업은행을 포함한 대형 국영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주식화 과정의 절정기에 돌입하였는데, 베트남 정부의 주식화 로드맵에 의하면 2010년까지 국영상업은행에 대한 주식화가 완료될 것이므로 이제 외국자본을 많이 유치할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전망할 수 있다.[37]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는 WTO 가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먼저, WTO 가입을 기다리는 동안, 100% 외국자본에 의한 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하는 수상령 제22호(Decree No.22/2006/ND-CP)가 공포되었다. 100% 외자계은행 등의 설립이 현재 가능한데, 100% 외자계은행도 현지 민영상업은행과 마찬가지의 동등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 다음으로 베트남국영은행은 2007년 6월 위 수상령의 시행을 위한 100% 외자계은행, 외국은행 지점 및 합작은행과 사무소 설립 및 운영관련 시행규칙을 발표하였다. 베트남의 WTO 가입을 계기로 글로벌 은행은 베트남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순수 외국은행인 HSBC와 Standard Chartered 은행이 처음으로 베트남에 100% 지분을 보유한 은행을 설립함에 있어서 베트남국영은행이 이를 승인하였고, 이어서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ANZ)에 대하여 외국자본 100%의 은행

37) 전병서, 앞의 책, pp.80-85 참조.

설립이 허가되었다. 이처럼 베트남은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8700만 명 가운데 단지 10% 만이 은행계좌를 갖고 있어 시장 잠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외국계 은행에서 볼 때는 대단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것이다.[38]

제 2 절 소관부처별 법률[39]

1. 국방부

국방부가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민사재판시행법, 특별대사면법, 부패방지법, 국방법, 베트남인민군대장교법, 군사의무법 등이 있다.

(1) 민사재판시행법 (26/2008/QH12)

민사재판시행법은 국방부와 법무부가 함께 관장하는 법률이다. 국방부는 재판의 시행을 관리하는 기관이다(제13조 제1항 b)목).

민사재판시행법은 원칙, 순서, 판결시행절차, 민사결정, 벌금형, 재산몰수, 추징금, 부정취득재산, 증거처리, 재산, 소송비, 판결시 민사결정, 형사결정, 판결문 내 재산분, 법원의 행정결정, 분쟁사건의 재판시 피고측의 재산과 관련된 분쟁사건의 처리, 상거래중재인의 결정, 민사소송조직 및 집행관 시스템, 피고측과 원고측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의 권리와 의무, 민사소송 활동시 기관・조직・개인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민사재판시행법이 적용되는 판결 및 결정은 먼저, 법률효력을 가진 판결 및 결정인데, 그 내용은 ① 재심절차에 따라 상소 또는 항소를

38) 전병서, 앞의 책, pp.86-87 참조.

39) 법률의 소관부처는 해당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그 조항을 토대로 검색하였으며, 해당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부처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ND-CP)을 토대로 검색하였다.

받지 않은 초심법원의 판결 및 결정 또는 판결 및 결정부분 ② 재심법원의 판결 및 결정 ③ 법원의 판결 또는 재심감독결정 ④ 베트남법원의 공인을 받고 베트남에서 시행된 외국법원의 민사판결 및 결정, 외국중재인의 결정 ⑤ 상소 또는 항소포기의 법률적 효력을 가진 날로부터 30일 후 경쟁사건처리회동의 경쟁사건처리결정 ⑥ 상거래중재인의 결정이다.

다음으로, 상소 또는 항소를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초심법원에서의 다음과 같은 판결 및 결정으로 ① 원조제공, 임금지급, 보수지급, 퇴직보조금, 실직보조금, 노동력상실보조금, 또는 생명・건강・정신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노무 재취업인정에 대한 판결 및 결정 ② 임시긴급조치 적용결정이다.

(2) 특별대사면법 (07/2007/QH12)

특별대사면법은 국방부와 공안부가 함께 관장하는 법률이다. 국방부의 책임은 제27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특별대사면법은 특사의 시간, 순서, 절차, 관할권, 실시책임 및 특별사면 대상자의 조건, 권리,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으로는 ① 유기징역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사람 ②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기관・조직・공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영토 내에서 특사(特使)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외국사무소・개인・국제조직이다.

(3) 부패방지법 (55/2005/QH11)

부패방지법은 국방부와 공안부가 함께 관장하는 법률이다. 국방부는 그 임무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부패행위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지도할 책임을 가진다(제78조). 부패방지법은 부패 예방과 적발, 부패행위를 일으킨 자의 처벌, 부패방지에 관한 개인, 조직, 기관의 책임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의 정의는 권한과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익을 위해 그 권한과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이다.

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간부, 공무원 및 인민군대에 소속된 기관, 단위의 국방노동자, 직업군인, 장교, 전문장교, 하사관, 인민공안 소속 단체, 기관의 기술전문 장교, 하사관이다.

(4) 국방법 (39/2005/QH11)

국방법은 국방정책, 국방활동에 관한 기본 내용과 원칙 및 인민무장 역량의 활동, 국방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기관, 조직의 임무와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 시민, 조직, 기관에 적용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활동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사무소, 개인은 국방에 관한 베트남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5) 베트남인민군대장교법 (16/1999/QH10)

베트남인민군대 장교는 베트남 공산당,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간부로 군사분야에서 활동하고, 국가로부터 위관, 좌관, 장군 급의 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장교는 군대의 핵심역량은 동시에 군대 간부의 주요 구성원으로 지도자로써의 임무를 담당하고, 기타 일부 임무를 지휘, 관리 또는 직접 실시하며, 상시 군대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할당받은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여야 한다.

장교는 베트남 공산당의 전면적, 직접적이고 뛰어난 지도, 국가주석의 통솔, 정부의 통일적인 관리, 국방부 장관의 지휘 및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다.

(6) 군사의무법 (6-LCT/HĐNN7)

군사의무는 베트남인민군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공민의 영광스런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의무수행은 현역복무와 군대예비부대에서의 복무로 구성된다. 베트남 시민은 군사의무를 행하고, 전민의 국방건설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성공민은 민족, 사회성분, 종교신앙, 문화수준, 직업, 거주지를 구분하지 않고, 베트남인민군대에서 현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조국보호는 시민의 신성한 의무이자 고귀한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안부

공안부가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사법상조법, 특별사면법, 거주법, 부패방지법, 인민공안법, 국가안전법, 소방법, 마약방지법 등이 있다.

(1) 사법상조법 (08/2007/QH12)

사법상조법은 공안부, 외교부, 법무부가 함께 관장하는 법률이다. 공안부의 책임은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법상조법은 민사, 형사, 범죄인인도 및 베트남과 외국 간의 형 집행중인 범죄자 교환에 관한 원칙, 관할권, 순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 기관·조직·개인, 베트남과의 사법상조활동과 관련이 있는 외국 기관·조직·개인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사법상조는 사법상조법 규정에 따라 실현되고,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이 있는 베트남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는 베트남이 구성원으로 있는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서만 실현된다.

(2) 특별사면법 (07/2007/QH12)

공안부의 책임은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면법의 내용은 국방부에서 살펴보았다.

(3) 거주법 (81/2006/QH11)

공안부는 거주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6조 제2항). 거주법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내 공민의 거주자유권과 거주관리, 등록절차, 등록수순 및 거주관리와 등록에 관한 조직, 기관, 가정, 공민의 책임과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주란 임시거주, 상주의 형식으로 시진(市鎭), 방(坊), 사(社)에 소속된 한 지점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법은 베트남 공민 및 가정, 조직, 기관들과 베트남 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해외에 거주하다 베트남에 귀국하여 살고 있는 베트남인에 대해 적용된다.

공민은 거주법의 규정과 기타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거주의 자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주, 임시거주 등록 조건을 충족한 공민에게는 관할권이 있는 국가기관에 상주, 임시거주 등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민의 거주자유권은 관할권이 있는 국가기관의 규정과 규정법률에 의한 절차 및 순서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4) 부패방지법 (55/2005/QH11)

공안부 내에는 부패방지에 관해 책임을 지는 단위가 있다(75조 제1항). 공안부는 그 임무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부패행위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지도할 책임을 가진다(제78조). 부패방지법의 내용은 국방부에서 살펴보았다.

(5) 인민공안법 (54/2005/QH11)

인민공안법은 인민공안에 대한 활동, 조직의 원칙 및 정책, 제도, 권한, 임무,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공안조직, 베트남 공민, 조직,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영토 내에서 활동 및 거주하는 외국인, 조직에 적용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을 적용한다.

(6) 국가안전법 (32/2004/QH11)

국가안전법은 국가안전 정책 및 국가안전 방법・임무 원칙, 기관, 조직, 시민의 국가안전보호 책임, 의무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기관, 조직, 시민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원조국제조직, 외국사무소, 개인에게 적용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약에 따라 적용된다.

(7) 소방법 (27/2001/QH10)

소방법은 화재예방, 화재진화와 화재예방, 화재진화 활동을 위한 정책, 장비, 역량 건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영토 내에서 생활, 활동하는 개인, 가정, 조직, 기관은 이 법률 규정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 이 법률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을 적용한다.

(8) 마약방지법 (23/2000/QH10)

마약방지법은 마약 퇴치, 예방 및 마약과 관련된 합법적 활동을 감찰하는 내용 및 마약을 퇴치, 예방하는 개인, 가정, 기관, 조직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약방지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① 마약물질 함유 식물 재배 행위 ② 마약물질, 중독성 약품, 향정신성 약품의 생산, 저장, 운반, 보관, 매매, 배포, 감정, 교환, 수출, 수입, 국경통과, 위법적인 연구 또는 약탈 행위 ③ 마약물질의 위법적 사용, 위법한 마약물질의 사용 원조, 선동, 강제, 은닉 행위 ④ 불법마약류의 생산 및 투약에 사용되는 기구나 수단(도구)을 생산, 저장, 운반, 매매하는 행위 ⑤ 마약에 관한 범죄에 의한 재산과 금전의 합법화 행위 ⑥ 마약근절의 방해, 저항 행위 ⑦ 마약 예방, 퇴치 참가자 또는 책임자를 방해, 복수하는 행위 ⑧ 마약 예방, 퇴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위한 직무, 권한, 직업을 이용한 이익 행위 ⑨ 마약에 관한 기타 위법적인 행위이다.

3. 외교부

외교부가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사법상조법, 국제조약의 체결・가입・실시에 관한 법, 국경법 등이 있다.

(1) 사법상조법 (08/2007/QH12)

외무부의 책임은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법상조법의 내용은 국방부에서 살펴보았다.

(2) 국제조약의 체결・가입・실시에 관한 법 (41/2005/QH11)

외교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5/2008/ND-CP) 제2조 제20항에서 외교부가 국제조약 및 국제협상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약의 체결・가입・실시에 관한 법은 체결된 국제조약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정부대표, 국가의 대표가 가입한 국제조약의

체결・가입・유보・복사・공포・등록・실현・해석・수정・보충・연기・효력종료・취소・철회・임시정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조약의 체결・가입・실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국가영토 전체, 주권, 독립을 존중하고 무력사용 또는 무력을 사용한 협박을 금지하며, 내부의 일에 서로 간섭하지 않고, 국제법률의 다른 기본 원칙과 공동의 이익을 존중 ②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 규정에 부합 ③ 국가의 이익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대외노선에 부합 ④ 정부대표 국제 조약은 국가대표 국제조약에 반할 수 없음 ⑤ 국회상무위원회, 국회의 법률규범 문서의 규정에 없거나 그에 반하는 국제조약과 수정・보충・폐지 또는 국회상무위원회, 국회의 법률규범문서 발생이 필요한 국제조약은 협상・체결 또는 가입 전에 국회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타진하여야 한다. 국회의 법률규범문서에 반하는 규정이 있는 국제조약에 가입・체결・협상을 하는 경우 국회상무위원회는 국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타진하여야 한다. ⑥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시에 다른 구성원 역시 그 국제조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국경법 (06/2003/QH11)

외교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5/2008/ND-CP) 제2조 제16항에서 외교부가 국경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 국경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영토, 섬, 군도(황 사 군도와 쯔엉 사 군도를 포함한다) 및 영해, 영토, 영공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도로 및 그 도로에 따른 상공을 말한다.

국경법은 국가 국경 및 국가 국경에 관한 법리제도, 국경구역과 국가국경 보호, 관리, 건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 법률이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과 베트남이 가입 또는 체결한 국제조약들에 부합하도록 규정한 법률에 의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영해 경계구역, 경제특권구약, 대륙붕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제 및 법리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의 기관, 조직, 개인은 국경법의 규정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베트남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법무부

법무부가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베트남국적법, 민사재판시행법, 법률규범문서공포에 관한 법, 사법상조법, 공증법, 변호사법, 법률상담법, 어음수표법, 민법, 인민의회 및 인민위원회의 법률규범문서공포에 관한 법, 민사소송법, 감사법, 파산법, 형사소송법, 인민검찰원 조직법, 형법 등이 있다.

(1) 베트남국적법 (24/2008/QH12)

베트남 국적법에서 베트남국적은 개인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연관성을 구현하며 국가에 대한 베트남공민의 권리 및 의무, 베트남공민에 대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권리 및 책임을 발생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는 모든 개인이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지며, 베트남공민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베트남영토 위에서 각각의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통일국가로 각 민족의 모든 구성원은 베트남국적을 가질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민사재판시행법 (26/2008/QH12)

법무부는 민사재판시행의 관리기관이다(제13조 제1항 a)목). 민사재판시행법의 내용은 국방부에서 살펴보았다.

(3) 법률규범문서공포에 관한 법 (17/2008/QH12)

법률규범문서란 국가기관이 공포하거나 이 법 또는 사회관계들을 조정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현을 보장하는 공통처리규칙, 공통강제효력이 포함된 인민의회・인민위원회의 법률규범문서법에서 규정한 관할권・형식・순서・절차에 따라 협의하여 공포한 문서이다. 국가기관이 공포하거나 협의하여 공포한 문서가 이 법 또는 인민의회・인민위원회의 법률규범문서법에서 규정한 관할권・형식・순서・절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규범문서가 아니다.

법률규범문서는 ① 국회의 헌법, 법률, 의결 ② 국회상무위원회의 법령, 의결 ③ 국가주석의 영, 결정 ④ 정부의 의정 ⑤ 정수수상의 결정 ⑥ 최고인민재판소 회의의 의결 및 최고인민재판소장의 통지서 ⑦ 최고인민검찰청장의 통지서 ⑧ 부급기관장 및 차관의 통지서 ⑨ 국가총검산(檢算)의 결정 ⑩ 국회상무위원회 또는 정부와 정치-사회조직의 중앙기관과의 연합 의결 ⑪ 최고인민재판소장과 최고인민검찰청장 간의 연합 통지서, 부급기관장차관과 최고인민재판장, 최고인민검찰청장 간의 연합 통지서, 각 부급기관장차관 간의 연합 통지서 ⑫ 인민의회 및 인민위원회의 법률규범문서에 적용된다.

법률규범문서의 수립 및 공포원칙은 ① 법률시스템 내에서 법률규범문서의 합헌성, 합법성, 통일성을 보장 ② 법률규범문서의 수립 및 공포에 대한 관할권, 형식, 순서, 절차를 준수 ③ 법률규범문서가 국가비밀에 속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규범문서 수

립 및 공포 과정에서 공개성을 보장 ④ 법률규범문서의 각종 규정에 있어서 명백성을 보장 ⑤ 법률규범문서의 실현가능성을 보장 ⑥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구성원으로 있는 국제조약의 실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법상조법 (08/2007/QH12)

법무부는 정부를 도와 사법상조에 관한 국가관리를 통일한다(제62조 제1항). 사법상조법의 내용은 국방부에서 살펴보았다.

(5) 공증법 (82/2006/QH11)

법무부는 공증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11조 제2항). 공증법은 공증의 범위, 공증인, 공증업무조직, 공증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증의 정의는 공증인이 공증법률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이용하여 계약, 기타 교역의 합법성, 진실성을 입증하거나, 개인 및 조직이 자의로 공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증업무의 원칙에는 ① 헌법과 법률준수 ② 객관성, 충실성 ③ 공증 문서에 관하여 법 앞에 책임 ④ 공증 업무에 대한 윤리적 규칙 준수가 있다.

(6) 변호사법 (65/2006/QH11)

법무부는 변호사 및 변호사업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83조 제2항). 변호사법은 베트남의 변호사, 법률업무기관, 변호사협회의 권리, 의무, 기준, 업무형식, 범위, 조건, 원칙과 외국 변호사, 외국 법률조직의 업무, 법률업무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란 법호사법 규정에 따른 업무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개인, 기관, 조직의 요구에 따라 법률 서비스를 행하는 자를 뜻하며, 변호사의 직업활동은 정의실현에 공헌하며, 문명적, 민주적이고 공평한 사회건설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법률상담법 (69/2006/QH11)

법무부는 법률상담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47조 제2항). 법률상담법은 법률상담을 받는 자, 법률상담을 행하는 조직, 법률상담을 행하는 자, 법률상담활동과 법률상담에 관한 국가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담활동과 관련된 기관, 조직 및 개인에 적용되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상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담이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상담을 받는 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제공, 합법적 이익 및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법률에 대한 이해, 법률 집행·존중의식 고양 및 법률교육, 보편화, 정의보호, 공정한 사회보장, 법률위반과 논쟁 제한 및 예방에 공헌하는 것을 말한다.

(8) 어음수표법 (49/2005/QH11)

어음수표법은 발행, 수인, 담보, 양도, 저당, 수집, 청산, 상환청구에 있어서의 양도수단의 관계들을 조정하고 있으며, 어음수표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수단은 환어음, 독촉장, 수표, 기타 양도수단을 포함하며, 시장의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 발행된 장기채무수단은 제외하고 있다. 어음수표법은 베트남 조직, 개인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의 양도수단 관계에 참여하는 조직, 개인에 적용된다.

어음수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수단 발행기관의 종류는 각 조직, 개인 간의 대여・서비스 공급・재화교역 및 조직・개인과 신용조직 간의 대여거래, 법률규정에 따른 거래청산과 증여시 양도수단을 발행하는 양도수단발행자나 계약체결자를 뜻하며, 양도수단 관계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9) 민법 (33/2005/QH11)

민법은 개인, 법인, 주체의 행동방식을 위한 법리기준, 법리지위 및 민사, 혼인, 가족, 경영, 상업, 노동 관계에 있어서 재산과 인간주체의 권리와 의무 및 개인, 조직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 국가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관계에 있어서 법리적 안전과 평등을 보장하며, 인민의 정신적, 물질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건 조성에 공헌하여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민법 또는 기타 국회의 의결에 의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이 효력을 발하는 날로부터 확립된 민사관계에 적용되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내에서 적용된다. 또한 민법은 외국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 때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의 규정이 없고 쌍방의 의견일치가 없는 경우, 관습을 적용할 수 있고, 만약 관습이 없으면 법률의 유사규정을 적용한다. 관습과 법률의 유사규정은 이 법에 있는 원칙규정에 반할 수 없다.

계약 및 합의가 법률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권리와 의무 확립에 있어서 계약, 합의의 자유권은 법에 의해 보장된다. 민사관계에 있어서 쌍방은 타인에게 강제, 강요, 방해,

협박할 수 없으며, 완전히 자발적이어야 한다. 합법적 계약, 합의는 쌍방에게 강제적 시행 효력이 있으며 개인, 법인, 기타 주체로부터 존중되어야 한다.

민사관계에서 쌍방은 모두 평등하며, 평등하지 않은 대우를 위해 민족, 성별, 사회성분, 경제환경, 신앙, 종교, 문화수준, 직업에 관련된 다른 이유를 들 수 없다. 그리고 신의성실원칙에 의해 쌍방은 민사의무와 권리를 실현, 확정하는 과정에서 선의를 보이고 신뢰해야 하며 상대방을 속일 수 없다.

쌍방은 자신의 민사의무를 정확히 시행해야 하고, 시행하지 못하거나 정확히 의무를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자발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하여 강제시행될 수 있다.

민사의무, 권리의 실현과 확립은 민족의 특색 유지를 보장하고, 모든 공동의 좋은 전통, 관습, 풍속, 단결정신, 상호애정을 발휘하여야 하며, 이는 각 민족의 훌륭한 윤리가치이고, 모든 사람들은 국가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 소수민족 동포들의 경우 그들의 정신적, 물질적 삶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민사관계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민사상 권리 및 의무 실현과정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장려한다.

민사상 권리 보호 및 존중 원칙에 의해 개인, 법인, 기타 주체의 모든 민사상 권리는 법률에 의해 존중, 보호된다. 또한 한 주체의 민사상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주체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보호하거나 심사권이 있는 조직, 기관에 다음과 같이 ① 자신의 민사상 권리 인정 ② 위법행위 강제 중지 ③ 강제사과, 공개 개정(改正) ④ 민사의무 강제 실현 ⑤ 강제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민사상 권리와 의무의 실현, 확립 행위는 국가의 이익,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민사상 권리와 의무의 실현, 확립 행위는 민법의 규정과 법률의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민사관계에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 중재가 쌍방에게 권장된다. 누구도 민사관계에 참여하고,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력의 사용이나, 무력을 사용한 협박을 할 수 없다.

민사상 권리와 의무는 다음에 근거하여 확정된다. ① 합법적인 민사거래 ② 법정과 기타 관할권 있는 국가기관의 결정 ③ 법률규정에 의한 법리적 사건 ④ 지적소유권에 속한 지적가치창조 ⑤ 법률근거가 있는 재산 소유 ⑥ 법률에 반하는 행위에 의한 손해 유발 ⑦ 위임권 없는 업무의 시행 ⑧ 법률근거가 없는 재산소유, 사용, 재산으로부터의 이익 취득 ⑨ 법률규정에 의한 기타 근거 등이다.

(10) 인민의회 및 인민위원회의 법률규범문서공포에 관한 법 (31/2004/QH11)

법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93/2008/ND-CP) 제2조 제4항에서 법무부가 각종 법률규범문서 및 계획안 실시에 대한 지도, 안내, 조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의회 및 인민위원회의 법률규범문서는 인민의회 및 인민위원회의 법률규정에 의한 관할권, 순서, 절차에 따라 발행된 문서로서, 이에는 일반적 처리규칙이 있고, 지방범위에도 효력이 있으며, 국가에 의해 사회주의 방향에 따라 지방에서의 사회관계 조정을 목적으로 한 실시가 보장된다. 인민의회의 법률규범문서는 의결형식으로 공포되며, 인민위원회의 법률규범문서는 지시, 결의의 형식으로 공포된다.

인민의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법률규범문서를 공포한다. ① 상급국가기관의 문서, 법률, 헌법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정책・방침 결정 ② 지방의 안전, 국방, 예산, 경제-사회발전 계획 결정 ③ 상급국가기관에서 할당된 임무완성과 인민의 생활향상 및 안정을 위한 방법 결정 ④ 상급국가기관의 법률규범문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지방의 경제-사회발전 조건에 부합하는 특이점을 지닌 방법, 방침을 포함한 관할권 범위 내에서의 결정 ⑤ 상급국가기관으로부터 인민의회로 하달된,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 규정하는 문서 등이다.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법률규범문서를 공포한다. ① 헌법 및 법률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사회 발전 및 공고한 국방, 안전에 관한 상급국가기관의 문서, 동급 인민의회의 의결 ② 지방에서의 국가관리기능 실현과 지역에서의 기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 ③ 상급국가기관으로부터 인민의회로 하달된 구체적인 문제에 관련하여 규정하는 문서 등이다.

인민의회 및 인민위원회의 법률규범문서는 헌법, 법률, 상급국가기관의 법률규범문서에 부합해야 하고, 통일성 및 법률시스템 내에서 문서의 법리효력등급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인민위원회의 법률규범문서는 동급 인민의회의 의결에 부합해야 한다.

헌법, 법률 및 상급국가가관의 법률규범문서에 반하는 인민위원회, 인민의회의 법률규범문서, 동급 인민의회의 법률규범문서에 반하는 인민위원회의 법률규범문서는 관할권이 있는 국가기관 및 개인에 의해 적시에 시행을 정지, 수정, 취소되어야 한다.

(11) 민사소송법 (24/2004/QH11)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에서의 기본원칙 및 민사, 혼인, 가정, 사업, 무역, 노동(이하 민사사건이라 칭함)논쟁에 관한 사건들을 법정에서 해결하기 위한 수속, 순서와 재판에서의 민사사건 해결을 위한 절차, 순서, 민사재판 시행, 소송진행 기관과 소송진행자의 의무, 권한, 책임, 빠르고 정확하고 공명정대하고, 법률에 맞는 민사사건 해결의 보장과 관련된 소송 참여자, 개인, 국가기관, 인민무장단위, 경제조직,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정치사회-기업조직, 사회조직, 사회-기업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은 사회주의제도 보호에 공헌하고,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증강시키며, 국가의 이익과 개인, 기관, 조직의 합법적인 이익과 권리를 보호한다.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모든 인민을 교육시키는 규정도 있다.

민사소송법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전 영토에서 모든 민사소송활동에 대해 적용되며. 해외에서 영사관에 의해 진행되는 모든 민사소송활동에 대해 적용되고, 외국요소가 있는 민사사건 해결에 적용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면,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베트남 법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각 외교면제, 우대권 또는 각 영사면제, 우대권을 누리는 대상에 속한 외국 개인, 기관, 조직의 경우 그 개인, 기관, 조직과 관련된 민사사건은 외교노선에 따라 해결된다.

(12) 감사법 (22/2004/QH11)

법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93/2008/ND-CP) 제2조 제23항에서 법무부가 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법은 인민감사와 국가감사활동,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감사기관은 동급의 국가관리기관의 관리심사권에 속한 개인, 조직, 기관의 임무, 법률, 정책실현의 감사를 진행한다. 인민감사위원회는 제소, 고소해결에 관한 법률, 정책실현, 사(社), 방(坊), 시진(市鎭),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가기업의 책임이 있는 개인, 조직, 기관의 민주규제 실현에 대해 감사한다.

감사활동은 각종 법률위반행위를 예방・적발・처리하고, 관리체재・정책・법률상의 허점을 적발하여 그 해결방법을 관할국가기관에 건의하며,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관리활동의 효력 및 효과를 고양하는 데 기여하며, 국가의 이익 및 기관・조직・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파산법 (21/2004/QH11)

파산법은 파산신청서 제출과 조건 및 파산수속에 있어서 재산에 관한 의무와 재산보관방법 확정, 사업활동 수속, 조건, 재산청산 수속, 파산통보, 파산신청서 제출자, 기업, 파산통보된 협동조합, 파산통보 요구 해결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파산법은 법률규정에 따라 형성, 활동하는 기업, 협동조합, 협동연합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국방, 안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특정기업 및 재정, 은행, 보험분야와 기타 필수 공익서비스, 상품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일반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이 법의 적용과 구체적 항목에 관해 규정해야 한다.

파산법에는 채권자가 요구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청산할 능력이 없는 기업 및 협동조합을 파산상황에 처했다고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

(14) 형사소송법 (19/2003/QH11)

형사소송법은 기소절차와 순서, 조사, 형사재판 시행, 심판, 조사, 소추 및 소송진행기관들 사이의 관계와 권한, 임무, 기능 및 소송진행자들의 책임, 권한, 임무 그리고 소송참가자와 각 기관, 조직,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능동적으로 범죄를 예방 및 퇴치하고, 빠르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며, 적시에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범죄를 방치하지 않음으로써 죄 없이 억울한 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형사소송 범위에서 국제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내의 모든 형사소송활동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참여하는 구성원 국가의 국민인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내에서의 형사소송활동은 그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베트남 법률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국제 관습에 따라 영사 면책권, 우대, 외교특별권을 누리는 대상 중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소송은 외교노선에 따라 해결된다.

(15) 인민검찰원조직법 (34/2002/QH10)

인민검찰원은 법률 및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각종 사법활동에 대한 감찰, 기소권을 시행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 사법활동에 대한 감찰과 기소권을 시행하고, 법률의 엄정하고 통일적인 집행 보장에 공헌한다. 지방의 각 인민검찰원은 자신의 지방의 사법활동에 대한 감찰, 기소권을 시행한다. 각 군사검찰원은 법률규정에 따라 사법활동에 대한 감찰, 기소권을 시행한다.

직무범위 내에서 인민검찰원은 국가, 집단의 이익, 시민의 합법적인 이익과 권리 침해 행위가 법률에 따라 처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회주의 법제 보호, 사회주의 제도 보호, 인민의 주권 보호, 국가, 집단의 재산 보호, 시민의 생명, 건강, 재산, 자유, 명예, 인품보호에 공헌할 의무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① 조사기관과 일부 조사활동의 진행 임무를 부여받은 기타 기관들의 형사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법률에 따른 감찰권과 기소권 시행 ② 사법기관 소속 간부의 일부 사법활동 침해죄 조사 ③ 각종 형사사건 판결에 있어서 법률에 따른 감찰, 기소권 시행 ④ 각종 민사, 혼인, 가정, 행정, 경제, 노동 및 기타 법률규정에 따른 사건의 해결 감찰 ⑤ 인민법원의 결정 및 판결시행에 따른 감찰 ⑥ 임시 수용과 감금처벌 판결 집행자 교육 및 관리에 따른 감찰 등의 업무를 통해 임무 및 직무를 수행한다.

(16) 형법 (15/1999/QH10)

형법은 사회주의 제도 및 시민의 주권을 보호하고, 각 민족 동포들 사이의 평등권을 보호하며, 국가의 이익, 시민, 조직의 합법적 이익,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법률 질서를 보호하고, 범죄행위를 퇴치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법률준수 의식을 교육하며, 범죄 퇴치와 예방을 위해 분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처리 원칙으로 ① 모든 범죄행위는 적절한 법률에 따라 적시에 빠르고 공명정대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② 모든 범죄자는 법 앞에 평등하고, 남녀, 민족, 신앙, 종교, 사회지위, 성분을 구분 받지 않는다. 주모자, 선동자, 지휘자는 엄정하게 징벌하며 폭력범, 재범, 범죄를 위해 직무 및 권한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 교묘한 속임

수를 이용한 범죄자, 전문적 특징 및 조직이 있는 범죄자, 고의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 범죄자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자수(自首)자,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 공범자를 고발하는 자, 속죄하여 공을 세운자, 뉘우치는 자, 발생시킨 손실에 대해 자발적으로 배상하거나 수정하는 자는 관대하게 처벌한다. ③ 초범자는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고, 뉘우친 자에 대해서는 실형보다 가벼운 형벌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관, 조직 또는 가정에서 감찰, 교육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 ④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그 형벌은 감옥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동 및 학습을 해야한다. 만약 상당부분 개선이 된다면 감형을 고려할 수 있다. ⑤ 형집행이 끝난 자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량하고 공동에 화합하는 삶의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과를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계획투자부

계획투자부가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기업법, 투자법, 경매법,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국영기업법, 통계법 등이 있다.

(1) 기업법 (60/2005/QH11)

계획투자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16/2008/ND-CP) 제2조 제12항에서 계획투자부가 기업설립 및 발전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법은 모든 경제 요소에 있어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 개인기업의 설립, 조직관리 및 활동과 기업집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업법의 적용대상은 모든 경제 구성요소에 속하는 기업 및 기업의 설립, 관리조직, 활동과 관련 있는 개인 및 조직이며, 모든 경제 구성요소에 속하는 기업의 설립, 관리조직, 활동은 이 법 또는 기타 관련

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기업의 설립, 조직, 활동과 관련한 특별한 예외가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과 이 법의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는 기업법에 규정된 종류의 기업이 장기간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인정하며, 각 기업의 법률상 평등을 보장하고, 소유형식에 대해 구분하지 않으며, 경영활동의 합법적 이익을 인정해야 하며, 기업과 기업 소유주의 재산소유권, 투자자본, 수입을 비롯한 기업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기업과 기업 소유주의 합법적 재산 및 투자자본금은 행정상의 조치로 인해 국유화되거나 몰수되지 않는다.

(2) 투자법 (59/2005/QH11)

계획투자부는 투자활동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81조 제2항). 투자법은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활동,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의 보장, 투자의 장려・우대제도, 베트남에서의 투자활동 및 해외투자활동에 대한 국가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 영토에서 투자활동을 하려는 국내투자자, 외국투자자 및 해외에 투자하려는 투자자 및 투자활동과 관련된 개인・조직에 적용된다.

투자법상 투자정책은 ① 투자자는 법률이 금하지 않는 모든 업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 베트남 법률에 따라 투자경영활동에 대한 자주권과 결정권을 갖는다. ② 국가는 국내투자, 외국투자를 불문하고 모든 경제 분야에 있어서 투자자를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고, 투자활동을 장려하고 유리한 여건을 촉진한다. ③ 국가는 투자자의 재산소유권, 투자자본, 소득 및 그 밖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인정하며, 투자활동의 장기적 존재 및 발전을 인정한다. ④ 국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투자관련 국제조항을 이행한다. ⑤ 국가는 투자우대분야 및 우대지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우대정책을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3) 경매법 (61/2005/QH11)

계획투자부는 경매활동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68조 제1항). 경매법은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에 속한 일괄계약에 대한 자문서비스 공급, 물건구매, 건설 계약자를 선택하기 위한 경매 활동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개발투자 목적을 위한 30% 이상의 국가예산 사용 프로젝트에서 건설투자 종료 프로젝트 확대, 신 건설투자 프로젝트, 조립이 필요 없는 기계, 설비를 포함한 재산 구매 프로젝트, 지역발전계획, 분야별 발전계획, 농촌, 도시건설 계획 프로젝트, 과학연구, 기술개발, 기술원조 프로젝트, 기타 개발투자 목적의 프로젝트 ② 국가기관,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정치사회-기업조직, 사회조직, 사회-기업조직, 인민무장단체의 일상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구매를 위한 국가예산 사용 계획안 ③ 국영기업에 투자된 공장, 공정, 생산라인, 설비들의 대규모 수리, 개조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구매를 위한 국가예산 사용 계획안이 그 내용이다.

투자법은 각 프로젝트에 속한 일괄계약 입찰활동에 참가하는 국내외 조직 및 개인과 각 프로젝트에 속한 일괄계약 입찰활동과 관련된 조직 및 개인 및 투자법의 적용을 선택하였으나 이 법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보유한 조직 및 개인에 적용된다.

경매활동은 투자법의 규정과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른 법률규정에 경매에 관한 특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정부개발원조(ODA) 예산사용 계획안의 경우, 베트남사회

주의공화국이 구성원인 국제조약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심사권이 있는 조직 및 기관이 체결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기반으로 경매가 시행된다.

(4)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48/2005/QH11)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률은 계획투자부, 재무부, 건설부, 자원환경부, 내무부, 노동보훈사회부, 정보통신부가 함께 관장하는 법률이다. 계획투자부의 책임은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은 국가예산, 국가재산, 노동, 국가지역의 노동시간과 천연자원의 사용, 관리에 있어서 절약시행과 낭비방지 및 인민의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의 절약과 낭비방지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투자법은 국가예산, 국가재산, 노동, 국가지역의 노동시간과 천연자원을 사용, 관리하는 기관, 조직, 개인에 적용된다.

(5) 국영기업법 (14/2003/QH11)

계획투자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16/2008/ND-CP) 제2조 제12항에서 계획투자부가 기업설립 및 발전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영기업은 국가가 조례자본 전체 또는 주식이나 지배자본을 소유한 경제조직으로, 국가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의 형식으로 조직된다.

국영기업법은 ① 국가회사의 신설, 재설립, 해체, 소유이전, 관리 및 활동조직 규정 ② 국가가 조례자본 전체를 소유하고 있거나 기업이 주식 또는 국가의 지배자본을 소유한 기업에서 국가소유주와 국가가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표자 간의 관계를 조정한다.

적용대상은 국가회사, 국가주식회사 및 1인으로 구성된 국가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국가유한책임회사에서 국가가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표자, 국가의 지배자본 또는 주식을 소유한 기업에서 국가가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표자이며, 국가의 자본을 소유한 기업에서 국가가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표자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다. 국가회사, 특히 직접적으로 국방 및 안녕에 기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법의 규정 및 정부의 구체적인 규정을 적용한다.

(6) 통계법 (04/2003/QH11)

계획투자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16/2008/ND-CP) 제2조 제14항에서 계획투자부가 통계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은 통계활동, 통계정보사용, 국가통계조직시스템에 대하여 규정하고, 국가통계조직시스템 이외에 개인, 조직의 통계조사는 정부규정에 의한다.

통계법은 통계정보를 공급하는 베트남 영토에서 활동하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인민무장역량단위,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정치사회-기업조직, 사회조직, 사회-기업조직, 기업, 경제성원, 협동조합에 속한 기업의 직속단위와 기업, 개인사업자, 가정, 개인, 기타 조직과 통계정보를 사용하는 개인, 조직 및 통계조직, 통계 업무자에게 적용된다.

6. 재무부

재무부가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특별소비세법, 재산징수 및 수용법, 법인소득세법, 국가재산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 부가가치세법, 개인소득세법, 세금관리법, 증권법,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수출입세법, 국가검산법, 회계법, 국가예산법, 보험사업법, 국영은행법, 금융기관법, 토지사용권양도세법, 농업용토지사용세법 등이 있다.

(1) 특별소비세법 (27/2008/QH12)

재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18/2008/ND-CP) 제2조 제6항에서 재무부가 국가예산에 대한 세금, 경비 및 기타 수입 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은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 비부과대상, 납부자, 계산근거, 환급, 공제, 삭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상품으로 ① 담배, 시가 및 씹거나 흡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나무를 이용한 기타 제품 ② 주류 ③ 맥주 ④ 24인승 이하 자동차(승객용 및 의자가 2개 이상이고 사람이 타는 곳과 물건을 싣는 곳 사이에 칸막이가 있는 화물용 모두 포함) ⑤ 실린더용량이 125㎤ 이상인 이륜차 및 삼륜차 ⑥ 비행기, 유람선 ⑦ 각종 석유, 나프타, 재결합제품 및 석유제조를 위한 기타 제품 ⑧ 용량이 90,000 BTU 이하인 온도조절기 ⑨ 잎 제품 ⑩ 제수용품이다.

서비스로서는 ① 무도장(클럽) 경영 ② 마사지, 가라오케 경영 ③ 카지노 경영, 잭팟, 슬롯머신 및 기타 유사한 전자게임기를 보유한 전자게임업소 경영 ④ 경기(시합) 경영 ⑤ 회원카드나 경기권을 판매하는 골프장 경영 ⑥ 복권 경영 등이 부과대상이다.

비부과 대상은 위에서 규정한 상품 중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별소비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먼저 생산·가공업체에서 직접 수출 또는 판매하거나 수출을 위해 다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상품과 수입상품으로써 ① 인도적인 지원 상품, 비상환 지원 상품, 국가기관·정치조직·정치사회-직업조직·사회조직·사회-직업조직 및 인민무장단위에 대한 포상, 정부의 규정에 따른 베트남 내 개인에 대한 선물 및 포상 ② 베트남 국경 및 국경로를 통해 운반되는 상품, 정부의 규정에 따라 국경관문을 이동하는 상품 ③ 일시 수입상품, 재수출상품,

일시 수출상품, 재수입상품은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수입세, 수출세 ④ 외교면제표준에 따른 외국사무소 및 개인의 물건, 세금면제수하물표준에 해당하는 개인별 소지품, 법률의 규정에 따라 면세로 판매하기 위한 수입상품 등이다.

다음으로 ① 상품 및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행기 ② 유람선과 구급차, 범죄인수송차, 장의차, 입석과 좌석을 합쳐 24인승 이상으로 설계된 자동차 ③ 운행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도로가 아닌 놀이・여가・스포츠구역 내에서 사용되는 자동차 ④ 해외에서 비관세구역으로 유입되는 수입상품 ⑤ 국내에서 비관세구역으로 판매되어 비관세구역 내에서만 사용되는 상품 ⑥ 비관세구역 간에 매매되는 상품(단, 24인승 이하 여객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등이 있다.

(2) 재산징수 및 수용법 (15/2008/QH12)

재무부는 재산징수 및 수용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9조 제2항). 재산징수 및 수용법은 재산징수 및 수용, 재산징수 및 수용시 국가기관의 권한 및 책임, 징수・수용재산을 갖고 있는 자의 권리 및 의무, 재산징수 및 수용과 관련이 있는 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재산징수 및 수용정책으로 ① 국가는 조직, 개인, 가정, 거주민공동체의 재산에 관한 합법적인 소유권과 사용권을 공인하고 보호 ② 수용재산소유자는 재산수용금액을 청산 받게 되고, 징수재산소유자는 징수로 인해 재산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되면 시장가격에 따라 손실을 보상 ③ 국가는 조직, 개인, 가정, 거주민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국가에 재산을 헌납하거나 재산수용・징수시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가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장려하고 문서로 기록 등이 있다.

(3) 법인소득세법 (14/2008/QH12)

재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18/2008/ND-CP) 제2조 제6항에서 재무부가 국가예산에 대한 세금, 경비 및 기타 수입 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소득세법은 법인소득세의 세금납부자, 세금부과수입, 면세수입, 계산근거, 계산방법, 우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법인소득세납부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수입을 가지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경영활동조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외국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베트남 내에 상주기관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은 법인 ③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④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업단위 ⑤ 생산·경영활동을 하고 수입을 내는 기타 조직 등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수입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은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① 베트남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베트남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베트남 외에서 발생하는 수입 ② 베트남에 상주기관을 갖고 있는 외국법인의 그 상주기관과 관련하여 베트남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베트남 외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세금 ③ 베트남에 상주기관을 갖고 있는 외국법인의 그 상주기관의 활동과 관계없이 베트남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세금 ④ 베트남에 상주기관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의 베트남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세금 등이다.

외국법인의 상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베트남에서의 생산·경영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진행하여 수입을 창출하는 생산·

경영기관이다. ① 베트남 내 대리점, 운영사무소, 공장, 운송수단, 지하광산, 유전, 가스광구 또는 기타 천연자원개발지점 ② 건설·조립작업 및 지점 ③ 근로자 또는 기타 조직이나 개인을 통한 자문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공급기관 ④ 외국법인을 위한 대리점 ⑤ 베트남에서 법인의 대표가 외국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또는 외국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는 않았지만 상시 상품교류 또는 서비스공급을 실시하는 경우 베트남 내 법인이 그 내용이다.

세금부과수입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경영활동으로부터의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구성된다. 기타 수입은 자본양도 및 부동산양도로부터 얻은 수입, 재산소유권 및 사용권으로부터 얻은 수입, 재산의 양도·임대·청산으로부터 얻은 수입, 송금·대부·외화매매로부터 얻은 수입, 예비비용환급, 독촉이 불가능한 채무회수,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는 지불필수 채무회수, 폐업하기 이전의 경영으로부터 얻은 수입, 베트남 밖에서 생산·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을 포함한 기타 수입을 의미한다.

(4) 국가재산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 (09/2008/QH12)

국가재산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재무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산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은 국가기관, 인민무장단위, 공립사업단위,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정치사회-직업조직, 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에서의 국가재산 관리 및 사용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본사 및 토지관련 기타 재산, 즉 본사 및 기관·조직·단위의 사업활동기관을 건설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 기계, 운송수단, 설비·장비 및 법률에서 규정한 기타 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산 관리 및 사용원칙으로 ① 모든 국가재산은 국가가 기관, 조직, 단위에 배분하여 사용 ② 국가재산에 대한 국가의 관리는 각 국가기관 간에 협력하여 통일적, 분업적으로 책임 있게 시행 ③ 국가재산은 올바른 목적, 표준, 제도에 따라 투자·사용되어야 하며 공평하고 효과적인 절약을 보장 ④ 국가재산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물 및 가치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 ⑤ 매매, 임대, 합작경영, 연합, 변제관계 또는 기타 교역 시 재산가치 확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장구조에 따라 시행 ⑥ 국가재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육성·수정·보호 ⑦ 국가재산의 관리 및 사용은 투명하게 공개 ⑧ 국가재산의 관리 및 사용제도에 관한 모든 위반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엄격하게 처리 등이 있다.

(5) 부가가치세법 (13/2008/QH12)

재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18/2008/ND-CP) 제2조 제6항에서 재무부가 국가예산에 대한 세금, 경비 및 기타 수입 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 비부과대상, 납세자, 계산근거 및 방법, 공제, 환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는 생산·유통에서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추가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세금으로서 베트남에서 생산·경영·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된다.

(6) 개인소득세법 (04/2007/QH12)

재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18/2008/ND-CP) 제2조 제6항에서 재무부가 국가예산에 대한 세금, 경비 및 기타 수입

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법은 개인소득세의 납부대상, 부과수입, 면세수입, 감세, 계산근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납부대상은 세금부과수입에서 규정한 베트남 영토 내외에서 발생하는 세금부과수입을 가진 거주자와 세금부과수입에서 규정한 베트남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부과수입을 가진 비거주자이다.

개인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① 1년 중 183일 이상 또는 처음 베트남에 도착한 날로부터 연속해서 12개월을 베트남에서 체류하는 사람 ② 베트남에 주민등록지를 가지고 있거나 기한이 정해진 임대차계약에 따른 거주용 세입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베트남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개인수입 중 세금이 부과되는 수입은 다음과 같다. ① 경영으로부터 얻은 수입으로써 i)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경영으로부터 얻은 수입 ii)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직업허가서나 증명서를 가진 개인의 독립적인 직업 활동으로부터 얻은 수입 ② 임금 및 보수로부터 얻은 수입으로써 i) 임금, 보수 및 동등한 성격을 가진 수입 ii) 공로자우대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수당 및 보조금을 제외한 각종 수당 및 보조금, 국방·안전수당, 각종 직업 및 업무에 대한 유해·위험수당, 법률규정에 따른 지역수당, 긴급장애보조금, 근로재난 및 직업병보조금, 출산 또는 입양 시 1회 보조금, 노동능력감소로 인한 보조금, 정년퇴직 1회 및 매월 보조금, 퇴직보조금, 노동법의 규정에 따른 실직보조금, 사회보험납부에 따른 기타 보조금, 사회폐해해결보조금 iii) 각종 형식의 사례금 iv) 경영협회, 관리회의, 조사위원회, 각종 조직 참가로부터 얻은 수입 v) 화폐 또는 다른 수단으로 받은 세금납부대상이 되는 기타 이익 vi) 국가가 수여한 칭호에 따른 부상을 제외한 상금, 국가가 주

는 상에 따른 상금,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인정을 받은 기술개선 및 발명에 관한 상금, 관할권을 가진 국가기관에 대한 법률위반행위의 적발 및 신고에 관한 상금 ③ 자본투자로부터 얻은 수입으로써 i) 대출이자 ii) 주식소득 iii) 정부채권이자로부터 얻은 수입을 제외한 기타 각종 형식의 자본투자로부터 얻은 수입 ④ 자본양도로부터 얻은 이익으로써 i) 각종 경제조직의 자본양도로부터 얻은 수입 ii) 증권양도로부터 얻은 수입 iii) 기타 각종 형식의 자본양도로부터 얻은 수입 ⑤ 부동산양도로부터 얻은 수입으로써 i) 토지사용권 및 토지관련재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수입 ii) 주택소유권 또는 사용권 양도로부터 얻은 수입 iii) 토지임대 및 해상임대권 양도로부터 얻은 수입 iv) 부동산양도로부터 얻은 기타 수입 ⑥ 당첨으로부터 얻은 수입으로써 i) 복권당첨 ii) 각종 판촉행사당첨 iii) 내기 및 카지노 당첨 iv) 상품이 걸린 각종 놀이 및 시합, 기타 형식의 당첨 ⑦ 판권으로부터 얻은 수입으로써 i) 지적소유권의 각종 대상에 대한 사용권 이전 및 양도로부터 얻은 수입 ii) 기술이전으로부터의 수입 ⑧ 상거래권 임대로부터 얻은 수입 ⑨ 각종 경제조직 및 경영기관의 증권·자본 및 소유등록 또는 사용등록을 해야 하는 부동산과 기타 재산의 상속으로부터 얻은 수입 ⑩ 각종 경제조직 및 경영기관의 증권·자본 및 소유등록 또는 사용등록을 해야 하는 부동산과 기타 재산의 상여로부터 얻은 수입 등이 그 내용이다.

(7) 세금관리법 (78/2006/QH11)

세금관리법 제10조에서 재무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금관리법은 각종 세금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세금관리 및 세금징수 관리기관에 의해 국가예산에 속하는 기타 징수 항목들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으로 납세자는 ① 세금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납세하는 조직 및 개인, 가정 ②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세금관리 및 세금징수 관리기관에 의해 국가 예산에 속한 기타 징수 항목들을 납부하는 조직 및 가정, 개인 ③ 세금공제 조직 및 개인,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금에 관한 절차를 수행하는 조직 및 개인이며, 세금관리기관은 ① 국세청, 지방 국세청, 세무관서 포함 세금기관 ② 총세관, 지방세관, 세관지국을 포함한 세관기관이다.

세금관리내용으로는 ① 세금신고, 보고, 납부, 확정 ② 환급, 면세, 감세 수속 ③ 세금, 벌금 탕감 ④ 납세자 정보 관리 ⑤ 세금 조사, 감사 ⑥ 세금에 관한 행정결정 시행 강제 ⑦ 조세법 위반 처리 ⑧ 세금 관련 고소, 고발 해결 등이다.

(8) 증권법 (70/2006/QH11)

재무부는 증권 및 증권시장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 (제7조 제2항). 증권법은 증권 공모, 상장, 거래, 영업, 증권투자, 증권 서비스 및 증권시장에 관한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베트남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며, 증권투자에 참가한 베트남과 외국의 조직 및 개인과 증권 및 증권시장 활동과 관련이 있는 기타 조직 및 개인이다. 증권 공모, 상장, 거래, 영업, 증권투자, 증권 서비스 및 증권시장에 관한 활동은 이 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본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는 국제통합 로드맵과 국제서약에 부합하는 국제조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증권활동 및 증권시장의 원칙으로 ① 조직 및 개인의 증권 매도, 매수, 영업 및 서비스의 자유권 존중 ② 공평성, 공개성, 투명성 ③ 투자자

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 ④ 위험을 스스로 책임 ⑤ 법률 규정 준수 등이 있다.

국가는 개발투자를 위한 중장기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 각 경제구성원 및 각 인민계층에 속한 조직 및 개인이 증권시장에 투자하고 활동하도록 편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증권시장이 공평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 감찰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는 증권시장의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증권분야의 인력을 개발하며, 증권 및 증권시장에 관한 홍보, 지식보급을 위한 투자정책을 수립한다.

(9)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48/2005/QH11)

재무부의 책임은 제68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계획투자부에서 살펴보았다.

(10) 수출입세법 (45/2005/QH11)

재무부장관은 수출입상품에 대한 수출입세 징수 및 관리를 지도할 책임을 진다(제26조 제1항). 수출입세법은 베트남 국경 및 세관을 통과하는 수출입품에 대한 수출입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경주민의 상품매매・교환과 기타 상품 매매・교환은 상품수출입으로 간주된다.

베트남 국경, 세관을 통한 수출입 상품 및 국내시장에서 세관구역으로, 세관구역에서 국내시장으로 옮겨지는 상품은 과세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상품은 비과세대상이다. ① 국경을 통과하여 운반하는 상품, 베트남 국경, 세관을 통과로로 이용한 상품, 정부의 규정에 따른 경우의 상품 ② 자선원조물품, 돌려주지 않는 원조물품 ③ 수출세관구역

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상품, 외국으로부터 세관구역으로 수입되어 세관구역에서만 사용되는 상품, 이 세관구역에서 다른 세관구역으로 이동되는 상품 ④ 수출시 국가의 자원세에 포함된 원유가스의 일부분인 상품

(11) 국가검산(檢算)법 (37/2005/QH11)

재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18/2008/ND-CP) 제2조 제12항에서 재무부가 검산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검산법은 국가검산조직과 법리적 위치, 기능, 임무, 권한 및 국가검산원의 권한과 임무, 검산 받는 단위와 관련 있는 개인, 조직, 국가검산활동과 활동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검산 받는 단체, 국가검산, 국가검산활동과 관련된 기타 개인과 조직이며 국가검산활동은 국가재산, 예산의 사용, 관리에 대한 국가의 감찰, 감시 서비스 및 법률 위반 행위 방지, 낭비·부패방지, 절약 실시에 공헌하고 국가의 재산과 예산 사용 효과 향상을 위한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12) 회계법 (03/2003/QH11)

재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18/2008/ND-CP) 제2조 제12항에서 재무부가 회계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법은 회계업무 내용, 회계 기관조직, 회계사, 회계업무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① 국가예산경비를 사용하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조직 ② 국가예산경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단위, 조직 ③ 베트남 법률에 따라 활동, 성립하는 경제구성원에 속한 기업,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대표지사 및 사무실 ④ 협동조합 ⑤ 사업연합체, 개인사

업자 ⑥ 회계사, 기타 회계 관련자이며,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대표사무실, 개인사업자와 사업연합체의 경우, 정부는 이 법의 기본원칙들에 따라 회계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13) 국가예산법 (01/2002/QH11)

재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18/2008/ND-CP) 제2조 제5항에서 재무부가 국가예산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예산은 국가의 전체 수입, 지출을 말하며,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국가의 임무 및 기능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집행된다.

국가예산수입은 세금, 요금 및 국가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수입과 각 조직 및 개인의 모금과 원조 및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항목을 포함한다. 국가예산지출은 경제-사회발전, 국방, 안보 보장, 국가기구의 활동 보장을 위한 지출 및 국가의 채무청산 비용, 그리고 원조비용과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항목을 포함한다.

국가예산은 민주, 공개, 명백, 분배, 분담관리의 원칙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갖고 통일적으로 관리된다. 국회는 국가예산계획안을 결정하고, 중앙에 예산을 분배하며, 국가예산결산을 비준한다.

(14) 보험사업법 (24/2000/QH10)

재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18/2008/ND-CP) 제2조 제14항에서 재무부가 보험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업법은 보험사업 활동과 조직을 조정하고, 보험에 참여하는 개인 및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내의 보험경영활동과 조직은 보험사업법의 규정 및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베트남사회주

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 보험사업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보험에 참여하는 자는 만약 그 조약이 베트남 법률에 반하지 않는다면, 합의하에 국제 관습을 적용할 수 있다.

(15) 국영은행법 (06/1997/QHX)

재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18/2008/ND-CP) 제2조 제15항에서 재무부가 각종 재정조직 및 재정서비스에 관한 재정관리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국영은행(이하 국영은행이라 한다)은 정부기관으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중앙은행으로써 은행활동과 통화에 관한 국가관리 기능을 실현한다.

국영은행의 활동은 통화안정, 은행 및 각종 신용조직의 안정적인 활동보장에 기여, 사회주의 노선에 따른 경제-사회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영은행은 법인이며, 국가소유의 법정자본을 가지고 있다.

국가통화정책은 국가의 주요 경제-사회 정책의 일부분으로, 통화가치 안정, 물가상승 억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국방, 안보 보장, 인민생활향상을 목표로 한다.

국가통화정책 결정 및 실시로써 국회는 국가예산균형 및 경제성장 수준의 상관관계 속에서 연간 물가상승수준 및 국가통화정책실시를 결정하고 감찰하고, 국가주석은 재정, 통화 및 은행활동에 관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이름으로 국제협약 및 국제조약을 협상, 체결, 참가, 비준함에 있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임무를 시행한다. 정부는 국가통화정책 계획안 및 연간 예상물가상승 수준을 설정하여 국회가 결정하도록 보고하고 국가통화정책을 실시하며, 연간

유통되는 통화량의 보충 및 이 통화량의 사용목적을 결정하고, 국회 상무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기타 구체적 정책과 해결방법을 결정한다.

(16) 금융기관법 (07/1997/QHX)

재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18/2008/ND-CP) 제2조 제15항에서 재무부가 각종 재정조직 및 재정서비스에 관한 재정관리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법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기타 조직들의 은행활동과 금융기관의 활동, 조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각종 금융기관의 조직 및 활동과 기타 각종 조직의 은행활동은 금융기관법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기타 조직의 은행활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토지사용권양도세법 (35-L/CTN)

재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18/2008/ND-CP) 제2조 제6항에서 재무부가 국가예산에 대한 세금, 경비 및 기타 수입 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 및 건축물이 세워진 토지를 포함한 토지 사용권을 가진 조직, 가정, 개인은 법률규정에 따른 사용권 양도시 토지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①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가 조직, 가정, 개인이 토지를 사용하도록 부여한 경우 ② 조직, 가정, 개인이 토지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또는 국가에 법률규정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 ③ 법률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④ 가족 구성원 간의 토지사용권 양도, 이혼시 부부의 토지사용권의 이전 ⑤ 수입, 소득세 납부대상에 속하는 부동산 사업 등록 개인 및 조직 ⑥ 수입, 소득세

납부대상에 속하는 토지대여 조직, 가정 및 개인의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국가기관, 정치, 사회조직, 인민무장단체 및 모든 공민은 토지사용권양도세법 시행시 세무기관이나 세무공무원을 도울 책임이 있다.

(18) 농업용토지사용세법 (23-L/CTN)

재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18/2008/ND-CP) 제2조 제6항에서 재무부가 국가예산에 대한 세금, 경비 및 기타 수입 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생산시 토지를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모두 농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농지사용권을 부여받은 대상은 농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농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농지사용세 부과토지는 재배지, 수산물 양식 토지, 삼림재배지의 경우와 같이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이다. 그러나 농지사용세 납부 대상 토지가 아니나, 법률규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경우로써 자연삼림, 자연목초지, 주거토지, 전용토지 등이 있다.

7. 산업무역부

산업무역부가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화학물질법, 무역법, 경쟁법, 전력법, 석유가스법 등이 있다.

(1) 화학물질법 (06/2007/QH12)

산업무역부는 화학물질활동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 (제62조 제2항). 화학물질법은 화학물질활동 및 활동시의 안전, 화학물질활동에 참여하는 조직・개인의 권리와 의무, 화학물질에 관한 국가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법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영토 내에서 화학물질활동에 참가하는 조직・개인 및 화학물질활동과 관련된 조직・개인에 대해 적용된다. 화학물질활동은 화학물질법 규정 및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과 관련된 활동은 복사 및 원자력에너지안전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화학물질법의 규정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활동과 관련된 국제조약의 규정과 다를 경우 그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무역법 (36/2005/QH11)

산업무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89/2008/ND-CP) 제2조 제21항에서 산업무역부가 무역촉진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이란 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내에서 실시되는 무역활동 ② 쌍방이 이 법이나 외국법 적용 선택에 합의하거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외부에서 실시되는 무역활동 ③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실시하는 일방이 이 법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영토 내에서 실시된 무역업자와의 교역에서 일방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경쟁법 (27/2004/QH11)

산업무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89/2008/ND-CP) 제2조 제20항에서 산업무역부가 경쟁관리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쟁법은 경쟁제한 행위, 건전하지 않은 경쟁행위, 경쟁해결 수속・순서, 경쟁에 관한 법률위반 처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경쟁법은 생산, 상품공급, 공익서비스 기업, 국가독점영역・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을 포함하는 경영조직과 개인 및 베트남 기업협회에 적용된다.

(4) 전력법 (28/2004/QH11)

산업무역부는 정부에 앞서 전력활동 및 전기사용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가진다(제65조 제2항). 전력법은 전력발전 계획 및 투자, 전기절약, 전력시장, 전력활동을 하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조직 또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 전력사업 및 전기설비 보호, 전기안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력법은 베트남에서 전력활동을 하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조직이나 개인, 또는 전력과 관련된 기타 활동을 하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적용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중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석유가스법 (18-L/CTN)

산업무역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89/2008/ND-CP) 제2조 제12항에서 산업무역부가 원유가스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본토, 섬, 내륙하천, 해양, 경제특권지원, 대륙붕에 속하는 토지 지하의 석유가스자원 전부는 인민의 소유이며, 국가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된다.

국가는 베트남과 외국의 사무소 및 개인이 베트남의 국가 안보, 영토, 주권, 독립 존중과 베트남 법률 준수의 기반 위에서 석유가스 활동을 위한 자본 및 기술을 투자하도록 권장하며, 베트남에서 석유가

스 활동을 수행하는 베트남 및 외국의 개인, 사무소들의 합법적 권리, 재산, 투자소유권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농업농촌개발부

농업농촌개발부가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제방 및 보강에 관한 법, 지적재산권법, 산림보호 및 발전법, 수산물법 등이 있다.

(1) 제방 및 보강에 관한 법 (79/2006/QH11)

농업농촌개발부는 전국범위 내에서 제방이 있는 강의 홍수방지계획 수립 및 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제11조 제1항). 제방 및 보강에 관한 법은 제방이 있는 강의 홍수 방지 및 예방계획, 제방 사용·보호·관리·견고화·향상·보수·건설투자, 제방 보강계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방 및 보강에 관한 법은 베트남 영토에서의 제방활동 및 제방 관련 활동을 하는 내국인과 조직, 기관 및 외국인과 조직에 대해 적용된다.

(2) 지적재산권법[40] (50/2005/QH11)

농업농촌개발부는 그 임무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변종식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한다(제11조 제2항). 지적재산권법은 저작권, 저작 관련 권리, 산업재산권, 변종식물에 관한 권리, 및 이러한 권리들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대상은 문화,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을 포함하고, 저작 관련 권리는 공연, 음향 기록, 비디오 기록, 방송프로그램, 암호화

40) 지적재산권법의 번역본은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베트남편)□□, 2006, 참조.

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위성 신호를 포함한다. 산업 재산권의 대상은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 직접회로의 배치설계, 영업비밀, 상호 및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다. 변종 식물에 대한 권리의 대상은 변종 식물 및 그 번식 식물이다.

지적재산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민법적 사항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과 기타 법의 규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법이 적용된다.

(3) 산림보호 및 발전법 (29/2004/QH11)

농업농촌개발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2008/ND-CP) 제2조 제6항에서 농업농촌개발부가 임업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보호 및 발전법은 삼림사용, 개발, 보호, 관리 및 삼림주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산림보호 및 발전법은 국내의 개인, 가정, 조직, 국가기관, 외국거주 베트남인, 베트남에서의 삼림의 개발과 보호와 관련 있는 외국 개인, 조직에 대해 적용되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약에 따라 적용한다.

(4) 수산물법 (17/2003/QH11)

농업농촌개발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2008/ND-CP) 제2조 제8항에서 농업농촌개발부가 수산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산물법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본토, 섬, 내륙하천, 영해, 경제특수지역, 대륙붕에서의 베트남 개인, 조직, 외국 개인, 조직의 수산활동에 대해 적용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 수산물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을 적용한다.

수산이익은 인민에 속한 재산이며, 국가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교통운송부

교통운송부가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도로교통법, 민간항공법, 항해법, 철도법, 국내수로교통법 등이 있다.

(1) 도로교통법 (23/2008/QH12)

교통운송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51/2008/ND-CP) 제2조 제5항에서 교통운송부가 도로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규칙, 도로교통인프라구조,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사람 및 수단, 도로운송 및 도로교통에 관한 국가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내에서 도로교통과 관련된 조직 및 개인에 대해 적용된다.

(2) 민간항공법 (66/2006/QH11)

교통운송부는 민간항공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9조 제2항). 민간항공법은 항공기, 공항, 승무원, 항공활동, 항공운반, 항공안전, 민사책임, 일반 항공활동 및 기타 민간 활동과 관련된 활동 등을 포함한 민간항공활동에 관하여 규정하며, 군사항공기, 세관, 경찰 전용 항공기, 민간목적에 사용되거나 기타 베트남 민간항공법이 규정하는 기타 상황을 제외한 국가 공무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기타 항공기를 포함한 공무항공기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는다.

민간항공활동에서 발생하는 사회관계들에 대해서는 민간항공법이 조정할 수 없으며, 상응하는 베트남의 법률규정들을 적용해야 한다. 민간항공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규정 사이에 민간항공활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민간항공법의 법률규정이 적용된다.

(3) 항해법 (40/2005/QH11)

교통운송부는 항해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8조 제2항). 항해법은 선박, 항구, 해상운반, 항해안전, 환경오염과 기타 경제, 문화, 사회, 체육, 화물, 과학연구 목적을 위한 선박사용과 관련된 각 활동들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항해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선박, 화물선박, 어선, 국내 수상수단, 비행기, 군사항(港), 어항, 국내 수상부두는 이 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베트남 항해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항해활동과 관련된 동일 내용에 다른 사실이 있는 경우, 항해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선박에 대한 소유권, 선원근로계약, 승객, 화물운반계약, 구호선 선주와 구호선 승무원 사이의 구호금 분배, 바다에 침몰한 재산 발굴, 선박이 바다에 있을 때 일어나는 기타 부수적인 일 등과 관련이 있는 법률관계가 있는 상황에는 선박이 게양하고 있는 국기의 국가 법률이 적용되며, 공동의 손실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이 발생한 직후 정박한 곳의 법률을 적용한다. 충돌재난, 구호금, 침몰한 재산 발굴이 선박내부나 어떤 국가의 영해에서 발생하는 경우 및 관련된 법률관계가 발생한 경우 그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충돌재난이나 구호가 바다에서 발생한 경우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발생한 경우, 먼저 분쟁을 해결한 법정 및 재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같은 국적의 선박 사이에 다른 국적의 영해 및 선박내부, 바다에서 충돌재

난이 발생한 경우, 선박이 게양한 국기의 국가 법률을 적용한다. 화물 운반 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발생한 경우, 계약에 따라 화물이 귀속되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4) 철도법 (35/2005/QH11)

교통운송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51/2008/ND-CP) 제2조 제5항에서 교통운송부가 철도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도법은 철도 인프라 보호・건설・투자 계획 및 철도교통방편, 철도활동과 관련있는 개인, 조직의 의무와 권리, 철도교통의 안전, 질서보장과 교통신호・규칙, 철도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5) 국내수로교통법 (23/2004/QH11)

교통운송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51/2008/ND-CP) 제2조 제5항에서 교통운송부가 내륙수상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수로교통법은 국내수로교통 활동 및 국내수로교통 운반, 교통참가자, 방편, 인프라와 더불어 국내수로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각종 조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0. 건설부

건설부가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부동산사업법, 주택법,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건설법 등이 있다.

(1) 부동산사업법 (63/2006/QH11)

건설부는 부동산 사업활동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 (제13조 제2항). 부동산사업법은 부동산 사업활동, 부동산 사업활동을

하는 조직, 개인의 권리와 의무 및 부동산 사업에 관련이 있는 부동산 거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사업활동 및 부동산 사업활동 관리는 이 법의 규정 및 관련이 있는 법률의 기타 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부동산 사업활동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인 국제조약에 부동산사업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 사업활동을 하는 조직 및 개인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법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계약을 통해 부동산 사업활동에 참가하는 각 측의 권리 및 이익을 존중함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사업에 들어가는 부동산은 부동산사업법의 규정 및 관련이 있는 법률의 기타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 부동산 사업활동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2) 주택법 (56/2005/QH11)

건설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7/2008/ND-CP) 제2조 제9항에서 건설부가가 주택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소유, 주택개발, 주택 사용관리, 거래 및 주택에 관한 국가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소유, 주택개발, 사용관리, 주택에 관한 거래에 관련이 있는 조직, 개인 및 주택에 관한 국가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주택소유, 주택개발, 주택 사용관리, 주택에 관한 거래 및 주택에 관한 국가관리에 관련이 있는 법률과 다른 점이 있는 경우 주택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민은 법률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주택 건축을 통해 혹은 주택을 임차, 대여, 타인 주택 임시거주를 통해 거주지를 가질 권리가 있다. 합법적으로 주택을 건축한 사람은 그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

국가는 소유주의 주택소유권을 공인하고 보호해야 하며, 조직, 개인의 소유에 속한 주택은 국유화 되지 않는다. 국방, 안보 이유 및 국가 이익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하여 국가가 강제 매입, 사용하는 경우 국가는 청산시점 시장가격에 따라 주택소유주에게 배상하고 그들이 다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국가는 계획, 토지, 재정, 신용에 관한, 기술 및 새로운 건설자재 응용 연구에 관한, 주택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정책을 채택하고 조직, 개인이 법률 규정에 따라 주택 개발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 수속, 절차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실현해야 한다.

국가는 각 경제구성원에 속한 조직, 개인이 저소득층 사람 및 사회 각 주민계층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택 판매, 임대, 임대매입하기 위한 주택 개발 투자에 참가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국가는 이동, 교대하는 간부, 공무원 수요에 이바지하기 위한 주택 임대, 임대 매입을 위해 국가 소유에 속한 주택 발전기금에 주동적으로 투자를 하며 주택개선 사회정책에 속한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3)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48/2005/QH11)

건설부의 책임은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계획투자부에서 살펴보았다.

(4) 건설법 (16/2003/QH11)

건설부는 건설에 관한 국가관리 통일 실현에서 책임을 진다(제112조 제2항). 건설법은 건설 활동에 관해 공정 건설 투자 및 건설 활동을 하는 조직,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건설 활동을 하는 조직, 개인은 다음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종합계획, 설계에 따라 공정 건설을 보장, 공정 미관 보장, 경관 및 환경보호, 개별지방의 자연조건, 문화, 사회 특성에 부합시키고, 경제-사회 발전을 국방, 안보와 결합 ② 건설기준, 건설표준 준수 ③ 공정의 품질, 진도, 안전, 인간생명 및 재산보호, 화재예방, 환경위생 보장 ④ 개별 공정, 기술인프라 공정에서 건설 진도 균형 보장 ⑤ 건설에서 절약, 효과를 제고하고 낭비, 손실 및 기타 소극적인 현상의 배격을 보장 등이다.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민족회의, 국회의 각 위원회, 국회의원, 각급 인민의회, 인민의회상무위원회, 인민의회의 각위원회, 인민의회 의원은 자신의 임무, 권한 범위 내에서 건설에 관한 법률실현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 베트남 조국전선 및 회원 조직은 자신의 임무, 권한 범위 내에서 인민으로 하여금 건설에 관한 법률을 실현하고 감독하도록 선전, 동원할 책임이 있다.

11. 노동보훈사회부

노동보훈사회부가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계약에 따라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에 관한 법, 성평등법, 직업교육법, 사회보험법,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아동 보호・양육・교육에 관한 법, 노동법 등이 있다.

(1) 계약에 따른 해외근무 베트남 노동자에 관한 법 (72/2006/QH11)

노동보훈사회부는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70조 제2항). 계약에 따른 해외근무 베트남 노동자에 관한 법은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의

활동 및 계약에 따른 해외근무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에 따라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경영조직, 관련 개인, 조직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계약에 따른 해외근무 베트남 노동자에 관한 법은 ① 계약에 따라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조직 및 기업 ② 해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③ 계약에 따른 외국 근로자의 보증인 ④ 계약에 따른 노동자의 해외 근로와 관련된 개인 및 조직에 대해 적용된다.

(2) 성평등법 (73/2006/QH11)

노동보훈사회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86/2007/ND-CP) 제2조 제15항에서 노동보훈사회부가 성평등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평등법은 사회・가정생활영역에 있어서의 성평등원칙, 성평등 보장방법, 성평등실현에 관한 기관・조직・가정・개인의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41]

성평등법은 국가기관,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정치사회-직업조직, 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 경제조직, 사업단위, 인민무장단위, 가정 및 베트남공민, 베트남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관・조직, 국제조직,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성평등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41) 유니세프, 세계아동백서, 2007에 따르면 베트남은 성평등 지수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고, 의료서비스와 교육을 남녀에게 동일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평가됨. 그러나 여성의 가정 내 폭력(가정폭력 방지법이 제정되어 있음), 인신매매, 매춘강요 등 성불평등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음.(출처 : Thanh Nien 전자판 (http://www.thanhniennews.com/politics/?catid=1&newsid=23112), 2006. 12. 11.)

(3) 직업교육법 (76/2006/QH11)

노동보훈사회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86/2007/ND-CP) 제2조 제7항에서 노동보훈사회부가 직업교육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법은 직업교육기관의 활동 및 조직과 직업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법은 베트남에서 직업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조직과 개인, 직업교육활동과 관련된 조직과 개인에 적용되며, 직업교육과 직업교육 관리활동은 직업교육법의 규정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사회보험법 (71/2006/QH11)

노동보훈사회부는 사회보험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8조 제2항).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 정책, 제도 및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개인, 조직, 기관,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사회보험조직, 사회보험기금, 사회보험 실시절차와 사회보험에 관한 국가관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예금보험 및 사업적 성격을 띠는 각종 보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은 ① 강제사회보험 가입대상 노동자는 베트남 공민이며, 다음을 포함한다. ⅰ) 정규적 근로자 및 3개월 이상 기한의 노동계약에 따른 근로자 ii) 간부, 공무원 iii) 국방공무원, 경찰공무원 iv) 장교, 직업 인민군, 직업 장교・하사관, 인민경찰 기술전문 장교・하사관, 인민군대, 인민경찰과 같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급료를 받는 자 v) 임시근무 하사관, 인민군 병사와 인민경찰 하사관,

전사(戰士) vi) 외국에서 임시 근무 중이거나, 이전에 강제사회보험에 가입했던 자 ②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인민무장단위 등 강제사회보험에 가입된 (노동)사용자,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정치사회-기업조직, 사회-기업조직, 기타 사회조직, 베트남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조직, 외국사무소, 기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기타 조직과 개인 ③ 실업보험에 가입하는 노동자는 노동계약 혹은 임시계약,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계약에 따라 (노동)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노동자이다. ④ 실업보험에 가입하는 (노동)사용자로써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로 ⑤ 민간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자로써 ①에 속하지 않는 연령의 베트남 공민 ⑥ 사회보험과 관련된 기관, 조직 및 개인이다.

(5)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48/2005/QH11)

제73조에서 노동보훈사회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의 내용은 계획투자부에서 살펴보았다.

(6) 아동 보호・양육・교육에 관한 법 (25/2004/QH11)

노동보훈사회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86/2007/ND-CP) 제2조 제13항에서 노동보훈사회부가 아동 보호 및 양육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16세 이하의 베트남 공민이며, 아동 보호・양육・교육에 관한 법은 아동의 기본권과 의무 및 가정, 국가, 아동 보호, 교육 사업을 하는 사회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양육・교육에 관한 법은 국가기관,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정치-사회-기업 조직, 사회조직, 사회-기업조직, 경제조직, 사업단위, 인민무장단위, 가정, 베트남 공민에 대해 적용되며, 베트남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사무소,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7) 노동법 (35-L/CTN)

노동법은 임금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노동관계 및 기타 노동관계와 관련된 제반 사회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에 의거 이들을 고용하는 단체, 개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한 노동법은 직업훈련생, 가내근로자 및 기타 노동법에 규정된 다른 형태의 노동에도 적용된다.

베트남 내 외국기업이나 외국사무소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베트남인과 베트남 내에서의 베트남인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을 위해 근무하는 외국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법과 기타 베트남의 법률규정이 적용된다.

12.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가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첨단기술법, 원자력에너지법, 상품품질법, 기술이전법, 기술표준법, 지적재산권법, 과학기술법 등이 있다.

(1) 첨단기술법 (21/2008/QH12)

과학기술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28/2008/ND-CP) 제2조 제7항에서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활동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첨단기술법은 첨단기술 활동 및 정책, 장려방법, 첨단기술 활동촉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 조직 및 개

인, 해외거주 베트남인, 베트남 내에서 첨단기술 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사무소 및 개인에 대해 적용된다.

(2) 원자력에너지법 (18/2008/QH12)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에너지영역 내에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7조 제2항). 원자력에너지법은 원자력에너지영역에서의 활동들과 그 활동들에 대한 안전 및 안전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조직 및 개인, 해외거주 베트남인, 외국사무소 및 개인, 베트남 내에서 원자력에너지영역에 속한 활동들을 진행하는 국제조직에 대해 적용된다.

(3) 상품품질법 (05/2007/QH12)

과학기술부는 상품품질에 관한 통일적인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68조 제2항). 상품품질법은 상품을 생산・경영하는 조직・개인과 상품품질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조직・개인의 권리와 의무 및 상품품질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상품을 생산・경영하는 조직 및 개인과 상품품질관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해 적용된다.

(4) 기술이전법 (80/2006/QH11)

과학기술부는 기술이전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52조 제1항). 기술이전법은 베트남 내에서의 기술이전 및 베트남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베트남으로의 기술이전, 기술이전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관리기관의 심사권, 기술이전 활동의 촉진・장려하는 방침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활동에 참여하는 베트남의 개인, 조직, 해외거주 베트남인 및 외국의 개

인, 조직에 적용된다.

(5) 기술표준법 (68/2006/QH11)

과학기술부는 기술표준영역 내 활동에 관한 국가관리를 통일적으로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59조 제1항). 기술표준법은 표준 및 기술표준의 수립・공포・적용에 대해 규정하고 표준 및 기술표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평가하며, 베트남에서 표준 및 기술표준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베트남 및 외국의 조직과 개인, 해외거주 베트남인에 대해 적용된다.

(6) 지적재산권법 (50/2005/QH11)

과학기술부는 문화통신부(현 정보통신부), 농업농촌개발부와 협력하여 지적소유에 관한 국가관리 및 공업소유권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11조 제2항). 법률의 내용은 농업농촌개발부에서 살펴보았다.

(7) 과학기술법 (21/2000/QH10)

과학기술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28/2008/ND-CP) 제2조 제7항에서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활동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법은 과학기술 조직, 과학기술활동을 하는 개인 및 각 과학 기술 활동 실시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법상의 과학기술활동은 생산역량 발전 및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현대적, 진보적 과학기술 형성, 천연자원의 합리적 사용, 환경보호, 공업화 및 현대화의 촉진, 선진문화 및 특생이 풍부한 민족문화의 건설, 새 베트남인 건설, 경제-사회의 빠르고 견고한 발전에 공헌, 인민의 삶의 질의 향상, 국방, 안보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활동은 다음과 같은 임무가 있다. ①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호치민 사상의 이론 발전과 창작운용, 사회주의와 베트남사회주의 이론 건설, 경제-사회발전에 관한 법률, 정책 노선을 정하기 위한 과학적 논거 건설, 선진교육 건설, 새 베트남인 건설에 공헌, 민족문화의 전통가치 발휘와 계승, 인류문화의 정수 흡수, 세계의 과학, 문화에 공헌 임무 ② 선진기술, 고급기술, 선진관리 방법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과학능력 향상, 천연자원의 합리적 사용, 환경보호, 인민의 건강보호, 천재지변의 적시 예보, 예방, 방지, 효과적인 극복 ③ 신기술의 효과적인 응용을 위한 세계 과학기술 성취의 수용, 경쟁력 높은 신상품 창조, 세계수준에 근접, 선진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베트남 과학기술 개발, 현대 공업분야의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초건설, 과학기술 성취의 보편화 촉진, 생활과 생산에 응용이 그 내용이다.

과학기술활동시 정부는 ① 과학기술활동은 경제-사회발전 임무, 국방, 안보 보장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베트남의 실정에 부합하는 세계 과학기술 성취의 선택적 수용과 함께 과학기술에 대한 내적 능력 건설 및 발휘, 자연과학, 기술과학과 인민사회과학과의 긴밀한 결합, 기술시장 개발, 경영, 생산활동, 교육, 양상과 긴밀한 기술발전과 연구개발 ③ 모든 조직, 개인의 창조적인 노동 잠재력 발휘 ④ 성실, 객관, 직업의식, 창작의 자유, 민주, 자주, 책임의식의 강조 등의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13. 문화스포츠관광부

문화스포츠관광부가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가정폭력방지법, 스포츠체육법, 영화법, 관광법, 문화유산법, 혼인 및 가정에 관한 법 등이 있다.

(1) 가정폭력방지법 (02/2007/QH12)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35조 제2항).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지원, 가정폭력방지에 있어서 개인・가정・기관・조직의 책임,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법률위반처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은 가족 내 다른 구성원에 대한 신체・정신・경제에 관해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가족구성원의 고의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학대, 혹사, 폭행 또는 기타 건강・생명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행위 ② 언어폭력 또는 기타 명예・인격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행위 ③ 고립, 축출행위 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심리적인 압박을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④ 가족관계, 즉 조부모와 손자 간, 부모자식 간, 남편아내 간, 형제자매 간에 권리 및 의무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 ⑤ 성관계 강요 ⑥ 조혼강요, 결혼 및 이혼 강요 또는 자발적이고 진보적인 혼인 방해 ⑦ 약탈, 손상, 파괴 또는 기타 가족 내 다른 구성원의 개인재산 또는 가족구성원의 공동재산을 망가뜨리는 고의적인 행위 ⑧ 가족구성원에 대한 과다한 노동 및 능력이상의 재산기여 강요, 재정적인 부속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가족구성원의 수입 조사 ⑨ 가족구성원에게 가출을 강제하는 불법행위 등이며, 위에서 규정한 폭력행위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가족구성원 또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관계로 살고 있는 남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가정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방지 원칙은 ①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가정・자문・화해에 관한 선전 및 교육업무에 주의를 기울여 베트남 민족의 아름다운 문화전통, 풍속, 풍습에 부합하도록 각종 가정폭력방

지방법을 통일적으로 결합하여 실시 ② 가정폭력행위는 법률규정에 따라 적시에 발견・저지・처리 ③ 가정폭력피해자는 그들의 상황 및 국가의 경제-사회조건에 맞게 적시에 도움과 보호 ④ 아동・노인・장애인・여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우선 보호 ⑤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개인・가정・공동・기관・조직의 역할 및 책임을 발휘가 그 내용이다.

(2) 스포츠체육법 (77/2006/QH11)

문화스포츠관광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85/2007/ND-CP) 제2조 제15항 및 제16항에서 문화스포츠관광부가 스포츠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체육법은 체육・스포츠 조직 및 활동과 체육・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조직・개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체육・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조직・개인, 체육・스포츠 활동과 관련이 있는 조직・개인에 대해 적용된다.

체육・스포츠 활동 및 체육・스포츠 활동의 관리는 이 법의 규정과 기타 관련이 있는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영화법 (62/2006/QH11)

문화통신부[42]는 정부를 도와 영화에 관한 국가관리를 통일할 책임을 진다(제9조 제2항). 영화법은 영화활동과 영화조직 및 영화활동에 참가하는 개인,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

42) 현재 정부조직법상 문화통신부는 문화스포츠관광부와 정보통신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영화법의 소관부처는 문화스포츠관광부이다.

남에서 영화활동에 참가하는 개인, 조직 및 영화활동과 관련된 개인, 조직에 적용된다.

영화활동 및 영화활동관리는 이 법의 규정과 기타 관련된 법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광법 (44/2005/QH11)

문화스포츠관광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85/2007/ND-CP) 제2조 제17항 내지 제21항에서 문화스포츠관광부가 스포츠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광법은 관광자원과 관광활동 및 관광객, 관광경영 조직, 개인, 관광과 관련이 있는 활동을 하는 개인,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 조직과 개인, 베트남 영토에서 관광활동을 하는 외국사무소와 개인 및 관광과 관련 있는 활동을 하는 기관, 조직, 개인, 민족공동체에 적용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을 적용하며, 베트남 법률이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관광활동 참여자들은 만약 그 국제 관습이 베트남 법률에 반하지 않는다면 국제관습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5) 문화유산법 (28/2001/QH10)

문화스포츠관광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85/2007/ND-CP) 제2조 제6항에서 문화스포츠관광부가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유산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유산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대대로 전해져 온 역사, 문화, 과학적

가치가 있는 물질적, 정신적 상품인 무형문화유산과 유형문화유산으로 구성된다.

문화유산법은 문화유산 보호활동과 가치발휘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 개인, 조직, 외국 개인, 조직,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에 대해 적용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6) 혼인 및 가정에 관한 법 (22/2000/QH10)

문화스포츠관광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85/2007/ND-CP) 제2조 제14항에서 문화스포츠관광부가 가정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 및 가정에 관한 법은 풍족하고 평등, 진보, 행복, 공고한 가정을 형성하고, 진보적인 혼인 및 가족제도의 보호와 완성, 각 가족구성원의 대처방법을 위한 법률 제정, 가정의 구성원들의 합법적인 이익 및 권리 보호, 베트남 가정의 훌륭한 전통윤리 발휘, 계승에 공헌할 임무가 있으며, 올바른 혼인 및 가족제도를 공고히 하고, 건설하기 위한 공민, 국가, 사회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혼인 및 가정에 관한 법상 기본원칙에는 ① 자발적, 진보적 혼인, 1부 1처제, 남녀평등 ② 각 민족 및 종교에 속한 베트남 공민 간의 혼인, 종교가 다른 사람들 간의 혼인, 베트남 공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은 존중되며, 법률에 의해 보호 받는다. ③ 부부는 가족계획 및 인구정책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 ④ 부모는 자식을 사회에 유익한 시민으로 키울 의무가 있다. 자식은 부모를 존경, 부양할 의무가 있다. 손자는 조부모를 존경, 부양할 의무가 있다. 가족의 각 구성원들은 서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며, 도울 의무가 있다. ⑤ 국가와 사회는 자식들

사이, 아들과 딸 사이, 친자와 입양아 사이, 친자와 재혼자의 자식 사이의 차별대우를 인정하지 않는다. ⑥ 국가와 사회, 가정은 부녀자,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가 부모로서의 고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 등이 있다.

혼인 및 가정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① 국가는 남녀공민이 자발적, 진보적인 가정을 설립하고, 가정이 자신의 충분한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 조성 방법과 정책을 마련한다. 선정을 강화하고,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을 보급한다.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낡은 관습과 풍속을 버리도록 하고, 각 민족의 특색을 나타내는 좋은 관습, 풍속, 전통을 발휘하도록 하는 선전을 한다. 전보적인 혼인 및 가족관계를 형성한다. ② 기관, 조직은 간부, 공무원 및 자체 구성원과 모든 공민들이 가족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임과, 혼인 및 가정에 관해 자문을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가족 내의 충돌을 적시에 조정하고,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인 이익 및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③ 학교는 가정과 협력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혼인 및 가정에 관한 법률의 보급, 선전,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책임이 있다.

14. 보건부

보건부가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의료보험법, 전염병예방법, 조직 및 장기기증에 관한 법, 에이즈예방법, 의약품법 등이 있다.

(1) 의료보험법 (25/2008/QH12)

보건부는 의료보험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진다(제5조 제2항). 의료보험법은 의료보험대상, 부과율, 책임, 부과방식, 의료보험적용범위, 의료보험대상자를 위한 진료 및 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 청

산, 의료보험기금, 의료보험관련 당사자들의 권한 및 책임을 포함한 의료보험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보험과 관련이 있는 국내, 또는 베트남 내 외국사무소 및 개인에 대해 적용된다. 그리고 기업의 형태를 띤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보험의 원칙으로는 ① 의료보험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불행을 분담 ② 의료보험부과율은 임금, 보수, 퇴직금, 보조금의 백분율에 따라, 또는 행정구역 내의 최소임금에 따라 확정 ③ 의료보험적용률은 의료보험에 참여하는 사람의 권리범위 내에서 질병정도나 대상 집단에 따라 결정 ④ 의료보험 진료비 및 치료비는 의료보험기금과 의료보험에 참여하는 사람의 공동지불로 처리 ⑤ 의료보험기금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집중적, 통일적,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 등의 원칙이 있다.

(2) 전염병예방법 (03/2007/QH12)

보건부는 전국범위의 전염병예방업무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6조 제2항). 전염병예방법은 전염병예방과 국경의료검역 및 인체 내 전염병예방작업을 위한 각종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기관・조직・개인 및 베트남 내 해외 기관・조직・개인에 대해 적용된다. 그러나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전염예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염병예방법상 전염병은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분류된다. ① A그룹은 매우 급속하게 넓은 지역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망률이 높거나 아직 발병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특별위험전염병들로 구성된다. A그룹에 속한 전염병에는 소아마비, A-H5N1 인플루엔자, 페스트, 천연두,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 Lassa 또는 Marburg, 서나일강 열병, 황색열병, 콜레라,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염증 및 원인

이 밝혀지지 않은 각종 위험전염병들이 있다. ② B그룹은 급속하게 전염되고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전염병들로 구성된다. B그룹에 속한 전염병에는 Adeno 바이러스에 의한 병,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한 병,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광견병, 백일해, 폐결핵, 인체 내 돼지연쇄구균에 의한 병, Amibe 병, 세균(병원균) 병, 유행성 이하선염, 댕기(Dengue)열, 댕기출혈열, 말라리아, 반점성 열병, 홍역, 수족구병, 탄저병, 수포창, 장티푸스, 파상풍, Rubeon병, 바이러스성 간염, 뇌막염, 바이러스성 뇌염, 황색매독(트레포네머), Rota 바이러스에 의한 설사가 있다. ③ C그룹은 위험성이 적고 급속하게 전염될 가능성이 없는 전염병들로 구성된다. C그룹에 속한 전염병에는 Chlamydia에 의한 병, 매독, 각종 회충에 의한 병, 임질, 전염성 눈병, Candida albicans 종균에 의한 병, Nocardia병, 나병, Cytomegalo 바이러스에 의한 병, Herpes 바이러스에 의한 병, 촌충병, 간흡충병, 폐흡충병, 장흡충병, 쯔쯔가무시, Rickettsia에 의한 열병, Hanta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 Trichomonas에 의한 병, 전염성 피부염, Coxsakie 바이러스에 의한 목・입・심장염, Giardia에 의한 장염, Vibrio Parahaemolyticus에 의한 장염 및 기타 각종 전염병이 있다.

(3) 조직 및 장기기증에 관한 법 (75/2006/QH11)

보건부는 전국범위의 조직 및 장기기증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7조 제2항). 조직 및 장기기증에 관한 법은 조직 및 신체부분 기증・적출・이식과 신체기증, 국가조절센터 및 조직은행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 조직・개인, 해외거주 베트남인, 베트남 내에서 조직 및 장기기증과 관련이 있는 외국사무소・개인에 대해 적용된다. 그러나 수혈 및 골수이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에이즈예방법 (64/2006/QH11)

보건부는 에이즈예방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7조 제2항). 에이즈예방법은 HIV/AIDS 예방, 퇴치에 관한 각종 방법 및 HIV 감염자 지원, 치료, 보호와 HIV/AIDS 예방, 퇴치방법실시 보장조건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내외국 개인 및 조직, 기관들에 대해 적용된다.

HIV 감염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① 사회 공동체에서의 조화로운 삶 ② 건강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③ 문화, 직업 교육, 직업 ④ HIV/AIDS에 관한 비밀 유지 ⑤ 말기 AIDS 조치 중의 치료・진찰 거부 등이다.

HIV 감염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① 다른 사람에게로의 HIV 전염을 예방하는 조치 실행 ② 자신의 HIV 양성 검사 결과를 배우자나 결혼 상대자에게 통지 ③ 항 HIV 약을 통한 치료 규정의 준수 ④ 예이즈예방법의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와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의 준수 등이다.

(5) 의약품법 (34/2005/QH11)

보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88/2007/ND-CP) 제2조 제9항에서 보건부가 약품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법은 의약품사업 및 의약품유통, 등록, 의약품 공급, 의약품 광고, 의약품 임상실험, 중독유발 약품, 향정신성 약품,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구체(前驅體) 물질, 방사선약, 의약품 실험과 품질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내외국 기관, 조직, 개인에 대하여 적용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을 적용한다.

국가는 의약품 분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 ① 의약품 분야를 경제-핵심산업 기술분야의 하나로 발전시키며, 의약품공업 개발을 우선한다. 수출약품, 주요 약품, 수입약품 대체약품, 각종 사회질병 예방 약품, 백신, 약료(藥料)에서 추출한 약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와 약품생산을 위한 선진기술 응용을 계획하며, 한약 생산을 위한 선진기술 응용 프로젝트는 법률 규정에 의해 투자우대혜택을 가진다. ② 내외국 개인과 조직,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신약 생산을 위한 생물학 기술, 조제 기술에 대한 과학연구 권장, 약품제조 원료 생산, 인민의 약품사용 수요와 질병구조에 부합하는 약품에의 투자 ③ 조제 계승, 연구와 동양약품 경험, 현대약학과 동양 약학의 결합 권장, 새로운 약료 사용, 개척, 개발, 약료 수출, 우대정책, 약료생산 원조, 합리적인 천연 약료 개발 실현, 약료 유전자 개발과 저장 보장, 약료로부터의 약품생산의 현대화 ④ 소수민족동포지역, 경제-사회조건이 어려운 지역 등 각 정책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형식으로 약품에 대한 지원 ⑤ 약품을 공급, 분배하는 유통망 개발, 인민의 약품사용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의 충분한 약품 보장 ⑥ 베트남에서의 약품사용, 약품사업, 연구에 있어서 개인, 조직의 합법적인 이익과 권리 보호 등이 내용이다.

15. 내무부

내무부가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간부 및 공무원법, 적십자활동법, 청년법,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경쟁포상법, 정부조직법, 장관회동조직법 등이 있다.

(1) 간부 및 공무원법 (22/2008/QH12)

내무부는 유관기관 및 조직과 협력하여 공무원능력향상시험을 주관한다(제46조 제2항). 간부 및 공무원법은 간부 및 공무원의 선거, 선출, 사용, 관리, 의무, 권한, 공무시행보장조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공무시행시의 원칙으로는 ① 헌법과 법률을 준수 ② 국가의 이익과 조직 및 공민의 합법적인 권한과 이익을 보호 ③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관할권을 행사하고 조사 및 감찰을 시행 ④ 시스템성, 통일성, 연속성, 통찰성, 효과성을 보장 ⑤ 행정등급 및 철저한 협동을 보장 등의 내용이 있다.

(2) 적십자활동법 (11/2008/QH12)

내무부는 적십자활동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30조 제2항). 법률의 내용은 적십자활동법은 적십자활동, 적십자활동의 상징, 적십자활동을 위한 운동・접수・관리・인력사용, 적십자활동에 관한 국제협력, 베트남적십자회, 적십자활동에 있어서 국가기관・조직・개인의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적십자활동에 참여하는 국내 조직・개인, 외국사무소・개인, 국제조직에 대해 적용된다.

적십자활동법상 적십자활동은 긴급구조, 인도적인 지원, 건강관리, 초기구호, 헌혈, 장기기증, 시체기증, 전쟁・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한 미아 찾기 정보조사, 각종 인도적인 활동가치 선전, 재난예방 및 대처에 관한 적십자회 또는 조직과 개인의 협력으로 공동에 의거하여 행해지는 인도적인 활동이다.

적십자활동의 원칙으로는 ① 자원(自願), 비영리 ② 공개, 명백, 올바른 목적과 대상, 적시, 효과 ③ 민족의 자애적 전통에 맞게 활동유형을 구분하지 않음 ④ 적십자 상징사용 ⑤ 베트남법률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적인 활동에 관한 국제조약의 규정준수 등이 있다.

(3) 청년법 (53/2005/QH11)

내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48/2008/ND-CP) 제2조 제20항에서 내무부가 청년업무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년법에서 규정되는 청년은 16세에서 20세까지의 베트남 공민이다. 청년법은 청년의 권리와 의무, 청년에 대한 국가, 가정, 사회의 책임, 청년조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 국가기관,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정치-사회-기업조직, 사회조직, 사회-기업조직, 경제조직, 사업단위, 인민무장단위, 공민에 대해 적용된다. 외국기관, 조직, 개인과 외국정착 베트남인이 베트남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베트남 청년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역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구성원이 국제조약에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을 적용한다.

청년에게는 헌법,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민의 권리, 의무와 이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청년은 민족, 남녀, 사회성분, 신앙, 종교, 문화수준, 직업에 의해 구분되지 않으며, 권리와 의무에 대해 평등하고 모두 존중받는다.

(4)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48/2005/QH11)

제72조에서 내무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의 내용은 계획투자부에서 살펴보았다.

(5) 경쟁포상법 (15/2003/QH11)

내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48/2008/ND-CP) 제2조 제13항에서 내무부가 경쟁 및 포상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쟁포상법은 경쟁, 포상의 절차, 순서, 심사권, 기준, 형

식, 원칙, 범위,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인 단체와 개인, 외국에 있는 베트남인, 외국 단체, 개인에 대하여 적용된다.

(6) 정부조직법 (32/2001/QH10)

내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48/2008/ND-CP) 제2조 제5항에서 내무부가 행정조직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의 집행기관이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정부는 국가의 정치, 경제-사회, 국방, 안보 및 대회 임무 실현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중앙으로부터 하부조직에 이르기까지 국가 기구의 효력을 보장하며, 헌법과 법률 존중 및 집행을 보장하며, 조국 건설과 방위산업에서 인민의 주인권을 발휘하며, 인민의 물질 및 정신적 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킨다. 정부는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국가주석에게 사업을 보고하고 책임을 진다.

정부조직에는 각 부와 부와 동등한 기관을 두며, 국회는 정부수상의 제의에 따라 각 부 및 부와 동등한 기관 신설 또는 폐지를 결정한다. 정부의 구성은 정부수상, 각 부수상, 각 부 장관 및 부와 동등한 기관장이 있으며, 부수상, 장관 및 부와 동급기관장의 수는 국회가 결정한다.

수상은 국가주석의 제의에 따라 국회가 선출 및 해임한다. 수상은 부수상, 장관, 부와 동급기관장의 임명, 해임, 면직을 국회에, 국회가 휴회기간 중에는 국회상무위원회에 제의한다. 국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국가주석은 부수상, 장관, 부와 동등한 기관장을 임명, 해임, 면직시키고 사표를 수리한다. 수상은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수상은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국가주석에게 사업을 보고하고 책임을 진다. 부수상은 수상은 업무분장에 따라 수상을 돕는다. 수상 부재시 수상

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수상 1명이 정부의 사업을 영도한다. 부수상은 부여받은 임무에 관해 수상, 국회에 책임을 진다.

장관과 부의 동급기관장은 1개 부, 부와 동등한 기관을 대표하고 영도하는 사람으로 정부의 일부 사업을 담당한다. 전국범위에서 분야, 부문 국가관리에 관해 또는 부여받은 사업에 관해 수상,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정부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르며 국회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정부는 새로운 국회에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7) 장관회동조직법 (2-LCT/HĐNN7)

내무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48/2008/ND-CP) 제2조 제5항에서 내무부가 행정조직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의 장관회동은 최고국가권력 기관의 최고국가행정 집행기관이다. 장관회동은 각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안보, 국방, 국가의 대외 임무들의 실현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중앙에서부터 기초까지의 국가기관들의 효력을 증강시킨다. 법률집행과 존중을 보장하며 인민단체의 주권을 발휘한다. 사회주의 건설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보호한다. 인민의 문화와 물질적 생활의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장관회동은 모든 국회연도의 첫 번째 기간에 장관에 의해 선출되며, 장관회동의 기타 구성원은 주로 국회의원에서 선출한다.

장관회동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른다. 국회의 임기가 다하면, 장관회동은 새로운 국회가 새로운 장관회동을 선출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무를 다한다.

16. 정보통신부

정부통신부에서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정보기술법, 지적재산권법, 전자거래법,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출판법, 언론법 등이 있다.

(1) 정보기술법 (67/2006/QH11)

문화통신부장관(현 정보통신부장관)[43]은 정보기술과 관련된 부 및 부급기관과 협력 및 지휘할 책임을 진다(제7조 제2항). 정보기술법은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활동,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을 보장하는 방법들,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활동에 참가하는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활동에 참가하는 베트남 조직 및 개인과 외국의 조직 및 개인에 대해 적용한다.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활동과 관련된 같은 문제에 대해서 IT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IT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 국제조약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보기술의 응용과 개발에 관한 국가의 정책으로 ① 경제-사회개발 전략 및 국가의 공업화, 현대화 사업에서 정보기술의 응용과 개발을

43) 현재 정부조직법상 문화통신부는 문화스포츠관광부와 정보통신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정보기술법의 소관부처는 정보통신부이다.

우선한다. ② 경제-사회개발, 대외, 국방, 안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의 응용과 개발활동에 조직 및 개인이 참여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정보기술 산업이 중점 경제 분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고, 국내 및 수출시장의 수요에 부응토록 한다. ③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④ 절실한 일부 영역에서의 정보기술 응용을 위해 일부 국가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정보기술 산업을 조성하고, 정보기술 인력을 개발한다. ⑤ 국가 정보인프라 개발을 위해 편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⑥ 농업, 농촌, 원격지, 국경지역, 도서지역, 소수종족, 장애인,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에 대한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활동을 하는 조직 및 개인에게 우대정책을 실시한다. ⑦ 정보기술의 응용 및 개발을 하는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⑧ 국제 교류와 협력을 증강하고, 정보기술 분야에서 외국에 있는 베트남 조직 및 개인과 협력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정책이 있다.

(2) 지적재산권법 (50/2005/QH11)

문화통신부(현 정보통신부)는 그 임무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저작권 및 관련권리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한다(제11조 제2항). 법률의 내용은 과학기술부에서 살펴보았다.

(3) 전자거래법 (51/2005/QH11)

문화통신부(현 정보통신부)는 각 부 및 관련분야와 협력하여 전자교역에 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8조 제2항). 전자거래법은 국가기관들의 활동 중 전자거래 및 군사, 경영, 상업영역과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영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수단 거래를 선택한 기관, 조직 및 개인에 적용된다. 그러나 토지사용권 증명서 공급과 주택 및 기타 부동산 소유권, 상속문서, 혼인, 이혼신고서, 출생신고서, 사망신고서, 환어음과 기타 가치가 있는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거래법의 규정과 기타 법 규정 사이에 전자거래와 관련된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거래법을 적용한다.

(4)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48/2005/QH11)

정보통신부의 책임은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의 내용은 계획투자부에서 살펴보았다.

(5) 출판법 (30/2004/QH11)

정보통신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87/2007/ND-CP) 제2조 제6항에서 정보통신부가 출판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판법은 출판활동과 출판조직 및 출판활동에 참가하는 개인, 조직, 기관의 권리와 의무, 각 출판・인쇄・출판물 발행 분야를 포함한 출판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정치-사회-기업 조직, 사회조직, 사회-기업 조직, 경제조직, 사업단위, 인민무장단위, 베트남 공민에 대해 적용된다. 국제조직, 베트남 영토에서 활동하는 외국사무소,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약에 따라 적용된다.

생산을 통한 사상, 문화 영역에 속한 출판활동은 출판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여 사회 각 분야의 지식과 민족문화의 가치, 인류문화의 정수(定數)를 소개하고, 인민의 정신적 삶의 요구에 부응하며, 인민의 지적수준을 향상시키고, 베트남인의 밝고, 도덕적인 삶을 형성하고, 각 국가의 문화 교류를 넓히고, 경제-사회를 발전시키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동 및 사상과 투쟁하며, 사회주의베트남 조국 보호와 건설 사업에 공헌해야 한다.

(6) 언론법 (29-LCT/HĐNN8)

정보통신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187/2007/ND-CP) 제2조 제7항에서 정보통신부가 언론매체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언론매체는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대중통신매체로 각 당의 조직, 국가기관, 사회조직의 언론기관이며 인민의 토론장으로써 국가는 시민이 언론매체자유권, 언론매체의 언론자유권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언론매체가 자신의 올바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매체와 기자는 법률범위 내에서 활동하며, 국가에 의해 보호받는다. 어떠한 조직과 개인이라도 언론매체와 기자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시민단체, 국가의 이익을 침범하기 위해 언론매체자유권, 언론매체의 언론자유권을 남용할 수 없다. 언론매체는 인쇄, 발행 전에 검열 받지 않는다.

언론법에서 언급하는 언론매체는 베트남 언론매체이며, 인쇄신문(신문, 잡지, 시사소식지, 통신소식지), 베트남어 및 베트남 소수민족 언어 또는 외국어로 된 음성언론매체(라디어 프로그램), 화면언론매체(TV, 다양한 기술에 의해 실현되는 시사 청취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17. 자원환경부

자원환경부가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환경보호법,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토지법, 국가수자원법, 광산법 등이 있다.

(1) 환경보호법 (52/2005/QH11)

자원환경부는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121조 제2항).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활동,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조치, 자원, 환경보호에 있어서 조직, 가정,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의 국가기관, 조직, 가정,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에서 활동하는 재외베트남인, 외국의 조직, 개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구성원인 국제조약에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을 적용한다.

(2)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48/2005/QH11)

자원환경부의 책임은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의 내용은 계획투자부에서 살펴보았다.

(3) 토지법 (13/2003/QH11)

자원환경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25/2008/ND-CP) 제2조 제5항에서 자원환경부가 토지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법은 토지소유자를 대표하는 국가의 책임과 권한, 토지에 대한 관리의 통일, 토지 사용과 관리제도, 토지사용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으로는 토지소유자를 대표하여 책임, 권한을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국가관리의 통일 임무를 실현하는 국가기관과 토지사용자 및 토지사용 및 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타 각종 대상 등이 있다.

토지사용과 관리는 토지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토지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들을 적용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국가수자원법 (08/1998/QH10)

자원환경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25/2008/ND-CP) 제2조 제6항에서 자원환경부가 수자원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민의 소유인 수자원은 국가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되며, 생활 및 생산을 위한 수자원 사용권이나 개발권을 가진 조직 및 개인은 수자원을 보호하고, 법률규정에 따라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 퇴치, 극복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수자원을 사용 또는 개발하는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국가수자원법에서 규정하는 수자원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에 속한 빗물, 지하수, 해수로 구성된다. 수자원 사용, 개발, 보호, 관리 및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 극복과 퇴치, 예방에 대해 적용되며, 경제특권지역에 속한 해수, 지하수, 대륙붕은 다른 법률문서에 규정되어 있다. 광천수, 천연온천수는 광산법에 의해 규정된다.

(5) 광산법 (47-L/CTN)

자원환경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25/2008/ND-CP) 제2조 제7항에서 자원환경부가 광산자원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본토, 섬, 내륙하천, 영해, 경제특권지역, 대륙붕 범위의 광산자원은 모두 전민의 소유이며, 국가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된다.

광산법은 고체층・기체층・광천수층 및 천연온천층에서의 광물 조사・탐사・개발로 구성되는 광산활동과 광산(광물)자원에 관한 지질기반의 관리・보호・조사활동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석유가스 및 기타 각종 천연수는 기타 각종 법률문서에 따라 조정된다.

18. 교육훈련부

교육훈련부가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생물다양법, 교육법 등이 있다.

(1) 생물다양법 (20/2008/QH12)

자원환경부는 다양한 생물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제6조 제2항). 생명다양법은 생물다양성의 확실한 보존・발전 및 관련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가정,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의 조직, 가정, 개인 및 해외거주 베트남인, 또는 베트남 내에서 직접 생물다양성을 보존・발전시키는 활동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외국사무소 및 개인에 대해 적용된다.

(2) 교육법 (38/2005/QH11)

교육훈련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32/2008/ND-CP) 제2조 제4항에서 교육훈련부가 교육양성에 관해 공포된 법률 규범, 전략, 계획문서에 대한 실시, 안내, 조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은 국민교육 시스템 및 국가기관,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인민무장역량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조직과 개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상 교육목적은 윤리, 지식, 건강, 심미(審美), 직업을 갖추고 사회주의와 민족독립이상에 충성하는 전면적으로 개발된 베트남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의 능력 및 인격과 성품을 형성, 배양하여 조국 보호와 건설사업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베트남 교육은 인민적, 민족적, 과학적, 현대적 특징을 가진 교육으로, 호치민이 채택한 마르크스-레닌 사상에 기초하는 사회주의 교육이다. 교육활동은 생산노동과 결합하여 교육과 행동이 일치하는 원리에 따라 실현되어야 하며, 이론과 실제가 밀접하고,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결합되어야 한다.

19. 국회 및 국회상무위원회

국회 및 상무위원회가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국회의 감찰활동에 관한 법, 인민재판소조직법, 국회조직법, 국회의원선거법 등이 있다.

(1) 국회의 감찰활동에 관한 법 (05/2003/QH11)

헌법 제84조(국회의 임무와 권한) 제2항에서 국회가 최고감찰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국가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최고의 감찰권을 실행한다. 국회는 국회기간에 국회상무위원회, 민족회의, 국회인민위원회, 국회대표단, 국회대표의 기본감찰활동을 기반으로 최고감찰권을 실행한다.

국회, 각 국회기관, 국회대표단, 국회대표의 감찰심사권은 다음과 같다. ① 국회는 국가주석, 국회상무위원회, 정부, 정부수상, 장관과 정부의 기타 구성원들, 인민대법원, 헌법, 법률, 국회의 의결 집행의 최고인민검찰원의 활동을 감찰한다. 국가주석, 국회상무위원회, 정부, 정부수상, 인민대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법률규범문서를 감찰한다. ② 국회상무위원회는 정부, 정부수상, 장관, 기타 정부 구성원의 활동, 헌법, 법률, 국회의 의결,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 법령 시행에 있어서의 인민대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앙직속 성, 시 인민위원회의 활동을 감찰한다. 정부, 정부수상, 인민대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앙직속 성, 시 인민의회가 의결한 법률규범문서를 감찰한다. 국회의 분배에 따른 국회의 감찰권 실행을 지원한다. ③ 인민의회, 국회의 인민위원회는 자신의 임무, 권한 범위 내에서 법률, 국회의 의결, 국회상무위원회의 의결, 법령 시행에 있어서의 정부, 정부수상, 인민대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활동을 감찰한다. 책임위원회, 민족회의 영역에 속한 법률규범

문서를 감찰한다. 국회, 국회상무위원회가 각 기관들의 분배에 따라 감찰권을 실행하도록 돕는다. ④ 국회대표단은 대표단의 감찰활동을 조직하고, 지방에서의 법률시행 감찰단의 국회대표를 조직한다. 인민의회, 중앙직속 성, 시 인민위원회의 법률규범문서를 감찰한다. 공민의 고소, 고발을 해결 및 감찰하고 국회상무위원회, 민족회의, 국회의 인민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찰단에 참가한다. ⑤ 국회대표가 국가주석, 국회주석, 정부수상, 장관, 기타 정부 구성원, 대법원장, 감찰원장에게 질의를 한다. 국회대표의 권한, 임무 범위 내에서 법률규범문서를 감찰하고, 지방의 법률시행을 감찰하며, 공민의 고소, 고발 해결을 감찰한다.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민족회의, 국회의 위원회가 다른 기관, 조직, 개인의 활동을 감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찰을 진행한다.

(2) 인민재판소조직법 (33/2002/QH10)

국회가 인민재판소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한다고 헌법 제84조(국회의 임무와 권한)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재판소, 각 지방인민재판소, 각 군사재판소 및 법률에 따른 기타 재판소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판결기관이다. 재판소는 형사, 민사, 혼인, 가정, 노동, 경제, 행정에 관한 소송을 판결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사건들을 판결한다. 자체 기능범위 내에서 법원은 사회주의 법제 보호 및 국가, 집단의 재산 보호 및 시민의 생명, 재산, 자유, 명예, 인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자체적인 활동을 통해 법원은 조국에 충성하는 공민 교육에 공헌하고, 법률을 엄정히 집행하며, 사회생활의 규칙을 존중하고, 범죄와 기타 법률위반행위를 퇴치하며, 예방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는 ① 최고인민재판소 ② 각 성 및 중앙직할시의 인민재판소 ③ 각 현, 군, 시사 및 성 소속 시의 인민재판소 ④ 각 군사재판소 ⑤ 기타 법률이 정한 재판소 등의 재판소가 있으며, 특별한 경우 국회는 특별재판소의 설립을 결정할 수 있다.

재판장임명제도는 각급 재판소별로 실시되며, 인민배심원선출제도는 각 지역인민재판소별로 실시된다. 군배심원지명제도는 군사구역 및 유사 행정구역 내 각 군사재판소와 지역군사재판소별로 실시된다.

(3) 국회조직법 (30/2001/QH10)

국회가 국회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한다고 헌법 제84조(국회의 임무와 권한)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인민의 최고대표기관이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국회는 유일한 입헌, 입법기관이다. 국회는 국가의 대내외 정책, 국가의 경제-사회, 국방, 안보임무, 국가기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공민의 사회관계와 활동에 관한 기본정책을 결정한다. 국회는 국가의 활동전반에 대해 최고 감찰권을 행사한다.

국회의 임무 및 권한으로는 ①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법제정과 법개정, 법, 법령안 입안프로그램을 결정 ② 헌법, 법과 국회의 의결 준수에 대해 최고 감찰권을 행사하고 국가주석, 국회상무위원회,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활동보고를 검토 ③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계획을 결정 ④ 국가의 재정,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국가예산과 중앙예산배정을 결정하고 국가예산·결산을 비준하며 각종 세법을 수정하고 폐지 ⑤ 국가의 민족, 종교정책을 결정 ⑥ 국회, 국가주석,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과 지방정권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 ⑦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국회의장, 국회부의장과 국회상무위원회, 정부

수상, 부수상, 장관 및 정부의 기타 구성원 임명, 면직, 해임에 관한 제의를 비준, 국가주석의 국방 및 안보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의를 비준, 국회가 선출하였거나 또는 비준한 직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신임투표 실시 ⑧ 정부의 부(部)와 부와 동등한 기관 설립, 폐지와 성, 중앙직속시의 새로운 설립, 편입, 분할, 성, 중앙직속시 경계선 조정, 특별 행정-경제 단위의 설립 또는 해체를 결정 ⑨ 헌법, 법률과 국회의 의결에 위배되는 국가주석, 국회상무위원회,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문서를 폐기 ⑩ 특사 결정 ⑪ 군 직함, 외교관 직함 및 기타 직함을 규정하며 국가의 훈장, 휘장 및 명예훈장을 규정 ⑫ 전쟁과 평화문제를 결정하며 긴급사태, 국가 국방 및 안보 보장 방법을 규정 ⑬ 대회기본정책을 결정하며 국가주석이 직접 서명한 국제조약 비준 또는 폐기, 국가주석의 제의에 따라 체결 또는 가입한 기타 국제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 ⑭ 국민투표 결정 등이 있다.

국회의 임기는 국회의 제1차 회기로부터 다음 국회의 1차회기까지 5년이다. 특별한 경우, 만약 최소한 국회의원 총수 2/3가 찬성하면 국회는 자신의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4) 국회의원선거법 (56-L/CTN)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상무위원회가 선거공보 및 선거과정을 주재하며, 선거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44]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국회의원 선출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민족, 남녀, 사회성분, 신앙, 종교, 문화정도, 직업,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8세 이상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공민은 누구나 투표권을 가지며, 21세 이상은 모두 법률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입후보권을 가진다.

44) 이한우, 앞의 논문, p.69.

국회의원은 ① 조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헌법에 충성하고, 국가의 공업화 및 현대화 사업, 부유한 민족, 부강한 국가, 문명적이고 공평한 사회 형성을 위한 도이머이 실현을 위해 분투 ② 훌륭한 도덕적 품성, 근검하고 청렴함, 공평성을 가지고 법률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하며, 법률위반행위, 탐욕적이고 권력적, 권위적 관료행위에 단호히 저항 ③ 국회의원 임무를 수행할 능력과 수준이 있어야 하며, 국가의 중요한 문제 결정에 참여 ④ 인민과 밀접히 연합하고, 인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인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 ⑤ 국회의 각종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 등의 의무를 가진다.

20. 인민의회 및 조국전선

인민의회 및 조국전선이 소관·관장하는 법률은 인민의회대표선출법, 인민의회 및 인민위원회조직법, 베트남조국전선법 등이 있다.

(1) 인민의회대표선출법 (12/2003/QH11)

인민의회 대표 선출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법률 규정에 따라 민족, 남녀, 사회성분, 신앙, 종교, 문화수준, 직업, 거주기한의 구별 없이 19세 이상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시민은 투표권이 있으며, 21세 이상은 인민의회 대표 입후보권이 있다.

인민의회 대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있다. 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충성하고, 지방발전, 건설과 국가개혁작업 실현을 위해 노력 ② 훌륭한 도덕적 성품을 지니고, 법률집행의 모범이 되며, 권위적, 권력적, 탐욕적, 낭비적 관료 수행과 기타 법률위반 행위를 지양하고, 국가의 이익과 시민의 합법적 이익 및 권리를 보호 ③ 인민의회의 대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수준, 가정, 인민에 선전, 운동하는 정책 법률의 실현 가능성 및 지방의 중요한 문제 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경제-사회 상황에 대해 이해 ④ 인민과의 긴밀한 유대, 인민의 의견

경청, 인민으로부터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 ⑤ 인민의회의 각종 활동에 참가 등이다.

(2) 인민의회 및 인민위원회 조직법 (11/2003/QH11)

인민회의는 지방 인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 국가권력 기관으로, 인민의 주권, 열망, 의지를 대변하며, 먼저 지방인민의 책임을 다하며, 상급 국가기관의 책임을 다한다. 인민회의는 지방의 잠재력 발휘, 경제-사회에 관한 지방의 개발, 건설, 국방과 안전 공고화를 위한 중요한 방법, 방침들을 결정하고, 지방 인민의 정신적, 물질적 삶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전 국가에 대한 지방의 의무를 수행한다. 인민의회는 동급의 인민검찰원 인민재판, 인민위원회, 상임인민의회의 활동에 대한 감찰권 및 인민회의의 각 의결 시행 감찰 및 지방인민과 인민무장단위, 사회조직, 경제조직, 국가기관의 법률에 따른 감찰을 시행한다.

인민의회에 의해 선출된 인민위원회는 인민의회의 집행기관, 지방의 국가행정기관이며 먼저 동급의 인민의회와 상급 국가기관의 책임을 다한다. 인민위원회는 경제-사회 개발 방법, 방침, 국방안전의 공고화, 지역의 기타 정책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법률, 각 상급기관의 문서, 동급의 인민의회의 의결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인민위원회는 지방의 국가관리 기능을 실현하고, 중앙에서 기초까지의 국가행정기구 통일에 대한 관리, 방법안내 보장에 공헌한다.

인민의회와 인민위원회는 민주집중 원칙에 따라 활동, 조직된다. 인민의회와 인민위원회는 상급국가기관의 문서, 법률, 헌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과 임무를 실현한다. 그리고 인민의 자주권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증강시키며, 지방정권기구의 공무원, 간부의 권위적, 권력적, 탐욕적, 낭비적이며 무책임한 관료 수행과 소극적인 업무수행을 방지한다.

(3) 베트남조국전선법(14/1999/QH10)

베트남조국전선은 정치연맹조직, 정치조직, 각 정치-사회조직, 사회조직, 각 계급, 각 사회계층, 각 민족, 각 종교, 외국거주 베트남인들을 대표하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연합이다. 베트남조국전선은 베트남공산당의 지도에 의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정치 시스템의 일부분이며, 인민정권의 정치기관이자, 의지 및 소망을 실현하는 장으로, 전민의 대단결 달성, 인민의 주권 발휘, 협상장(協商場), 성원의 행동 통일과 조화, 민족 독립, 국가주권, 완정한 영토 유지에 공헌, 문명적, 평등적 사회와 부강한 국가, 부유한 민족을 목표로 한 국가의 공업화, 현대화 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달성하는 역할을 한다.

베트남조국전선은 전민의 대단결을 형성하고 인민의 정신과 정치에 대한 일치성을 증가시킬 의무가 있다. 주권을 발휘하고 당의 정책, 주장, 노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선전 및 인민동원을 실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시행하며, 국가기관, 주민대표, 국가 공무원과 간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인민정권을 공고히 하고, 인민정권 건설에 참가한다. 국가와 함께 인민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보호한다. 세계 국가들의 민족과 베트남 민족 간의 협동과 우호를 발전시키는 일에 참여한다.

베트남조국전선은 법률과 헌법에 부합하는 베트남조국전선의 조례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한다. 베트남조국전선의 조직 및 활동은 자발적인 원칙, 민주적 협상, 협력적이고 통일적인 행동에 따라 실현된다. 각급의 베트남조국전선위원회는 베트남조국전선 대표대회의 협상에 의해 지명된 동급 베트남조국전선의 집행기관이며, 베트남조국전선의 임무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

제 5 장 결 론

베트남은 도이 머이 정책을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비록 사회주의 공산국가이지만, 개혁적인 개방정책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고 현재도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베트남이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요인은 정치·사회적 안정 속에서 충분한 천연자원 및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의 꾸준한 직접투자 및 베트남 정부가 대내외적 정치 상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WTO 가입 및 UN 비상임이사국 진출, 미국과의 무역 정상화 등의 국제적인 노력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베트남의 고도 성장에 더불어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과 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베트남의 법률제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였다고 할 것이다.

베트남 통치기구와 관련하여 베트남 헌법 제83조에서 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회가 인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며 국회가 베트남 최고의 통치기구임을 명문으로 확인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헌법 전문 및 제4조를 살펴보면 베트남은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하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규정함으로써 비록 헌법에서 국회가 국가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규정하였지만, 공산당이 실질적으로 국회를 주도하고 구성하며, 베트남 인민들의 사상적 기반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통치기구는 베트남 공산당을 중심축으로 하여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공산당은 당 내부의 견해와 행동을 통일하고 당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집권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당내 의사결정

은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피라미드식 구조를 이루며 권력의 정점에서는 당서기장이 통제권을 갖고 있다. 베트남 공산당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대중조직의 활성화이다. 대중조직으로는 조국전선, 노동조합총연맹, 청년동맹, 여성동맹 등이 있는데 이들 조직은 인민들에 대한 교육을 기초로 하여 그 구성조직이 정치기반이 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조국전선의 경우 국회의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과 국가기관 및 공무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어 그 권한은 막강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베트남 공산당은 최고 당서기국부터 대중조직에 이르기까지 체계화된 조직구성으로 그들 사상에 대한 교육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베트남 입법부와 사법부 및 행정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상 규정된 국가 최고 권력기관·사법기관·행정기관이지만, 베트남 국가의 특성상 공산당의 지도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베트남은 기원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아 왔고, 그 이후에도 많은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법제도의 부분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초기 중국 한나라가 지배할 때까지는 주로 베트남인의 저항을 진압할 목적으로 각종의 형벌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고, 행정,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각종 규정은 베트남인을 중국의 법제에 동화시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후 독립왕조 하에서는 왕조의 중앙집권 봉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제도가 정비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배하에서는 식민지배 통치의 용이함을 위해 통킹(Tonkin), 안남(Annam), 코친차이나(Cochinchina) 등 세 지역으로 분할 통치를 실시하면서 유형 상 베트남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한 법과 서로 다른 세 개의 지역에서 상이하게 적용한 법으로 나뉘었다.

베트남은 1953년 이후 현재까지 약 170개의 법률이 국회에서 공포되었고 대부분의 베트남 법은 제1조에서 의의를, 제2조 및 제3조에서 적용 대상 및 조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이하에서는 각 법률상 원칙과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법, 기업법, 각종 세법 등의 제·개정으로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다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이로써 베트남 경제개발을 더욱더 증진시키기 위한 초석으로 법제 정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은 의료보험법, 사회보험법, 성평등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과 같이 베트남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외국 자본의 도입뿐만 아니라 베트남 법제도에 대한 정비를 통해 더욱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 및 개인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여건과 인식이 과거와 같다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나날이 변화하는 베트남 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의 베트남에 대한 시각은 변화해야 할 것이고, 베트남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베트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정제도 및 법체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베트남과 우리나라 모두 성공적인 무역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앞으로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올바른 투자에 대한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계경문・김종욱, □□베트남의 법제에 관한 연구:외국인투자법을 중심으로□□, 아시아법제연구 3, 한국법제연구원, 2004. 9.

박동욱・이아영, □□베트남 경제분석과 향후 전망□□, KOTRA, 2008. 9.

베트남 공산당사연구회(김종욱 역), □□베트남 공산당사□□, 도서출판 소나무, 1989.

송정남, □□베트남의 역사□□,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0.

유인선, □□새로쓴 베트남의 역사□□, 도서출판 이산, 2002.

전병서, □□베트남 투자・금융법제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8. 11.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의 사법제도와 법령 구성체계□□, 2005. 8.

주한베트남대사관, □□베트남(베트남-한국 수교 10주년 기념)□□, 2002. pp.12-18 참조.

외교통상부, □□베트남 개황□□, 2006.

_____, □□베트남 개황□□, 2009. 5.

논 문

계경문, “베트남의 법제의 연혁과 구조적 특징”, □□동남아 연구□□, 제19권 제1호, 동남아연구소, 2009. 5.

김대인,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과 과제”, □□아시아법제 연구□□, 제8호, 2007.

김치환, “베트남의 사법제도 개관”, □□아시아법제연구□□제2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9, p.182.

이순태, “베트남의 사법제도와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 -환경분쟁해결을 중심으로-”, □□아시아법제연구□□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3.

이한우, “베트남의 선거제도와 국회 구성의 변화”, □□동남아시아연구□□ 제16권 제1호, 동남아시아학회, 2006.

이효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아시아법제연구□□ 제3호, 한국법제연구원, 2005. 3, p.266.

사이트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베트남 국회 홈페이지 (http://www.na.gov.vn/htx/Vietnamese)

베트남 공산당 홈페이지 (http://www.cpv.org.vn/cpv)

베트남 정부 홈페이지 (http://www.chinhphu.vn)

주베트남 대사관 홈페이지 (http://vnm-hanoi.mofat.go.kr)

주호치민 영사관 홈페이지 (http://vnm-hochiminh.mofat.go.kr)

Thanh Nien 전자판 (http://www.thanhniennews.com)

참 고 자 료

참 고 자 료 Ⅰ

※ 베트남 정부부처의 소관법률 정리

부처명	소관법률
◦ 건설부	◦ 부동산사업법 ◦ 주택법 ◦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 건설법
◦ 계획투자부	◦ 기업법 ◦ 투자법 ◦ 경매법 ◦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 국영기업법 ◦ 통계법
◦ 공안부	◦ 사법상조법 ◦ 특별사면법 ◦ 거주법 ◦ 부패방지법 ◦ 인민공안법 ◦ 국가안전법 ◦ 소방법 ◦ 마약방지법
◦ 과학기술부	◦ 첨단기술법 ◦ 원자력에너지법 ◦ 상품품질법 ◦ 기술이전법 ◦ 기술표준법 ◦ 지적재산권법 ◦ 과학기술법

부처명	소관법률
◦ 교육훈련부	◦ 생물다양법 ◦ 교육법
◦ 교통운송부	◦ 도로교통법 ◦ 민간항공법 ◦ 항해법 ◦ 철도법 ◦ 국내수로교통법
◦ 국방부	◦ 민사재판시행법 ◦ 특별대사면법 ◦ 부패방지법 ◦ 국방법 ◦ 베트남인민군대장교법 ◦ 군사의무법
◦ 내무부	◦ 간부 및 공무원법 ◦ 적십자활동법 ◦ 청년법 ◦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 경쟁포상법 ◦ 정부조직법 ◦ 장관회동조직법
◦ 노동보훈사회부	◦ 계약에 따라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에 관한 법 ◦ 성평등법 ◦ 직업교육법 ◦ 사회보험법 ◦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 아동 보호・양육・교육에 관한 법 ◦ 노동법

부처명	소관법률
◦ 농업농촌개발부	◦ 제방 및 보강에 관한 법 ◦ 지적재산권법 ◦ 산림보호 및 발전법 ◦ 수산물법
◦ 문화스포츠관광부	◦ 가정폭력방지법 ◦ 스포츠체육법 ◦ 영화법 ◦ 관광법 ◦ 문화유산법 ◦ 혼인 및 가정에 관한 법
◦ 법무부	◦ 베트남국적법 ◦ 민사재판시행법 ◦ 법률규범문서공포에 관한 법 ◦ 사법상조법 ◦ 공증법 ◦ 변호사법 ◦ 법률상담법 ◦ 어음수표법 ◦ 민법 ◦ 인민의회 및 인민위원회의 법률규범문서공포에 관한 법 ◦ 민사소송법 ◦ 감사법 ◦ 파산법 ◦ 형사소송법 ◦ 인민검찰원 조직법

부처명	소관법률
	◦ 형법
◦ 보건부	◦ 의료보험법 ◦ 전염병예방법 ◦ 조직 및 장기기증에 관한 법 ◦ 에이즈예방법 ◦ 의약품법
◦ 산업무역부	◦ 화학물질법 ◦ 무역법 ◦ 경쟁법 ◦ 전력법 ◦ 석유가스법
◦ 외교부	◦ 사법상조법 ◦ 국제조약의 체결·가입·실시에 관한 법 ◦ 국경법
◦ 자원환경부	◦ 환경보호법 ◦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 토지법 ◦ 국가수자원법 ◦ 광산법
◦ 재무부	◦ 특별소비세법 ◦ 재산징수 및 수용법 ◦ 법인소득세법 ◦ 국가재산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 ◦ 부가가치세법 ◦ 개인소득세법 ◦ 세금관리법

부처명	소관법률
	◦증권법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수출입세법 ◦국가검산법 ◦회계법 ◦국가예산법 ◦보험사업법 ◦국영은행법 ◦금융기관법 ◦토지사용권양도세법 ◦농업용토지사용세법
◦정보통신부	◦정보기술법 ◦지적재산권법 ◦전자거래법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출판법 ◦언론법
◦국회 및 국회상무위원회	◦국회의 감찰활동에 관한 법 ◦인민재판소조직법 ◦국회조직법 ◦국회의원선거법
◦인민의회 및 조국전선	◦인민의회대표선출법 ◦인민의회 및 인민위원회조직법 ◦베트남조국전선법

참 고 자 료 Ⅱ

※ 베트남 법률의 소관부처 및 우리나라의 유사법률 정리

베트남 법률	베트남 정부 소관부처	우리나라 법률
▫ 가정폭력방지법 (02/2007/QH12)	▫ 문화스포츠관광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간부 및 공무원법 (22/2008/QH12)	▫ 내무부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경찰공무원법 ▫ 소방공무원법 ▫ 외무공무원법
▫ 감사법 (22/2004/QH11)	▫ 법무부	▫ 감사원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개인소득세법 (04/2007/QH12)	▫ 재무부	▫ 소득세법
▫ 거주법 (81/2006/QH11)	▫ 공안부	▫ 주민등록법
▫ 건설법 (16/2003/QH11)	▫ 건설부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관리법
▫ 경매법 (61/2005/QH11)	▫ 계획투자법	▫ 민사집행법
▫ 경쟁법 (27/2004/QH11)	▫ 산업무역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베트남 법률	베트남 정부 소관부처	우리나라 법률
▫ 경쟁포상법 (15/2003/QH11)	▫ 내무부	
▫ 계약에 따라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에 관한 법 (72/2006/QH11)	▫ 노동보훈사회붑	▫ 출입국관리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공증법 (82/2006/QH11)	▫ 법무부	▫ 공증인법 ▫ 재외공관공증법
▫ 과학기술법 (21/2000/QH10)	▫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기본법
▫ 관광법 (44/2005/QH11)	▫ 문화스포츠관광부	▫ 관광기본법 ▫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한국관광공사법
▫ 광산법 (47-L/CTN)	▫ 자원환경부	▫ 광산보안법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온천법
▫ 교육법 (38/2005/QH11)	▫ 교육양성부	▫ 고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평생교육법
▫ 국가검산법 (37/2005/QH11)	▫ 재무부	▫ 국가회계법

※ 베트남 법률의 소관부처 및 우리나라의 유사법률 정리

베트남 법률	베트남 정부 소관부처	우리나라 법률
▫ 국가안전법 (32/2004/QH11)	▫ 공안부	▫ 국가보안법
▫ 국가예산법 (01/2002/QH11)	▫ 재무부	▫ 정부기업예산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회예산정책처법
▫ 국가수자원법 (08/1998/QH10)	▫ 자원환경부	▫ 한국수자원공사법 ▫ 지하수법
▫ 국가재산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 (09/2008/QH12)	▫ 재무부	▫ 국유재산법
▫ 국경법 (06/2003/QH11)	▫ 국방부 ▫ 공안부 ▫ 외교부	▫ 대한민국헌법
▫ 국방법 (39/2005/QH11)	▫ 국방부	▫ 국군조직법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국영은행법 (06/1997/QHX)	▫ 재무부	▫ 한국은행법
▫ 국제조약의 체결·가입·실시에 관한 법 (41/2005/QH11)	▫ 외교부	▫ 대한민국헌법 ▫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 국회의 감찰활동에	▫ 국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베트남 법률	베트남 정부 소관부처	우리나라 법률
관한 법 (05/2003/QH11)		관한 법률
▫ 국회의원선출법 (56-L/CTN)	▫ 국회	▫ 공직선거법
▫ 국회조직법 (30/2001/QH10)	▫ 국회	▫ 국회법
▫ 군사의무법 (6-LCT/HĐNN7)	▫ 국방부	▫ 병역법 ▫ 향토예비군설치법
▫ 기술이전법 (80/2006/QH11)	▫ 과학기술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기술표준법 (68/2006/QH11)	▫ 과학기술부	▫ 국가표준기본법 ▫ 산업표준화법
▫ 기업법 (60/2005/QH11)	▫ 계획투자부	▫ 상법
▫ 내륙수상교통법 (23/2004/QH11)	▫ 교통운송부	▫ 도로교통법 ▫ 해상교통안전법
▫ 노동법 (35-L/CTN)	▫ 노동보훈사회부	▫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농업용토지사용세법 (23-L/CTN)	▫ 재무부	▫ 소득세법

※ 베트남 법률의 소관부처 및 우리나라의 유사법률 정리

베트남 법률	베트남 정부 소관부처	우리나라 법률
▫ 도로교통법 (23/2008/QH12)	▫ 교통운송부	▫ 도로교통법
▫ 마약방지법 (23/2000/QH10)	▫ 공안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
▫ 무역법 (36/2005/QH11)	▫ 산업무역부	▫ 대외무역법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법 (28/2001/QH10)	▫ 문화스포츠관광부	▫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민법 (33/2005/QH11)	▫ 법무부	▫ 민법
▫ 민사소송법 (24/2004/QH11)	▫ 법무부	▫ 민사소송법
▫ 민사재판시행법 (26/2008/QH12)	▫ 법무부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법률규범문서공포에	▫ 법무부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베트남 법률	베트남 정부 소관부처	우리나라 법률
관한 법 (17/2008/QH12)		법률 · 법령안등심사보고·재가·공포관련서식규정
· 법률상담법 (69/2006/QH11)	· 법무부	· 법률구조법
· 법인소득세법 (14/2008/QH12)	· 재무부	· 법인세법
· 베트남국적법 (24/2008/QH12)	· 법무부	· 국적법
· 베트남민용항공법 (66/2006/QH11)	· 교통운송부	· 항공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항공운송사업진흥법
· 베트남인민군대장교법 (16/1999/QH10)	· 국방부	· 군인사법
· 베트남조국전선법 (14/1999/QH10)	· 베트남조국전선	
· 변호사법 (65/2006/QH11)	· 법무부	· 변호사법
· 보험사업법 (24/2000/QH10)	· 재무부	· 보험업법
· 부가가치세법 (13/2008/QH12)	· 재무부	· 부가가치세법

※ 베트남 법률의 소관부처 및 우리나라의 유사법률 정리

베트남 법률	베트남 정부 소관부처	우리나라 법률
▫ 부동산사업법 (63/2006/QH11)	▫ 건설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법 (55/2005/QH11)	▫ 국방부 ▫ 공안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사법상조법 (08/2007/QH12)	▫ 공안부 ▫ 법무부 ▫ 외무부	▫ 범죄인인도법
▫ 사회보험법 (71/2006/QH11)	▫ 노동보훈사회부	▫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기초노령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산림보호 및 발전법 (29/2004/QH11)	▫ 농업농촌개발부	▫ 산림기본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상품품질법 (05/2007/QH12)	▫ 과학기술부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농산물품질관리법 ▫ 수산물품질관리법
▫ 생물다양법 (20/2008/QH12)	▫ 자원환경부	▫ 습지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베트남 법률	베트남 정부 소관부처	우리나라 법률
▫ 석유가스법 (18-L/CTN)	▫ 산업무역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도시가스사업법
▫ 성평등법 (73/2006/QH11)	▫ 노동보훈사회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여성발전기본법
▫ 세금관리법 (78/2006/QH11)	▫ 재무부	▫ 국세징수법
▫ 소방법 (27/2001/QH10)	▫ 공안부	▫ 소방기본법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의무소방대설치법

※ 베트남 법률의 소관부처 및 우리나라의 유사법률 정리

베트남 법률	베트남 정부 소관부처	우리나라 법률
▫ 수산물법 (17/2003/QH11)	▫ 농업농촌개발부	▫ 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수산물유통공사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 수출입세법 (45/2005/QH11)	▫ 재무부	▫ 관세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스포츠체육법 (77/2006/QH11)	▫ 문화스포츠관광부	▫ 국민체육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스포츠산업 진흥법
▫ 신용조직법 (07/1997/QHX)	▫ 재무부	▫ 은행법 ▫ 중소기업은행법 ▫ 한국산업은행법 ▫ 한국수출입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 신용협동조합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약품법 (34/2005/QH11)	▫ 보건부	▫ 약사법 ▫ 한의약육성법
▫ 어린이보호・양육・교육에 관한 법 (25/2004/QH11)	▫ 노동보훈사회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베트남 법률	베트남 정부 소관부처	우리나라 법률
		특별법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어음수표법 (49/2005/QH11)	▫ 법무부	▫ 어음법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언론법 (29-LCT/HĐNN8)	▫ 정보통신부	▫ 방송법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에이즈예방법 (64/2006/QH11)	▫ 보건부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영화법 (62/2006/QH11)	▫ 문화스포츠관광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원자력에너지법 (18/2008/QH12)	▫ 과학기술부	▫ 원자력법
▫ 의료보험법 (25/2008/QH12)	▫ 보건부	▫ 국민건강보험법
▫ 인민검찰원조직법 (34/2002/QH10)	▫ 법무부	▫ 검찰청법

※ 베트남 법률의 소관부처 및 우리나라의 유사법률 정리

베트남 법률	베트남 정부 소관부처	우리나라 법률
▫ 인민공안법 (54/2005/QH11)	▫ 공안부	▫ 경찰공무원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인민재판소조직법 (33/2002/QH10)	▫ 국회	▫ 법원조직법
▫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법률규범문서공포에 관한 법 (31/2004/QH11)	▫ 인민의회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인민의회 및 인민위원회 조직법 (11/2003/QH11)	▫ 인민의회	▫ 국회법
▫ 인민의회대표선출법 (12/2003/QH11)	▫ 인민의회	▫ 공직선거법
▫ 장관회동조직법 (2-LCT/HĐNN7)	▫ 내무부	
▫ 재산징용 및 수용법 (15/2008/QH12)	▫ 재무부	▫ 국유재산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적십자활동법 (11/2008/QH12)	▫ 내무부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베트남 법률	베트남 정부 소관부처	우리나라 법률
▫ 전력법 (28/2004/QH11)	▫ 산업무역부	▫ 전력기술관리법 ▫ 한국전력공사법
▫ 전염병예방법 (03/2007/QH12)	▫ 보건부	▫ 전염병예방법
▫ 전자교역법 (51/2005/QH11)	▫ 정보통신부	▫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서명법
▫ 절약실행 및 낭비방지에 관한 법 (48/2005/QH11)	▫ 재무부 ▫ 계획투자부 ▫ 건설부 ▫ 노동보훈사회부 ▫ 내무부 ▫ 정보통신부 ▫ 자원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정보기술법 (67/2006/QH11)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정부조직법 (32/2001/QH10)	▫ 내무부	▫ 정부조직법
▫ 제방 및 보강에 관한 법 (79/2006/QH11)	▫ 농업농촌개발부	▫ 사방사업법
▫ 조직 및 장기기증에 관한 법	▫ 보건부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베트남 법률의 소관부처 및 우리나라의 유사법률 정리

베트남 법률	베트남 정부 소관부처	우리나라 법률
(75/2006/QH11)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주택법 (56/2005/QH11)	▫ 건설부	▫ 주택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주택법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증권법 (70/2006/QH11)	▫ 재무부	▫ 증권거래세법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 지적재산권법 (50/2005/QH11)	▫ 정보통신부 ▫ 과학기술부 ▫ 농업농촌개발부	▫ 저작권법
▫ 직업교육법 (76/2006/QH11)	▫ 노동보훈사회부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철도법 (35/2005/QH11)	▫ 교통운송부	▫ 도시철도법 ▫ 철도건설법 ▫ 철도사업법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철도안전법 ▫ 한국철도공사법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첨단기술법 (21/2008/QH12)	▫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기본법

베트남 법률	베트남 정부 소관부처	우리나라 법률
▫ 청년법 (53/2005/QH11)	▫ 내무부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보호법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활동진흥법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 출판법 (30/2004/QH11)	▫ 정보통신부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토지법 (13/2003/QH11)	▫ 자원환경부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외국인토지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한국토지공사법
▫ 토지사용권양도세법 (35-L/CTN)	▫ 재무부	▫ 소득세법
▫ 통계법 (04/2003/QH11)	▫ 계획투자부	▫ 통계법
▫ 투자법	▫ 계획투자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 베트남 법률의 소관부처 및 우리나라의 유사법률 정리

베트남 법률	베트남 정부 소관부처	우리나라 법률
(59/2005/QH11)		투자법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특별대사면법 (07/2007/QH12)	· 국방부 · 공안부	· 사면법
· 특별소비세법 (27/2008/QH12)	· 재무부	· 특별소비세법 (2007. 12. 31 폐지) · 개별소비세법
· 파산법 (21/2004/QH11)	· 법무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항해법전 (40/2005/QH11)	· 교통운송부	· 선박법 · 선박안전법 · 선박직원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형법 (15/1999/QH10)	· 법무부	· 형법 · 군형법 · 군행형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19/2003/QH11)	· 법무부	· 형사소송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혼인 및 가정에 관한 법 (22/2000/QH10)	· 문화스포츠관광부	· 민법 · 혼인신고특례법 · 건강가정기본법

베트남 법률	베트남 정부 소관부처	우리나라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법 (06/2007/QH12)	▫ 산업무역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 환경보호법 (52/2005/QH11)	▫ 자원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환경보건법 ▫ 환경정책기본법
▫ 회계법 (03/2003/QH11)	▫ 재무부	▫ 국가회계법 ▫ 공인회계사법

참 고 자 료 Ⅲ